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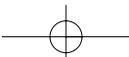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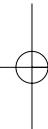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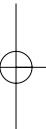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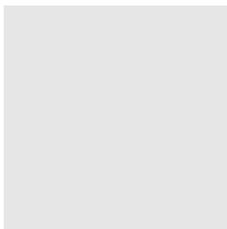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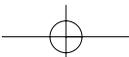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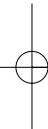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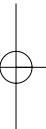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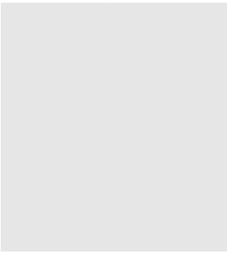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목 차

연간보고서 요약	1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11
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1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13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 과정	15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	17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21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예산	21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26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31
제1절 개요	3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32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32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52
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권고	64
4. 인권 상황 실태조사	70
제3절 평가	84

목 차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87

 제1절 개요 8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88

 1. 상담 및 진정접수의 활성화 88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92

 3. 면전진정 접수의 활성화 103

 제3절 평가..... 110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113

 제1절 개요 1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14

 1. 개관..... 114

 2. 검찰·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19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1

 4. 기타 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5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128

 6. 직권조사 130

 7. 기타 진정사건 조사·구제 136

 제3절 평가..... 137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139

 제1절 개요 13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40

 1. 개관 140

 2. 성 차별의 조사·구제 142

 3. 장애인 차별의 조사·구제 144

 4. 연령 차별의 조사·구제 146

 5.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의 조사·구제 148

6.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조사·구제	150
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의 조사·구제	151
8.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의 조사·구제	152
제3절 평가.....	154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157
제1절 개요	15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58
1. 공무원 인권교육	158
2. 학교 인권교육	161
3. 인권문화 콘텐츠 사업	163
4. 인권 홍보사업 체계 구축	165
5. 인권 정보자료 서비스 체제 구축.....	166
제3절 평가.....	170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73
제1절 개요	17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73
1. 인권 시민단체와 협력강화	173
2.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176
제3절 평가.....	189
제7장 기획사업: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191
제1절 개요	19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92
1. 아동·청소년 시설 방문조사.....	192
2. 노인시설 방문조사.....	196
3. 아동과 노인 관련 실태조사	198

목 차

4. 인권 동화책 발간 사업..... 198
 제3절 평가..... 199

제3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제1장 주요 인권 현안.....203

1. 국가보안법 개폐203
 2. 보호감호제도 개선.....204
 3.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205
 4.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205
 5.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206
 6. 사형제도 개선207
 7.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208
 8.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209
 9.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방지209
 10.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210

제2장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211

제1절 인권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211
 1.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시행..... 211
 2.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 213
 3.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 수립..... 213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215
 제2절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16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216
 2. 지방사무소 설치..... 217
 3. 국가기관간 협의체 구성 218
 4.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219

제3절 인권 관련 법령조사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220
1. 인권 관련 법령검토 및 개선권고	220
2.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법령정비	221
3. 인권상황 실태조사.....	222
제4절 위원회 내부 역량 제고 방안.....	224
1. 직원의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224
2. 업무량 폭주 해소를 위한 인력보강	225
제5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226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226
2.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227

부 록

1.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법령	233
2. 국가인권위원회법	236
3.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258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261
5. 국제기구 권고사항	287
6.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295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300
8. 발간자료 목록	304
9. 진정서 양식	307
10.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서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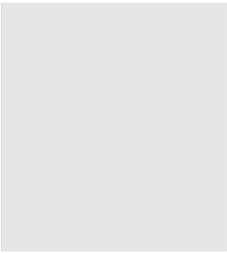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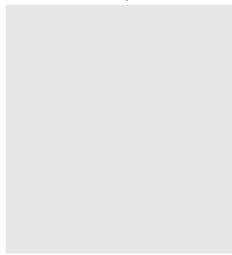


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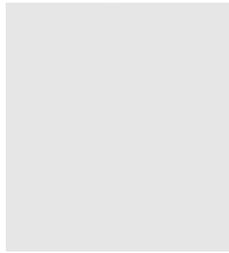
〈표 1-2-1〉 2002년도 예산.....	24
〈표 1-2-2〉 직원 유형별 현황	25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32
〈표 2-1-2〉 반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별법안 주요 골자	47
〈표 2-1-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 주요 골자.....	49
〈표 2-1-4〉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권고.....	53
〈표 2-1-5〉 외국인력 현황	57
〈표 2-1-6〉 직권수정 권고내용 요약	61
〈표 2-1-7〉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64
〈표 2-1-8〉 실태조사 과제	70
〈표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	89
〈표 2-2-2〉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93
〈표 2-2-3〉 상담처리 결과	95
〈표 2-2-4〉 상담 유형	97
〈표 2-2-5〉 인권침해의 내용.....	99
〈표 2-2-6〉 피진정인별 현황.....	100
〈표 2-2-7〉 피진정인별 차별사유	101
〈표 2-2-8〉 차별 영역	102
〈표 2-2-9〉 기타 유형	103
〈표 2-2-10〉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건수	104
〈표 2-2-11〉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05
〈표 2-2-12〉 면전진정 신청 철회 사유	108
〈표 2-2-13〉 면전진정 신청 사례 중 상담종결 사유	109
〈표 2-3-1〉 인권침해 사건 처리 현황.....	115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16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각하사유별 내역	116
〈표 2-3-4〉 진정대상 기관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17
〈표 2-3-5〉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 조치내역	117
〈표 2-3-6〉 기타 진정사건 진정 및 처리 유형별 현황	136
〈표 2-3-7〉 기타 진정사건의 각하사유별 내역	137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0
〈표 2-4-2〉 차별사유별 접수 현황	141
〈표 2-4-3〉 각하사유별 처리 현황	141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내역	142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진정내용	153
〈표 2-5-1〉 법집행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159
〈표 2-5-2〉 분야별 인권교육 강사단 수	159
〈표 2-5-3〉 공무원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	160
〈표 2-5-4〉 인권영화 제작 현황	163
〈표 2-5-5〉 인권만화 제작 현황	164
〈표 2-5-6〉 인권자료실 장서 현황	168
〈표 2-6-1〉 국제회의 참가 현황	176
〈표 2-6-2〉 국외인사 위원회 방문 현황	185
〈표 2-6-3〉 국제연대서한 발송 현황	187
〈표 3-1-1〉 인권협약중 유보조항	210
〈표 3-1-2〉 인권침해 관련 주요 조사대상기관	218



그림목차

〈그림 1-2-1〉 위원회 및 사무처 기구도.....	23
〈그림 1-2-2〉 직원 성별 분포	25
〈그림 1-2-3〉 외부채용자 분포.....	25
〈그림 1-2-4〉 진정사건 처리 흐름도	28
〈그림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	90
〈그림 2-2-2〉 진정사건 분류.....	92
〈그림 2-2-3〉 피진정기관별 분류	98
〈그림 2-2-4〉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04



연간보고서 요약

2001년 11월에 출범한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인권 보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큰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로서,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 탄생을 의미한다.

국가인권기구는 19세기 초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옴부즈맨(Ombudsman)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하고 1976년 양대 국제인권규약, 즉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이어 1991년 파리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을 결의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6월 빈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이후 제도권에서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설립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및 독립성 등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에 3년여 동안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결국 2001년 4월에 이르러서야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직제령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위원회 간의 이견이 속출하는 등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후 사무처가 구성된 2002년 4

연간보고서 요약

월 1일까지 4개월여 동안 한 명의 직원도 없이 파행적으로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는 첫째 인권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즉 인권 관련 '준국제기구'의 국내적 출범, 둘째 기존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탄생, 셋째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 감시자 및 인권 옹호자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신속·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가기관의 탄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진정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특정 사항에 대해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사무처 조직은 당초 1실 4국 2관 25과 1소속기관, 정원 321명을 정부의 조직담당 부처에 요구하였으나, 협의 결과 인권정책실이 인권정책국으로 축소·조정되는 등 위원회 요구안보다 대폭 축소된 5국 18과 1소속기관, 총원 215명(정원 180명, 파견 공무원 20명, 전문 계약직 공무원 15명)으로 조정되었다.

사실상 출범 원년인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의 활동과 실적은 이 보고서 제2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관련한 주요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2002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16개 인권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등 6개 정부 정책,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관련 정부 보고서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영역 등 24개 과제에 대하여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관련 업무 수행을 통해, 그 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던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권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여 위원회의 인권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 혹은 상담과 관련된 위원회의 주요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기부터 전화, 방문(대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 접수를 받았으며, 면진진정제도를 통해 구금·보호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사항과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안내 및 회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민원 안내와 인권상담 기능을 강화하였다.

위원회가 진정 접수를 시작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진정사건은 3593건, 상담은 3249건, 안내는 9417건으로 총 1만 6259건에 이르는 상담 및 민원이 접수되었다. 진정 접수된 총 3593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2833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189건으로 5.3%를 차지함으로써 차별행위보다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총 2833건 중에서 1113건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진정건수의 39.3%를 차지해 가장 높

연간보고서 요약

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이들은 각각 839건, 300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중 29.6%, 10.6%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권침해 대상은 구금시설과 경찰·검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사건을 이송받은 조사국의 조사·구제 활동 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다루고 있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인권침해 진정사건 2833건 중에서 1360건을 처리하고, 1473건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처리율은 접수사건 대비 48.0%인데, 처리율이 낮은 이유로 조사 인력의 절대 부족, 조사 기법의 미숙 및 관계 기관들의 미온적인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진정대상 기관별 조사 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국가기관(78.0%), 검찰(63.0%), 경찰(44.8%), 보호시설(41.2%), 군대 관련(39.1%), 구금시설(35.7%) 순이며, 고발·권고·합의권고 등이 인용된 경우는 검찰, 경찰, 구금시설, 기타 국가기관 분야다.

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구제조치(법 제48조) 또는 직권조사(법 제30조제3항)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진주교도소 AIDS 환자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건의 권고’ 등 3건의 긴급구제조치, 그리고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등 2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권침해행위 조사·구제에 대한 선례 및 경험 부족, 조사 권한의 한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수사기관·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 처리를 통하여 해당 기관 스스로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보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수사관행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부분에서는 국가기관, 공·사 기업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발생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활동 추진실적을 다루고 있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차별사건은 모두 189건으로, 이 가운데 102건을 처리하고, 87건은 조사 또는 검토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 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 차별,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등 법이 정한 18개 차별 분야에 대해서 조사·구제하였다. 처리한 사건 중에는 진정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구제한 사건도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인권침해행위에 초점이 모아져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으며, 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차별 유형 판단기준 등도 채정립되지 않는 등 한계점들이 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용에서 장애인 차별, 교수 임용에서 나이 차별, ‘살색’ 등 피부색에 대한 차별문제 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진일보시킨 점은 위원회가 일구어 낸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권교육 및 홍보에 주력해 온 위원회의 활동 및 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문화를 일궈 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실시, 이를 위한 인력 기반으로 강사단 구축 및 물적 기반이 되는 인권교육 자료개발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는 국가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검찰·경찰·교정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검찰·경찰·교정 공무원 및 교사용 인권교육 교재 및 영상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한편, 국민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연간보고서 요약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각종 대중적 문화 콘텐츠 사업을 기획하고, 인권동화·만화·영화·광고 제작,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인권 홍보, 진정 안내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제6장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부분에서는 민간 부문의 활발한 인권옹호활동을 지원하고 이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협력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인 2001년 8월부터 2002년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위원회 ‘배움터’ 시설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인권 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무료로 개방해 시민사회의 여론형성과 인권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인권단체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정보를 종합한 「인권실무핸드북」을 제작하였으며, 2000여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기본 토대 마련은 물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제사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인권 관련회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워크숍, 외국인사 초청 방문 및 국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2002년 11월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7장 ‘기획사업: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부분에서는 가족해체에 따라 발생한 아동, 청소년, 노인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시설거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시행된 2002년 기획사업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기획사업은 어린이·노인의 인권문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 이들의 인권문

제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며, 아동·노인의 인권문제 등이 우리 주위에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획사업이 위원회의 여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고, 아동 및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음으로 인해 첫 해의 기획사업은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는 아쉬운 부분이다.

제3편에서는 지난 1년간의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은 ‘주요 인권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법·제도의 정비 과제로 국가보안법 개폐, 보호감호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방지,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사항 철회 촉구 등을 선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인권보호 기능강화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 인권 관련 법령조사 및 광범위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위원회의 내부역량제고 방안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와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권 신장을 위해 고민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로 정부가 정책 수립시 인권을 주요한 가치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그 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교도소·군 영창 등 구금시설과 정신병원·양로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차별행위 진정사건 조사 및 홍보를 통하여 평등권

연간보고서 요약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였다. 넷째, 인권교육 교재 발간·배포, 전문 강사단 구성, 순회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검찰·경찰·교도관·일선 교사 등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다섯째,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가입 및 국가인권기구간의 교차방문 등으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과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반인권적인 관행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간할 인권백서에 자세히 수록할 예정이다.

이러한 위원회 출범 원년의 성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벌일 것이며, 위원회 내부의 자기 성찰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선도하는 인권 감시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제 1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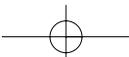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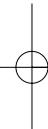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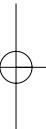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헌법 제10조



제 1 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간에 걸친 인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 및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 2001년 11월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인권 보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뜻 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인권 전담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로서,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 탄생을 의미한다.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한층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관행 등 인권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제고도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출범한 우리 위원회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인권 감시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으로는 각 나라별로 운영되는 국내법상의 기구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을 수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구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나라의 국가인권기구가 자국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태동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원을 가지며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및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성숙되어 온 논의의 결실이라는 의미다.

국가인권기구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는 19세기 초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에서 출현하였다. 이 제도는 삼권 분립 체제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삼권분립 이론에 따른 국가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는 국제인권법과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온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통해 재편되면서 유엔이 자연스럽게 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활동 과정에서 각 나라들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집단(Information Groups) 또는 국가 단위의 인권위원회(Local Human Rights Committees)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권유하면서 국제사회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1976년 국제인권규약, 즉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유엔의 인권 기준 설정 작업의 일환이었다. 인권 전반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의 효력 발생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유엔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국내 기구이면서도 국제규범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민주화를 촉진하고 인권보장 체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

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Principle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일명 “파리원칙”)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 1993년 6월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와 같은 해 12월 유엔 총회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본 준칙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파리원칙」은 먼저,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적어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구현하는 대표적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하며, 헌법 개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정기관으로 만들 경우에도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등 네 부분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들을 각 나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92/54)와 파리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하여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후 1994년 7월 서울에서 제3차 아·태지역 인권 워크숍, 1995년 11월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 등이 차례로

열리고, 1996년 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인권대회에 참가하는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약하였고, 당선 후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제도권 내에서도 급속히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는 1998년 4월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을 발족시켰고, 같은 해 10월 인권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하는 인권법 시안의 주요 내용이 법무부 산하기구로 추진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사실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입법 과정의 최대 모순은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법무부가 법안을 기초하고 입법 과정을 주도했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입법 구도 때문에 처음부터 법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기구의 조사·구제 기능 때문에 누구도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인권단체들은 처음부터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서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감시 대상인 법무부가 부당하게 국가인권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반 통로들을 원천봉쇄하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는 1998년 9월, 29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를 결성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공추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정부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 그리고 각 정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다.

이후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권단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9년 4월 공추위는 7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재편, 별도의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공대위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다가, 2001년 4월에 이르러서야, 공대위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21회 임시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의 수정안이 가까스로(재적의원 273명, 찬성 137명, 반대 133명, 기권 3명) 통과되었다.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시도를 극복하고 최종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규정하였다. 위원회 및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면책특권 미부여, 인권위원 임명시 청문회나 국회 동의 절차 미비,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족, 조사대상 기관의 제한, 동행명령권·증인신문제도의 부재 등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인권단체의 3년간에 걸친 끈질긴 투쟁이 ‘절반의 승리’로나마 귀결되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2001년 5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원회법 공포안을 의결하였으며, 5월 24일 법률 제6481호로 공포된 위원회법은 6개월 후인 11월 25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 과정

3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법은 통과되었으나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었다. 정부에서는 ‘독립적 국가기구’라는 독특한 위상과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관 출현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동안 민간단체 논의를 대변해 오던 공대위는 권한이 축소된 위원회법 제정을 비판하며 2001년 5월 해체하였다.

2001년 8월 1일,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창국 변호사가 내정되고 위원회 출범 시한인 11월 25일을 3개월여 앞둔 8월 20일, 국무총리 훈령 제420호로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파견 공무원 8명, 민간 출신 전문가 7명 등으로 행정지원반과 법제운영반을 구성, 초기 설립준비 작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획단은 시행령 및 규칙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시안 준비, 업무처리 절차 및 지침시안 준비, 사무처 구성안 준비 등의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인권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위원의 임명 지연 등으로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출범을 겨우 40여 일 앞둔 10월 9일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그리고 자신이 지명한 4인 등 모두 11인의 인권위원을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인권위원들은 임명되었지만 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과제였다. 당시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상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은 물론 시민사회의 민간 전문가들도 보다 용이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을 성안하였으나 정부 부처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위원회법 부칙 제1항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나 직원 정원 및 채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인사 주무 부처와의 이견으로 인해 그때까지 직제령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기획단은 2001년 11월 24일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규칙」을 제정하여 ‘사무처 설치를 준비하고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는 임시사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설치하였다. 준비단의 주된 역할은 시행령, 직제령 및 위원회 규칙과 규정, 업무지침 시안의 준비, 사무처의 조직과 인사 및 예산안 편성, 청사 확보, 위원회 운영 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2001년 11월 26일, 사무처 소속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국가기구가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비록 파행 출발이었지만,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접수를 시작한 첫 날 122건의 진정을 접수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마음속으로 향해를 시작하였다.

관련 부처의 지나친 견제로 인해 시행령과 직제령이 2002년 2월 초에야 확정되었고, 2001년 10월 11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청된 최영애 사무총장 내정자가 4개월여가 지난 2002년 2월 19일 임명됨에 따라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한동안 운영되게 되었다. 이후 약 한달 반 동안의 직원 채용 과정을 거쳐 구성된 사무처는 2002년 4월 초에야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직제령 제정 과정 못지않게 시행령 제정 작업도 만만치는 않았다. 당시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령은 제정하긴 했으나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었다. 관련부처의 반대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관행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와 완전히 합의한 이후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위,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시설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인권협약의 담당부서 지정’을 규정한 조항 등이 각 부처의 반발로 끝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년간 위원회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범국가적 인권정책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이 문제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만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히 한 국가기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의 발현이다. 이제 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그 출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개략할 수 있다.

첫째, 위원회의 탄생은 국제인권기구의 국내적 실행, 즉 인권 관련 ‘준국제기구’의 국내 출범을 의미한다. 위원회법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인권이 더는 단순한 국내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며, 각 나라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약속된 인권규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

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탄생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가 그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기존의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인권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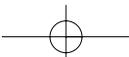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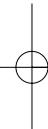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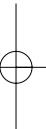
셋째,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비록 권한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관할 영역이 광범위한 편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 침해 조사·구제 업무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등에서 벌어지는 18개 유형의 차별행위를 모두 관할하는 차별조사·구제 업무도 수행한다.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교도소 등 330여 개 구급시설 외에도 900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도 감시의 대상이다.

넷째, 인권 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구제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구제 절차가 복잡해 차별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장애인·아동·노약자·성적 소수자·부랑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신속·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다.

끝으로, 위원회는 점증하는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보다 앞서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문제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이에 따라 진정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증점적으로 다루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아니라, 차별행위 구제를 국가인권기구의 중점 업무로 취급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국민들이 국가인권기구에 거는 기대 수준이 갈수록 상승된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나라는 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후진적인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인권 선진국으로 발

돕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앞장서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행을 앞당기는 견인차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제 2 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예산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진정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특정 사항에 대해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3개의 소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9조제1호, 제8호, 제9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1소위원회, 제19조제2호 및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2소위원회 그리고 제19조제3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3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조직은 당초 1실 4국 2관 25과 1소속기관, 정원 321명을 정부의 조직 담당 부처에 요구하였으나, 협의 결과 인권정책실이 인권정책국으로 축소·조정되는 등 위원회 요구안보다 대폭 축소된 5국 18과 1소속기관, 정원 180명(파견 공무원 20명, 전문 계약직 공무원 15명은 별도 합의)으로 조정되었다. 사무처에 총무과, 인권정책국, 행정지원국,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및 교육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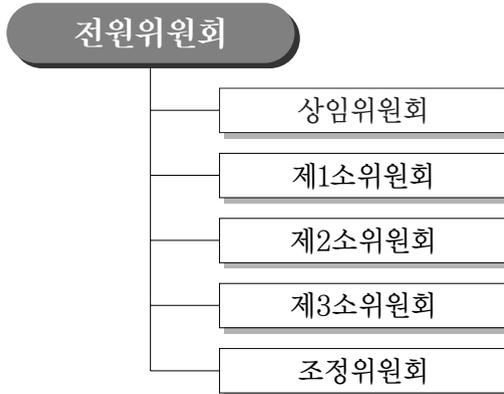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력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두며, 소속기관으로 인권자료실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소속기관직제」는 2002년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되었으며 위원회 기구도는 <그림1-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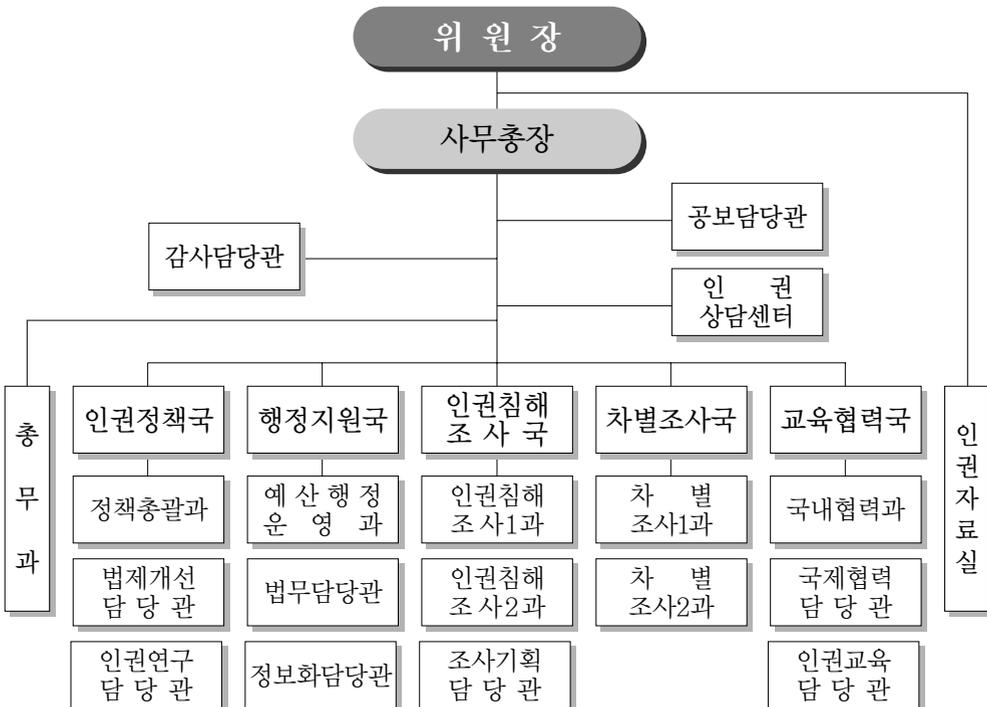
〈그림 1-2-1〉 위원회 및 사무처 기구도

위원회 기구도



※ 2003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가 각각 제 1, 2, 3 소위원회로 개칭됨

사무처 기구도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부처와 협의하여 2002년도 세출예산은 192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표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53억원(27.6%),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 기본사업비가 94억원(48.9%), 인권 관련 홍보 등 주요 사업비는 45억원(23.5%)으로 대부분 기관 설립에 따른 청사 확보 및 집기구입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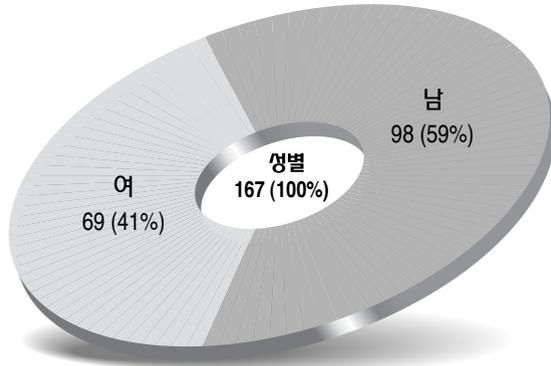
<표 1-2-1> 2002년도 예산

(단위:백만원)

계	인건비	사 업 비			비 고
		소 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19,203	5,309	13,894	9,372	4,522	
(100%)	(27.6%)	(72.4%)	(48.9%)	(23.5%)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이 제정되자 위원회는 사무처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1월 제1차 공무원 전입 31명을 시작으로 2월 15일 사무처 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 <표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12월 31일 현재 167명(정원 180명)의 인권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69명(41%), 남성 98명(59%)으로 여성의 비율이 타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직종별 구성도 정무직 4명(2%), 일반직 70명(42%), 별정직 49명(30%), 기능직 31명(18%), 계약직 13명(8%)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으로는 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330여 개 구금시설과 900여 개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와 차별행위 개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1-2-2〉 직원 성별 분포(2002.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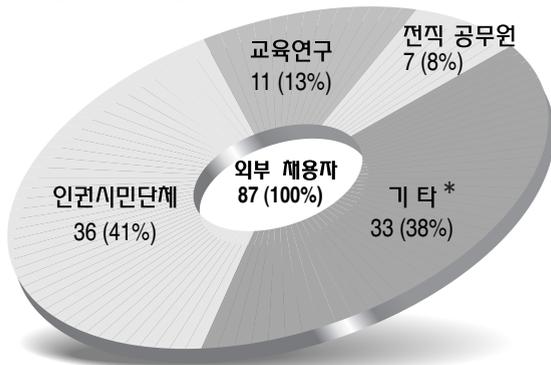
※ 2003. 3월말 10명 추가 발령 예정

〈표 1-2-2〉 직원 유형별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기존 공무원	외 부 채 용
계	167(100%)	80(48%)	87(52%)
정 무 직	4(2%)	-	4(5%)
일 반 직	70(42%)	65(81%)	5(6%)
별 정 직	49(30%)	3(3%)	46(53%)
계 약 직	13(8%)	-	13(15%)
기 능 직	31(18%)	12(16%)	19(21%)

〈그림 1-2-3〉 외부 채용자 분포(명)



* 민간기업, 공기업, 언론, 정당 등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책 기능, 교육·홍보 기능, 조사·구제 기능과 국내외 협력 기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정책 기능은 위원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4호),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6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 협의(제20조), 정부 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 청취(제21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22조), 청문회 운영(제23조), 시설의 방문조사(제24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및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제28조) 등은 위원회가 정책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이다.

인권 교육·홍보 기능(제19조제5호)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제26조제2항),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제26조제3항),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 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제26조제4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요청 또는 공동연구(제26조제5항),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제26조제6항)할 수 있다.

조사·구제 기능(제19조제2호 및 제3호)으로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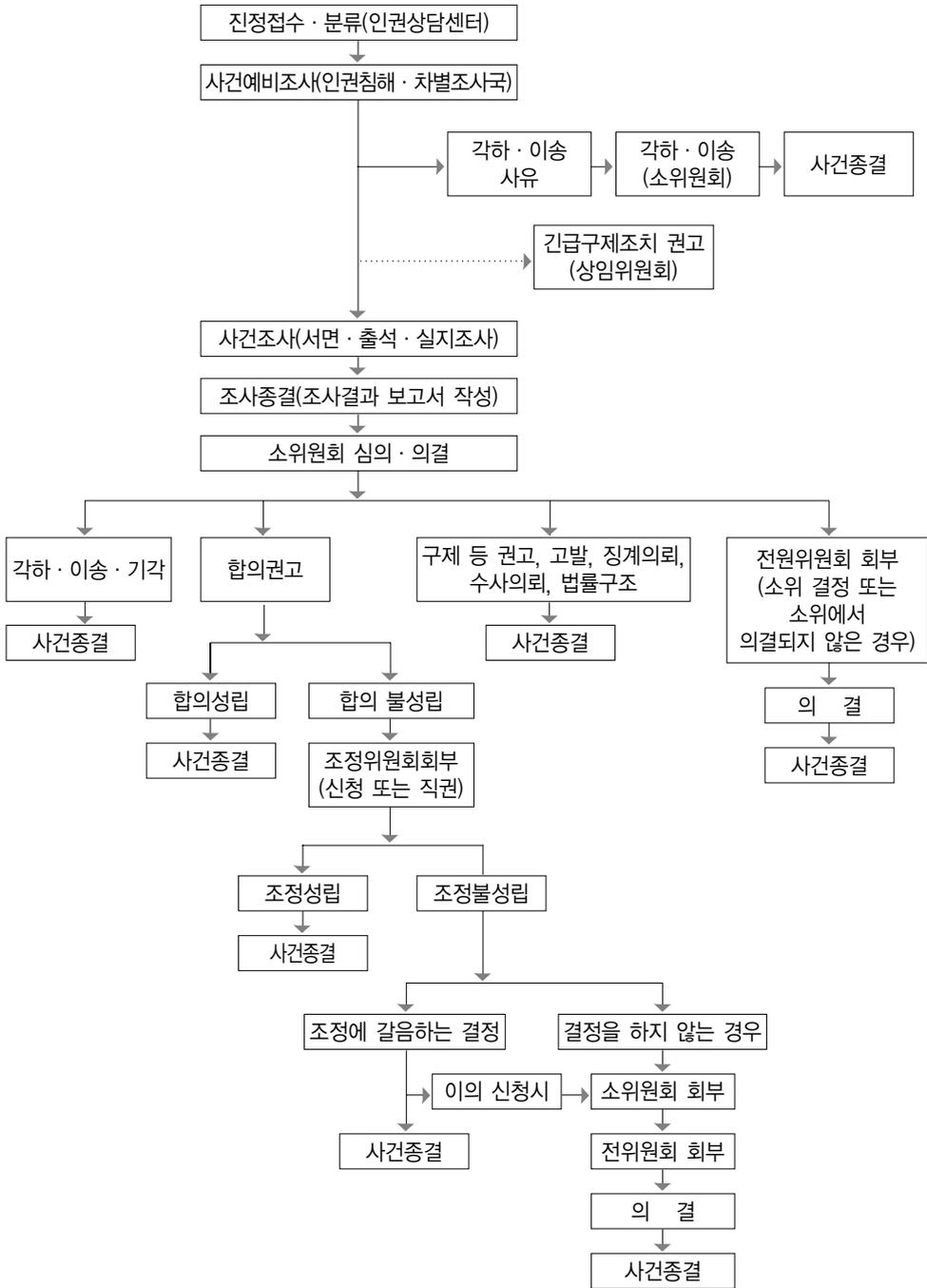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 조사의 방법(제36조) 등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조사 대상으로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흐름도는 <그림 1-2-4>과 같다.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상임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직권조사 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국내외 협력기능으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제19조제8호)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사항(제19조제9호)을 명시하고 있다.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그림 1-2-4〉 진정사건 처리 흐름도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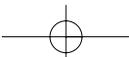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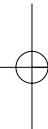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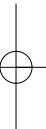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7장 기획사업 :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제 1 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1절 개요

정부의 정책·법령·제도 및 관행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면서 인권침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의 근원적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법령을 제·개정하는 데 있어 면밀한 검토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제19조)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법령과 정책, 기타 제도 및 관행에 의해 야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함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와 협의(제20조) 등을 통해 관련 정책·법령·제도가 인권보호와 향상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제19조)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인권정책 기초 자료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요 인권조약의 정부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내 이행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등 13건의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2건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 개정때 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번호	날 짜	권고제목	권 고 내 용	해당부처	결 과
1	2002. 2. 20 (상임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형벌규정, 절차규정 및 국가 기능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테러방지 예방 및 대책은 기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가능	국 회	수 용
2	2002. 5. 8 (소위 7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개선 권고	해외여행 규정 삭제	통일부	미반영
3	2002. 5. 10 (소위 14차)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한센병 환자범위, 권리제한, 병원장 권한 집중방지	보건복지부	일부반영
4	2002. 5. 13 (소위 9차)	여의도 성모병원 진폐 환자 병동 공중보건의 배치협의	진폐 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 협의	보건복지부 노동부	수 용

번호	날 짜	권고제목	권 고 내 용	해당부처	결 과
5	2002. 6. 10. (부처협의)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 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의	사법경찰관의 최장 12시간 긴급감청부분 삭제	정보통신부	수 용
6	2002. 7. 20 (소위 14차)	강릉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복지시설 위탁 해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것	강릉시청	수 용
7	2002. 8. 13 (소위 15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율통신제한 조치가 바람직	정보통신부	일부수용
8	2002. 8. 13 (소위 15차)	부랑인 시설 설치·운 영에 관한 개정안 의 견 제출	노숙자를 부랑인 개념에서 제외 시설장 재량으로 입소자의 퇴소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	보건복지부	수 용
9	2002. 8. 27 (소위 16차)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 서약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사상전향 거부행위가 인권신 장에 기여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수 용
10	2002. 9. 24 (소위 18차)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동복지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포함	청소년 보호위원회	입법과정 진행중
11	2002. 9. 27 (부처협의)	반인도적범죄등의 처벌에관한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	법안 편제의 수정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의 재고	법무부	입법과정 진행중
12	2002. 9. 25 (소위18차)	보험업법개정안 제165조에 대한 의견 제출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하여 관 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 삭제 요청	재정경제부	수 용
13	2002. 10. 28 (소위19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한시규정	조사기간의 한시규정 개정 또 는 폐지, 강제력 있는 조사권 부여	국 회	일부수용
14	2002. 11. 4 (소위20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 견 제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생명업무에 상업적 영리 추구 기관의 참여, 업무위탁 제한·축소 등	보건복지부	입법과정 진행중
15	2002. 11. 25 (소위21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권고	산업재해 판정시 남녀차별 문제 시정	노동부	수 용

※소위 :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1)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2001년 11월 정부는 9·11 미국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전 세계의 테러 대응책 마련 및 ‘안전 월드컵’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이 발의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국제규약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2001년 11월 30일 국회의장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청회를 여는 등 신중한 절차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하도록 권고하였다. 2001년 12월 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청문회를 열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대한변호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였다. 아울러 한국헌법학회 및 국제인권법학회의 의견을 조회하고, 추후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2002년 2월 20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후 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직접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법 제정의 부당성을 설득한 바 있다. 또한 월드컵이 무사히 마무리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은 수면 이하로 가라앉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별도의 테러방지법이나 대책기구를 두지 않아도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 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대검찰청(공안부 공안기획관),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건설교통부(항공국), 관세청(조사감시국), 해양경찰청(경비구난국), 경찰청(경찰특공대) 등에 테러대책 관련 부서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형사법에 의한 테러 범죄 형사 처벌, 테러 자금 봉쇄 및 국제 협력을 위한 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한 테

러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월드컵 대비 테러대책은「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등에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및 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전 월드컵 수행을 위한 한시법 제정’ 논리도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협의회, 분야별 대테러대책회의 등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테러방지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테러의 개념, 테러단체의 범위(법안 제2조)가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테러범죄미신고죄(법안 제21조) 및 허위신고죄(법안 제22조) 관련 규정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범을 집행할 소지가 있으며,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 관련 규정(법안 제11조)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소지 및 외교적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며, 군 병력 출동 관련 규정(법안 제14조)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안에 규정된 테러대책기구는 국가 조직체계를 재편함으로써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비공개 운영(법안 제7조)은 공개 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위원회에서는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있는 조항들을 빼면 테러방지법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개선 권고

통일부는 2002년 4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취업보호 절차 등을 보완하

여 법령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북한이탈주민관련법률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개정령안의 일부 신설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2002년 5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또한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보완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정령안 제42조제2항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여행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은 법의 보호 대상자에게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시행령안의 신설 규정이 모법 제22조(거주지보호) 취지에서 벗어나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외여행 제한의 사항이 추가되는 등 법형식상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은 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 및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을 달리 규정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면 모법에서 제한의 근거, 절차와 방법, 권리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주체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상 제한은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들어 위원회는 시행령안 제42조제2항 후단의 신설 규정의 철회 또는 모법에 해외여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더라도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법체계상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부수적인 의견으로 시행령 제1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서 제3자나 대리인을 통한 권리 행사를 법률의 근거 없이 또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제17조 보호신청이 거부된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 제21조 정착지원시설 입소시 인권보호

와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성과 제41조 실태조사규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하였다. 통일부는 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에 따라 개정령안의 표현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으나 사실상 초기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제정안」에 관한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는 2002년 4월 한센병 환자 등의 입·퇴원의 기준과 절차, 자치회의 활동, 일반인 출입통제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부령인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안」(이하 “규칙안”)을 제정하면서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위원회는 규칙안에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 검토를 통해 2002년 5월 개선을 권고하였다.

규칙안은 공공시설인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효과적인 치료와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환자들의 권리의무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만 전염성이 거의 없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권리제한을 가함으로써 인권침해가 우려되었다.

첫째,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자치회 운영 등에 있어 병원장의 승인 등,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이 규칙의 성질상 포함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규정들이 있었고, 둘째, 환자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도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권리제한을 가져오게 되며, 셋째,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면회, 입·퇴원 등과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었다. 넷째, 원장의 권한이 비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와 절차가 없었다.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규칙안의 적용대상 환자에게 직접적인 인권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는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과 병력자들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존의 훈령이나 병원 내규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였던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환자들의 거주이전 및 자치권, 병원장의 권한 집중 방지 등 검토된 문제점들

을 충분히 인식하여 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안을 수정하였으나 규칙의 적용 범위, 한센병 환자의 정의, 병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조항 등에는 여전히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환자의 정의 규정에서 통원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마치고 재활을 준비하는 한센병력자는 제외되어야 하며,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와 관련 없는 병원장의 권한은 제한되어야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02년 7월 다시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원 대상자에 여전히 한센병력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입원 결정, 전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치, 환자현황 보고 규정 등을 다시 대폭 수정하였으며 환자의 외출·외박, 자치회 운영, 퇴원절차 등 병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안을 2002년 10월 확정, 공포하였다(보건복지부령 제224호, 2002. 10. 24 공포).

(4) 여의도 성모병원 진폐환자 병동 공중보건의 배치 협의

2002년 4월, 여의도 성모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적자를 이유로 들어 산업의학과 진폐환자 병동을 폐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병동에 전공의가 없게 되어 대체인력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위원회는 성모병원에 대한 의견청취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진폐환자 병동에 의료진 부족이 주된 문제이며 공중보건의 배치가 우선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정책, 진폐병동 역할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공중보건의 배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대학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의 취지에 반하며, 산업의학과 전공의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서울 소재 민간 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령상 그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이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었고, 특정 병원에 공중보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진폐환자 관련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진폐환자보호종합대책」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 제도, 진폐와 관련한 여의도 성모병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여 노동부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의도 성모병원을 진폐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중보건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후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관련 부처의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대해 위원회는 권고의견을 유보하기로 하고, 향후 주무 부처간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권고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부가 2002년 9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점점 취약해지는 진폐 예방과 치료 분야에 시급한 의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는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있다.

(5)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협의

정보통신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2001.12.29)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자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이하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규칙안 제2조의2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협조절차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적 입장이 2002년 5월 보도되는 등 위원회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규칙안 제2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의 협조절차) 내용은 사법 경찰관이 집행하는 긴급감청에 협조한 통신사업자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와 30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였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긴급감청 규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고자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관련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건의)을 참조하여 검사의 승인 없는 감청이 장기간 행해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취지였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규칙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긴급감청의 경우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경찰관이 최장 12시간 동안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위원회법 제20조 통보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안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고, 법제처에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또는 반려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2002년 6월 7일 규칙안 제2조의2를 삭제하고 통신사업자는 관할 지청 또는 지점의 해당 검사에게 긴급감청 착수시간 등이 포함된 감청 사실을 팩스로 통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하여 검사가 사안별로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남용을 통제하도록 하는 공식적 의견을 위원회에 알려 왔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의견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제처에 규칙안 심사보류 요청을 해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부에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시 규칙안 제2조의2 삭제 의미를 유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인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령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며, 정보통신부가 기타 소관 법령 중 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6)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선 권고

강릉시는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하 ‘시설조례안’)과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하 “기금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2년 7월 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한 최초의 사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례안을 검토한 후 시설조례안 일부의 인권침해 우려 조항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시설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기금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에 의거하여 강릉시 관내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의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각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과 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조례 등과 비교해 검토를 하였다. 그 중 시설조례안 제8조제1항(계약의 해지)제4호 ‘기타 공익상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포괄적 내용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수탁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조항을 명확하게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이 조례의 이행에 있어 항상 장애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강릉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규정의 표현을 수정한 후 2002년 11월 조례를 확정하였다.

(7)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개선 권고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 단속)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99헌마480)을 내림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상의 불건전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월 7년 27일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및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외국의 입법

례와 관련 법령 및 국제규약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정안 제53조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다.

개정안 제53조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상의 불법행위를 다른 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에 의해 이용정지·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 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국의 입법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서 볼 때 통신제한 조치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조치는 실제 전기통신이용자의 통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이 정보 접근가능성의 무제한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사적 규제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행정명령이라는 공적 규제에 의하여 통제하려는 것은 행정규제의 최소화 원칙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개정안 제53조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제1항제1호 ‘음란한 내용’, 제3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 제7호 ‘국가기밀’, 제3항제2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 집행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의 행정통제보다 정보통신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변경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권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8)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개정령안」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는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2002년 7월 위원회법 제20조에 근거,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개정령안이 부랑

인의 정의, 입·퇴소에 관한 규정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령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규칙의 한계, 개별조항에 있어 인권침해 우려 부분 등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의거하여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종사인력에 관한 신고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개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개정령안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첫째, 개정령안 제2조제1호 부랑인과 노숙자의 분명한 개념정리 없이 부랑인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노숙자를 부랑인으로 보아 부랑인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노숙자의 특성을 무시한 처우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다. 둘째, 개정령안 제9조제2항, 제10조 퇴소 심사 대상 및 당연 퇴소 대상에 대한 판단자와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입소자는 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시설의 장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장기 수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부랑인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지원과 감독의 조화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개정령안 제2조제1호 부랑인에 포함되는 노숙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과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서 퇴소 심사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판단근거를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2년 8월, 권고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개정령안을 수정하였음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왔다.

(9)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에 대한 의견 표명

2002년 6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접수 사건(사건명:대전 교도소내 전향공작전담반의 전향강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상전향제도의 반

인권적 제도 여부, 전향거부 행위의 성격, 전향제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도와와의 관련성 및 준법서약제도의 반인권성 여부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상전향제도의 연혁, 헌법 및 국제규약 등의 관점에서 인권침해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하였다.

사상전향제도는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제정으로 마련된 제도로, 해방 이후에도 1956년 「가석방심사규정」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 이 제도는 형식과 내용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제도로 19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준법서약 여부에 대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권력이 가석방을 조건으로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표현을 사실상 강요하는 점에서 사상전향제도와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전향 사상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 역시 앞서의 사상전향제도가 가지는 반인권성을 그대로 내포하여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가가 강요하는 전향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표명하였다.

(10)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조항을 보완하고 성범죄 대상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당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2년 8월 위원회에 의견 요청을 해 왔다. 위원회는 개정안 내용 중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구체적 개정 조항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보완적인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성보호 범위의 확대(제2조), 청소년 성보호에 대해 기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의 의무 추가(제4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외에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성교행위 등에 대한 처벌(제5조),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친고죄 적용 배제(제10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제한(제21조) 등이었다. 위원회는 개정안 중 제5조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의 추상성과 제10조 친고죄 조항의 삭제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인권 보호 강화 여부, 제21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2002.9, 청소년보호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인권침해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 제21조제1항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있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하였다.

(11) 「보험업법개정안」 제165조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2002년 7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65조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현행 「보험업법」 제182조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 진술서의 제출, 장부·서류 등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62조는 조사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조사할 수 있게 하면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요구권을 갖게 하는 등 그 권한을 더욱 강화, 준사법적 권한까지 갖게 하였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이미

효과적 조사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다시 제165조에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주어 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제165조가 별다른 단서 없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목적 달성을 통한 이익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와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개별법인 개정안에서 다룸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원칙이 유명무실화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설되는 제165조 규정의 삭제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002년 11월 5일 국회에 상정, 계류중이다.

(12) 「반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별법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

1998년 로마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관한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가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부는 향후 예상되는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반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이행법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이행법안에 대하여 대상 범죄 등 주요사항과 특성 등에 대해 로마규정의 취지, 규정내용 및 타국 법체계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행법안은 첫째, 편장철의 체계에서 볼 때, 로마규정의 3대 범죄에는 시효가 배제되는 점과 ‘사범방해죄’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및 다른 당사국과의 협력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점 등에서 이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절차 및 특례에서 규정(제3편)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둘째,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규정에서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공조거절사유’는 「범죄인인도법」이

나 「형사사법공조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표제를 차용한 것으로 오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수사하고 있거나 공소제기되어 있는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로마규정의 3대 중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좀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에서 인도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 사법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러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이행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이외에도 관련 부처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자체 논의가 진행중이다.

〈표 2-1-2〉 반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별법안 주요 골자

제1편 통칙		법의 목적,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제2편 죄와 형	제1장 반인도범죄등	제1절 총칙	적용범위, 형사책임조각사유, 상급자의 형사책임, 시효, 면소판결
		제2절 각칙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 미수범 처벌
	제2장 사법방해죄	국제형사재판소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제3편 국제 형사 재판소 관련 절차 및 특례	제1장 일반조항	국내 수사 사실 통보, 국가안보정보·제3국(기구)제공정보의 보호,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의, 비밀유지, 공적 지위에 따른 면책불가	
	제2장 범죄인 인도	ICC 청구에 따라 소추, 재판, 형 집행을 위해 ICC에 범죄인 인도	
	제3장 형사사법공조	ICC 요청에 따라 ICC의 수사, 재판, 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제공	
	제4장 형의 집행	ICC에 신청하여 대한민국에서 ICC 범죄자 징역형 집행	
제4편 부칙		공포일 시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준용, 범죄구성요건	

(1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 권고

시민·인권단체를 비롯하여 학계, 정치계 등에서 토론회, 입법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2002년 10월 17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의문사 피해자인 허영춘(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씨가 우리 위원회에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에 대한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85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30건에 대하여 조사 기일에 쫓겨 실제적 진실 규명을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2년 9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3조는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그 동안 소환 대상 참고인들 중 상당수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관계기관들의 비협조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강제력이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2년 10월 28일 국회의장·민주당 및 한나라당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였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2002년 12월 5일 개정되어 조사기간 연장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1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는 2002년 9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하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

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부처, 시민단체,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과 학자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률제정안에 대해 향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법률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견은 첫째, 인간개체복제 금지 및 배아에 대한 보호가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난자나 자궁의 제공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생명 관련 업무는 국가기관이

〈표 2-1-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 주요골자

구 성	항 목	내 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국민의 자기결정권
제2장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준수사항
제3장	인간복제 등	인간복제의 금지, 이종간 착상 금지 등
제4장	인간배아의 생산과 이용	배아의 생산·이용·제공·관리, 배아생산 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배아연구계획서, 동의 및 철회, 준수사항
제5장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의 제한·동의·실시, 검사기관의 신고 및 정도관리, 검체의 양도·폐기, 기록의 관리, 준수사항
제6장	인간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유전정보 등에 의한 차별금지, 유전자은행의 허가, 인간유전정보 등의 보호, 연구계획서 승인
제7장	유전자 치료	유전자 치료의 범위, 임상연구 실시, 유전자 치료의 시술
제8장	감독	보고·조사, 폐기명령, 기수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청문, 과징금, 수수료
제9장	보칙	국고보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배아 및 유전자 관련 업무의 위임, 비밀누설의 금지
제10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 칙		경과조치, 일몰규정 등

주로 담당하고 상업적 기관의 참여나 위탁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명 관련 업무에 대한 상업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생명윤리 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을 시행령과 부령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개별 조항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자료열람, 수집, 복사 등)를 최대한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행내용에 대해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도록 하고,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있어 보완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인간배아의 생산·이용에 있어 향후 기술발전으로 인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과 여성의 난자 등의 제공에 있어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업무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관위원회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한다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유전자 검사,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며, 상업적 유전자 검사기관을 인정하는 내용 등과 관련하여 유전자 검사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유전정보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유전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법률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수입된 배아’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그 허용 여부,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2002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권고

2002년 1월 3일과 3월 20일 곽모씨(남·39)는 2000년 6월 택시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뒤, 2001년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흉터가 남은 여성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남녀차별이라며 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우리 위원회는 진정한 및 피진정인(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조사, 관련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대한 검토, 의료 및 산재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 뒤, 2002년 9월 9일 각하를 의결했다. 이는 2001년 6월 진정한 곽씨가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었고, 2002년 7월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가 각하되었기 때문인데, 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는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됐을 경우’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곽씨의 진정을 각하하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사건을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에 상정, 논의 끝에 노동부에 동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되었다.

검토 결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의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제7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를 제12급으로 명시한 반면, 남성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를 제12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를 제14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산재 및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남녀의 등급을 달리 규정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사회통념을 현대사회에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처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문제라는 점 등을 지적한 뒤, 장해등급과 보상금 지급액 등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얼굴에 흉터가 남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31조가 남녀를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위원회법 제30조)라고 보고, 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2003년 1월 5일 위의 규정을 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40여 년 동안 남아 있던 남녀차별적인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다.

(16) 기타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위원회는 개별 진정 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령에 대하여 조사·연구 및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수용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혜택을 요구하는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정지의 차별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를 통해 수용자의 경우 당연한 국가의 보호자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급여정지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군인사법시행규칙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외국인 간이귀화제도 등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또한 공소시효배제 입법 관련 토론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유럽인권협약상 체포·구속 등의 기준에 비추어 국내 법제를 검토하였다.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표 2-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 등 6건의 정책 권고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1)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표명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0조). 위원회는 2002년 5월 27일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와 시위의 자

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는 정부가 월드컵대회 개막을 즈음해 치안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12개부·청 및 10개 월드컵대회 개최도시 관계관 회의를 통해 ‘최근 시위 양상에 대한 대책’, ‘월드컵대비 노사안정추진대책’, ‘월드컵·아시안 게임 대비 정부 특별안전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내용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 2-1-4〉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권고

번호	날 짜	권고제목	권 고 내 용	해당부처	결 과
1	2002.5.28 (소위9차)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표명	대회기간중 집회·시위자유보 호, 노동기본권 행사보장, 불법체류단속의 자제 등	국무총리실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미수용
2	2002.7.23 (소위14차)	월드컵 기간중 집회·시위자유에의 침해 유감 표명	평상시는 물론 국제행사시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	경찰청	미수용
3	2002.7.30 (소위11차)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에 대한 정책권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률을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정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결격 사유 재검토	행자부 경찰청 감사원	수 용
4	2002.8.13 (소위15차)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등	국무총리실	미수용
5	2002.9.9 (소위17차)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체벌금지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개정	교육인적 자원부	미수용
6	2002.10.28 (소위19차)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직권수정 권고	인권의식 신장을 제한하는 조 치 수정, 차별적 인식조장 내용 수정	교육인적 자원부	수 용

※ 소위 :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정부의 ‘공권력 확립방안 및 대회 관련시설 특별치안구역 설정운용’ 과 관련하여 월드컵대회를 명분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특별치안구역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고, 중복 집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통고 관행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심검문시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침시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행정력을 총동원한 노사 평화 선언시 우려되는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시달,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의 자제와 인권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리고 위원회는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러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등으로 ‘인권현장확인반’을 구성하여 5차례에 걸쳐 활동을 벌였다. 인권현장확인반 활동은 집회 주관 단체 및 경찰 양측으로부터 과잉진압, 폭력시위를 상호 자제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집회 시위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유감 표명

2002년 7월 23일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월드컵대회 기간(5.31~6.30) 중 집회·시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평상시는 물론 부산아시안게임(9.29~10.14)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시에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청이 7월 10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같은 기간(5.31~6.30)에는 총집회 신고건수 7607건 중 108건을 금지 통고하였으나, 2002년에는 총집회 신고건수 1만 599건 중 391건을 금지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지통고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362% 증가했으며, 총 신고 대비 금지비율은 1.4%(2001년)에서 3.7%(2002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집회 주최자의 시위 전력 때문에 불법폭력시위가 명백하게 예상된다

이유로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우가 2001년 같은 기간에는 1건인데 반해, 2002년에는 150건으로 무려 150배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헌법 제21조에 “집회의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청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집회 주최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기준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 집회의 금지사유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중복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금지한 집회는 16건이었으나 월드컵대회 기간중에는 113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났는데, 목적이 상반되는 동시집회라도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상호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탄력 있게 운용함으로써, 중복신고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3)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에 대한 정책 권고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감사 후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시하던 수시적성검사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기록을 건네받아 수시적성검사를 일부 실시하였고 또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다.

위원회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 특히 사회적 편견이 강한 정신과 진료기록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고받음으로써 헌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2001년 9월 감사원은 ‘감사결과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송부’를 통해 첫째, “치매 등 정신질환자 2만 5510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자료를 통보받아 수시적성검사대상자 지정 여부를 정하고”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의5 개인정보통보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경찰청은 감사원의 권고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병원이 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위해 제출한 개인 진료정보 중 알츠하이머(치매 포함) 등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1종 면허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이미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를 제외한 1만 2800여 명에게 수시적성검사 통보를 송부했고 이중 3000여 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2년 7월 22일 경찰청과 공단이 근거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제2호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위 기관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 정보를 보유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을 지적하고, 설사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를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2년 7월 30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경찰청은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중지하고 「도로교통법」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개정할 것. 둘째, 행정자치부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를 둘러싼 공공기관 혹은 정보 주체와 정부기관 간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셋째,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다.

경찰청은 2002년 8월 31일 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근거한 수시적성검사의 실시를 중단하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해 왔다. 행정자치부도 2002년 8월 8일 위원회가 권고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상의 개선점을 적극 반영

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4)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2002년 3월 현재 한국에는 약 33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2-1-5>와 같이 그들의 78.9%는 불법체류자 또는 미등록 노동자이고 8.1%가 산업연수생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가진 사람은 9.2%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인력정책이 겉으로는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도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운영은 외국인노동자의 선발과 입국을 둘러싼 송출 비리의 속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수의 급격한 증가, 장시간 노동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등 수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표 2-1-5> 외국인력 현황(2002.3월 현재)

(단위 : 명, %)

전 체	합법 체류자					불 법 체류자
	소 계	합법 근로자		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전문기술인력			
336,800	70,952 (21.1)	10,394 (3.1)	20,564 (6.1)	27,158 (8.1)	12,836 (3.8)	265,848 (78.9)

※ 자료 : 국무조정실, 2002

그래서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각계에서 토론회,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

을 경주해 왔다. 또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국제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국제 인권회의가 열릴 때 마다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2002년 7월 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 신고를 받은 결과 파악된 불법취업자 수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규모이므로 그 수만큼의 산업연수생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취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개선안 시행 이후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 적발된 불법취업자와 송출업체·송출국가 및 고용주에 대해 법에 따라 엄히 제재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2년 8월 13일, 이 개선안이 외국인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 차별 논란이 없도록 취업관리제 보완,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조치 등이 포함되도록 개선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즉 산업연수생제도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인권 탄압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고용허가제 등으로 외국인력을 정당하게 고용하고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최소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국제규약과 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배치하여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전원 출국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해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강제 출국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잉 단속, 검문검색 등으로 인한 외국인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를 감안한다면 사면조치 등을 통하여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출국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정부는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에 대하여 현실감 있는 보완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위원회 권고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정부는 2002년 11월 「외국인력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위원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근거로 2003년 2월 10일 현행 산업연수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도입을 재 권고함과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의 개정,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기초자료의 번역본 개발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5)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뒤 2002년 9월 9일 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학교생활규정은 예시안이기는 하나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이 예시안이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안」 또는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체벌 허용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체벌이 학

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차별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해 차별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해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두어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규정한 실업고 예시안에 대해서도 “물적 손해에 대한 학생의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에게 철저한 정보수집과 학생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1월 19일 학교 내 차별금지 등 우리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차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개정 권고에 대하여 “교직단체, 관련 시민단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좀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임을 들어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6) 초·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직권수정 권고

위원회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상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주학습 교재로 사용하는 교과서의 인권과 관련되는

〈표 2-1-6〉 직권수정 권고 내용 요약

학교급	국/검정	교과목	인권침해 교과내용	분석내용	조치사항
초등	국정	전과목	사회(6-2)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	표현의 자유	수정
	검정	없음	도덕(6) 함께 지키자-법을 존중한 소크라테스	근대 법정신에 위배	예화 대체
중학	국정	국어, 도덕, 국사	도덕(2) 시민윤리의 기본정신 - 규범을 지키는 정신	기본권 및 재산권	수정
			도덕(1) 학교생활과 예절 - 선생님의 은혜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양심의 자유	예화 대체
	검정	사회, 수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학	과학(1,2) 자료사진들의 물품 상표명	소비자 권리	삭제
			기술가정(1) 나와 가족관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기술가정(2) 청소년의 일과 시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고등	국정	국어, 도덕, 국사	해당사항 없음		
	검정	사회, 수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학	사회(1) 국내총생산의 한계 :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든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화 대체
			사회(1) 우리나라 정치적 과제 - 보호받아야 할 장애자 권익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체육(1) 올바른 성의식 - 성적 성숙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미술(1) 디자인과 상징 - 살색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영어(1) : The Roman Times	생명존중 및 노예제 금지	대체 혹은 수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년(초등6년, 중학3년, 고등1년)이며, 교과는 초등학교 13개 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미술, 음악, 체육, 실과, 영어), 중·고등학교 11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미술, 음악, 체육, 영어)이다.

분석 기준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및 「사회적·경제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 제10조 내지 제37조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2002년 10월 29일 위원회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인권존중 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교과서의 본문, 예화 및 삽화 등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직권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나 집단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강조하여, 권리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그 해결방안을 질서존중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및 6학년 도덕과,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도덕과의 내용에 일부 드러나 있어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모든 사람은 장애, 성, 인종, 출생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 2학년 기술·가정, 고등학교 1학년 사회·도덕·체육·미술 등의 교과서의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경우 가족을 ‘결혼한 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라는 제한된 개념규정을 근거로 서술함으로써 동거부부, 재혼가족, 입양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어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경우는 가사노동 시간을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취사·세탁·청소·자녀 돌보기·가족 시중·장보기를 가사노동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등학교 사회과 1학년 교과서에는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는 장애인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정보완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고등학교 체육과 교과서에는 남성 생식기는 기능 중심의 설명을 한 반면, 여성 생식기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한 언급 없이 성행위와 관련된 민감도를 밝히고 있어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로마시대 노예제나 맹수에 의한 죄수의 공개 처형을 흥미로운 오락거리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광고문을 만들어 보기를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 및 잔혹한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및 노예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되는 의식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는 선생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예화로 학급의 도난 사건을 해결하는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을 절도 행위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간주하고 자백을 강요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물리적 폭력이 동원되지 않았어도 선생님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미담으로 제시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사항을 수용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2003년도 1학기 교과서부터 수정하여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검정교과서의 경우는 2003년도 1학기부터 2004년도 1학기까지 인쇄상태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정하여 배포하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체계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서 분석 내용을 기초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에 인권교육이 통합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권고

(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우리나라가 1978년 12월 5일 가입한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 1979년 1월 4일 발효됨으로써 이 협약 규정(제9 조제1항)에 의거하여 협약 발효 1년 후인 1980년부터 2년마다 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1년 11월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위원회는 2002년 1월 외교통상부의 제11차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9차, 제10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였다.

〈표 2-1-7〉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권고

날 짜	권고제목	권 고 내 용	해당부처	결 과
2002.2.1 (소위 3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제9,10차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미반영 사항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아닌 선언적인 규정 등에 대해 보강	외교통상부	-
2002.2.26 (소위 5차)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국내법과 현행제도의 검토 부진, 국제조약 이행사항 및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 누락으로 보완	외교통상부	법무부 검토중
2002.6.4 (소위 9차)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 권고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조속한 비준	법무부 외교통상부	수 용
2002.7.20 (소위 14차)	고문방지협약선택의 정서안 표결관련 의견 제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안에 대한 ECOSOC 표결시 찬성	외교통상부	수 용

※ 소위 :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적인 검토 등을 종합하여 첫째, 협약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정책 수립·집행 여부 및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 관련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반영, 둘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의 반영과 협약 이행의 의지가 적절하게 표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정부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11차 정부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 정부 전체 차원의 노력이 결여되었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계획이 없이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혀 냈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구분치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인종차별철폐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인권 측면에서 작성된 점과 한국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따라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이행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아울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평가서에서 제시한 주요 제안 및 권고사항을 기초로 하여 1) 차별금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19 관련 정보제공, 3)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4) 인종적 소수자, 5) 청원 및 법적 절차의 접근성, 6) 교육 및 홍보, 7) 협약 1조 이행 관련 사안, 8) 난민 등의 범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1995년 1월 대한민국은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 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함(1995.2. 발효)으로써 이 협약에 의거하여 정부는 제1차 정부 보고서를 1996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996년 11월 정부의 제1차 보고서를 심사한 후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2년 2월 외교통상부가 제2차 정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각 나라 정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약감시기구는 이 보고서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심사의 목적과 고문방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정기 보고서의 기술방법 등을 평가의 전제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 보고서는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국가 보고서 심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및 내용이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제1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사 이후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의 진전 여부, 진전이 있었다면 그 내용, 한계 및 개선해야 할 점 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가 최종 평가서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과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2차 정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동 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 평가서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국내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관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그 과정에서 언론기관, 시민인권단체, 학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후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2차 정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나타난 고문죄에 관한 개념규정, 신문(訊問)의 관행, 고문 관련 책임자의 처벌, 고문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비효율성 등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아울러 고문방지법의 제정, 전반적인 법의 재검토, 고문 금지 관련 교육 실시, 고문 관련 조사,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석 등 최종 평가서의 '권고안'에 대한 위원회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3)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가입 권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와 1951년부터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구체적인 설립 논의가 시작되어 1994년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초안 작성과 이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을 거쳐 1998년 7월 로마 외교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위한로마규정」이 채택되었다. 규정의 목적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여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2002년 4월 56개국이 이 규정을 비준한 상황에서 비준시 국내법과 저촉 여부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해 5월 ICC 참여 촉구를 위한 아시아 NGO 홍보단의 방문을 맞이하여 정부 해당 부처에 비준을 권고할 예정임을 표명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의 추진계획,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권보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현시키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미 우리 정부가 2000년 3월 규정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비준을 권고하였다.

ICC 규정에 의해 구성될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인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범한 자들을 기소·처벌하여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자는 데 주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50년 10월 「집단살해죄의방지과처벌에관한협약」 및 1966년 8월 「육전에관한협약」, 「해전에관한협약」, 「포로대우에관한협약」,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의보호에관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4년 3월 「1949년8월12일자제네바협약에대한추가및국제적무력충돌의희생자보호에관한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미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ICC 규정에 가입한다는 것은 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ICC 규정상의 범죄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최소한의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며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는 궁극적으로 국제적·국내적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ICC 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법제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인권 수호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

속히 가입한다면 2003년 ICC 재판관 선출시 우리 국적의 재판관 선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2002년 6월 위원회는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이후에도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관련 학술회의를 후원하고, 2002년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정부는 2002년 11월 13일 규정 비준서를 주(駐)유엔 대표부를 통해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이 규정의 83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4)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안」 표결 관련 의견 제출

1991년 1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에서 정한 당사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고문방지소위원회의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권 및 예산지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10여 년의 협상 끝에 2002년 4월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의정서 초안을 처리 안건으로 상정, 표결처리함으로써 가결했다. 따라서 의정서 초안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와 유엔 총회의 심의 및 승인을 얻은 후 공식적 협약으로 각 국가들로부터 비준을 받게 되면(20개 국 이상) 효력이 발생될 것이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고문방지를 위한 강력한 국제방문장치 및 국내장치의 마련과 국제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에는 동의하였으나 선택 의정서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표결을 통해 의정서 초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 향후 ECOSOC의 표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종전 입장을 견지할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의정서의 채택을 국제인권법 분야의 중요 성과로 파악하고, 채택 단계에서부터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는 의견, 국가 사법주권의

침해문제, 분단국가로서 국내 여건을 감안한 채택의 어려움 등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ECOSOC의 의정서 채택 과정의 표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그 동안 국가구금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권한 있는 강력한 국제기구의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의정서의 채택은 국내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을 현저히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2002년 7월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초안에 대한 ECOSOC 표결시 대한민국의 입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관련 기관 회의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우선, 고문방지협약이 실효를 거두려면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고문, 비인간적 처우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정서 초안은 고문방지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성안되었다는 것과 고문방지협약의 사후적 구제에 중점을 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성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과 수준에 맞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는 위원회의 방문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선택의정서 초안을 우리 정부가 기피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이중적 접근 자세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과 주권문제와 인권문제는 조화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ECOSOC 표결에서 선택의정서 채택에 찬성하였다.

(5) 기타 검토 사항

유엔은 제56차 총회 결의에 따라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002년 7월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멕시코 초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 이전에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어 왔다.

위원회는 멕시코 초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차별 이외에 ‘정책’에 의한 차별금지를 추가할 것,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서 ‘통신시설’을 추가할 것, 그리고 의료와 재활서비스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장애여성 중 수유모 이외에 ‘임신모’도 추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 협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 5~6월경 개최될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포함하여 좀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제32차 아동권리위원회(2003.1.13~31)에 대비,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일반 논평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왔다. 이 초안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독립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그 기구의 수임 및 권한, 접근성, 설립과정, 복수대표, 권장활동 및 기술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아동의 국가인권기구 접근성, 조사수행 결과의 정책반영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4. 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4호에 따라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을 2차에 걸친 용역사업으로 <표 2-1-8>과 같이 수행하였다.

<표 2-1-8> 실태조사 과제

번호	구분	과 제 명	연구수행자
1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가정폭력방지 관련법)	법무법인해람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청소년보호법)	연세대학교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노동관련법)	동해대학교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아동복지법)	전주대학교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한양대학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 1 장

번호	구분	과제명	연구수행자
2	노인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한국노인의전화
		부랑인 시설내 노인인권 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장애인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동의대학교
		장애인 고용 및 승진실태조사	대구대학교
		민간보험 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법무법인지평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	군대	군대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성공회대학교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내 양성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 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5	외국인 노동자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대학교
6	고용차별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서울대보건대학원
7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부산교육연구소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8	구금시설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교도소인권모임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9	기 타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연구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조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들의 인권침해 여부 및 현실성을 외국이나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검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검토한 법령은 「가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동관계 법령이다.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는 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과 그 개선방향을 찾고자 법 이론적, 비교법적 연구와 405명의 소년원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에 응한 아동·청소년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61.23%였으며,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23.46%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조사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이 34.86%로 높았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46.17%였는데 그 이유는 재판과정에서 소년의 정당한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사법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구타, 협박, 폭언 등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행정적, 인적, 시설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연구결과였다.

(2) 노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는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와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1349명의 노인에 대해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98.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90.1%)와 같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지도

는 높았다. 그러나 ‘노인의 친구나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29.2%),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36.2%) 등과 같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학대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349명 중 510명(37.8%)이 1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피학 경험이 있는 17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노인은 정서적·언어적·신체적 학대를, 남성노인은 방임·경제적 학대를 더 받고 있으며, 도시 노인들이 농촌 노인들보다, 지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학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구체적으로 노인학대 방지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노인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노인 부양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및 실비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실태 사례조사**」는 무료·실비 요양 시설 종사자 1260명에 대한 우편 조사와 요양시설 11개소 337명의 노인에 대한 판별조사 및 사례조사로 이루어졌다.

종사 직원들의 조사 결과, ‘시설입소나 전원(시설을 옮기는 일) 결정 과정에서 노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강한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12.5%에 불과했다. 반면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74.8%),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키며’(85.9%),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83.6%) 등에 대해서 ‘약한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또한 시설거주 노인의 사례조사 결과, 시설 내에서의 직접적인 구타나 노동력 착취 같은 문제들도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 식사 공간 미확보, 식사 서비스 미흡, 주거의 질 저하, 충분한 의료 서비스 부족 등이 인권침해의 중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해 종사자들의 47.8%가 거주 노인 개인의 성격이라고 응답했고, 정부의 지원부족(10.4%), 직

원의 과도한 업무부담(6.3%) 등의 답변도 있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연구 결과는 개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 요양시설이 인간다운 생활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노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시설 거주 노인의 구체적인 권리 명시,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 시설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부랑인 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현황조사**」는 복지시설 수용자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설문 응답자 중 30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부랑인 시설 입소자 개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삶의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는 굴절 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의 굴절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동기는 위기상황마다 적절한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등과 같은 부모로부터의 지지관계 상실, 배우자의 상실, 건강의 상실(질환이나 장애 발생), 실직, 경제적 실패 등이 부랑인 시설로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반면 여성의 굴절 동기는 본인의 실직이나 경제적 실패에 따른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남편의 음주·학대·도박·외도 등이 대부분이었다. 굴절 시점 직후 생활의 특징은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며, 일상생활의 규칙이 헝클어지고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심리적으로는 삶의 목표나 의욕을 상실하고 노동 의지가 약해져서 활동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시설 입소 전에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한 기간이 1년 이하로 비교적 짧았던 사람은 입소 전까지 주로 사글셋방이나 친지의 주거지와 같은 ‘집’ (37%), 혹은 ‘여인숙이나 쪽방’ (27%)에서 지낸 반면, 2년 이상 거처 없이 지냈던 사람은 입소 직전에 ‘여인숙이나 쪽방’ (40%) 거주 이외에도 노숙(27%)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는 43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실태분석과 130명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2개 대학만이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15개 대학에서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었다. 동료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11개였으며, 장애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14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각 및 지체 장애학생, 장애가 심할수록 차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는 도서관이나 전산실 이용 등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차별인식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장애학생들은 교수나 강사 등의 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설 및 교수나 강사 등에 대한 불만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가 전체 조사 장애학생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전담기구가 설치된 대학은 사립대학교 3개로 국립대학에는 장애학생을 지원해 주는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정상화되어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과 같이 적절한 학습 환경에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특수학교의 기능 정상화, 2)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의 학내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법제화, 3) 학내 이동 및 접근권 보장, 중증장애인 기숙사 운영,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분야별 지원방안 강화, 4) 장애인 고등교육 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기본 지원설비지원과 같은 국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인 여성장애인 28명을 심층 면접방식을 통해 조사했다.

대학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특성을 보면 대학교육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여성장애인의 출석을 부르지 않거나 결석을 권하거나 계속 똑같

은 점수를 주는 등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가족 내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하지 않거나, '위험한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이유로 진학을 반대하거나 대학 진학 준비중인 여성장애인을 비웃는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수학능력 개발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여성장애인은 인격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도 쉽게 노출되었다.

대학교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 비(非)장애 여성 중심으로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어 여성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남성장애인의 요구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비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은 교내에서 지나가던 남학생이 도움을 빙자해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불쾌한 시선, 교직원이나 경비원, 매점 직원 등에 의한 신체접촉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장애인이 대학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립을 넘어 성(性)인지적 관점에서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여성장애인 전담 도우미제도의 운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 교직원, 동료 학우들이 여성문제와 장애문제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매우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경우 정규 입학 연령인 만 6세에 입학한 사람이 응답자의 39.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장애 치료와 요양을 꼽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8%는 취학 연거나 휴학을 한 사람으로 취업 연령제한에 걸려 취업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 밖에 '재활치로나 요양을 받은 것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취직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3%가 '차별'이라고 답해, 간접차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입법,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위원회법상의 연령 차별금지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었다.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는 장애인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55개 업체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검토했으며, 22개 업체의 인사규정을 수집하여 공무원 규정과 비교·분석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집 및 채용 절차상의 결과적 차별실태는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낸 455개 모집회사 가운데 427개 업체(93.8%)가 채용과정에서 연령제한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방식은 학력 제한(87.8%), 연령 제한(42.6%), 시험이나 면접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98.9%), 인터넷 서류접수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82.2%), 신체조건 표기(70.5%) 등이다. 또한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상 장애유형별 장애인 차별은 대필 및 시간적 배려 부재(82.4%), 편의시설 미비(71.2%), 상이한 합격기준 적용(23%) 등이다.

임금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근로자는 23.3%였으며, 육아 및 산전후 휴가 등에서 차별을 당한 여성장애인 근로자는 31.4%였다. 조사대상 업체의 79.1%가 신체기능 및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이나 해고·퇴직 규정을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복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의 고용 및 승진과정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개선운동, 사회 환경 구축, 보편적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전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모집·채용·해고 단계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장애인 우대 및 차별 감독 조치 실시,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균등 보장, 여성장애인 근로자 특별대책과 함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민간 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연구 결과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에 정신적인 장애를 신체의 질병과 구별하여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장애인의 경우 ‘유진단’ 이라고 명시하여, 보험가입시 장애의 원인·상

태·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은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9개 항목을 여전히 인수 불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단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개 장애인 시설을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설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화재보험(31.4%), 가스보험(25.58%), 자동차보험(11.04%)의 순이었으며, 상해보험, 생명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한 시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대인배상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한 시설이 약 30%에 달했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보험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시설도 42%로 조사되었다.

상법 제732조는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에도 장애인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어, 상법 제732조에 대한 검토와 인수지침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연구 결과였다.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 분석」에 따르면 특수교육진흥법 13조와 23조에 장애 차별금지과 관련한 벌칙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나 인권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계인권선언, A, B 규약 등은 차별금지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별도의 장애차별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차별 해소와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전담기구 설치, 국제협약 가입 등 법·제도적 측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4) 군대 내 인권침해 실태조사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위한 논리를 도출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는 입법형성의 문제로 단계적인 현실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이론적 문제와 국제법적 기준의 적용문제, 국방 현실에 미치는 영향, 국민정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는 군부대 내에서의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연구였다. 현역 232명과 예비역 146명 총 378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설문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군의 5대 금지사항(집합, 지시, 열차려, 군기교육, 암기강요 행위)과 관련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유 없이 구타·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응답도 19%에 달했다. 그리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으면서도 군의 적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응답자의 75%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유가족들(34명)은 군 수사당국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불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군인법’을 통해 군인의 인권보호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군 움부즈만제도’, ‘중개위원제도’ 등을 통해 군인 인권을 보호, 신장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의 인권을 보호, 신장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구금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 파악」은 군대 내 폭력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군대 내의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군 구금시설의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

련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군 구금시설에 수감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87명) 상당수가 구타나 가혹행위, 변호인 접견 등과 관련된 항목들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수감중인 3명의 수용자와 면접조사한 결과 이들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없고, 처우에 대해 큰 불편이 없다고 했다. 다만 체포 이후 피의자의 권리나 수사 절차에 대해 면접 대상자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군 구금시설 수용자의 80%가 징계입창에 따른 수용자로, 징계입창은 유엔이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이며, 입창일수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징계항고권이 유명무실해 징계입창제도가 인권침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5)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 107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공식적으로 산업연수생 입국비용이 340~1300달러이나 실질적인 평균 비용은 3800달러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하고 있었으며,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8%에 불과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은 전체의 51.4%에 이르며, 미등록 노동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임금체불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외국인노동자가 입국 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12.5%에 이르며,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상사, 한국인 직장동료 등이었다. 성희롱은 대개 언어적 희롱(87.1), 추근거림(60.0), 신체접촉(33.3%)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춘 요구도 27.1%나 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고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42.4%, 건강보험 42.8%, 국민연금 51.5%), 산업재해를 경험한 횟수는 1회 51.3%, 2회 32.5%였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나 경찰관의 검문·검색 당시 경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응답이 49.1%, 검문·검색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5%, 다른 장소로 끌려갔다는 사람이 1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외국인노동자 송출 및 관리를 정부(노동부)로 일원화하고,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쓰는 총 14개 언어로 질문지를 직접 제작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6) 고용차별 실태조사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는 공무원 고용정책에 있어 공무원 담임자로서 요구되는 조건이 고용에서의 평등권과 상충되는 바가 없는가를 분석하고, 상충될 경우 특별요건의 타당성 검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공무원 고용상 연령제한은 법 해석의 면에서 평등권, 취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의한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의 연령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청장년층의 취업 전 사회경험을 제약하고 있으며, 고령층에게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제도를 모델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 마련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연령제한을 규정하는 입법화가 궁극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는 채용시 신체검사를 받은 근로자 중 간 기능에 이상이 없는 B형간염 보균자 71명과 B형간염 보균자가 아닌 41명 등 총 112명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B형간염은 실제로 식사 또는 술자리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비(非)보균자 중 46.0%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B형간염의 전염경로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형간염 바이러스가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많은 비보균자들은(51.5%) ‘B형간염 보균자의 노동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비보균자의 47.2%는 ‘별다른 요인이 없어도 간암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등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비보균자는 B형간염에 대한 이해도가 보균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B형간염 보균자의 62.0%만이 취업에 성공한 반면, 비보균자는 87.8%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한 차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조사한 결과, 보균자군의 21.1%가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비보균자군은 4.9%만이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균자군은 신체검사 결과가 차별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실태조사

「**인권 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은 국민의 인권의식 조사연구의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인권 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인권교육 국가 기본계획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표개발은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으로 구성되는 인권 감수성 검사모형과 이 모형에 근거한 인권 관련 리커르트 검사문항 및 측정방

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734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이상 성인의 인권 감수성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560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인권의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사의 권리와 관련된 문항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사는 8.5%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39.2%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4%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단 2%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여성인권 △장애인 및 아동인권보호 △재소자의 인권보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90.1%가 ‘인권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사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연수과정 실시, 학교 공동체 인권교육 지침 개발 및 보급, 공동참여 인권 학습 프로그램, 인사와 승진 제도의 개선,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절실함을 일깨워 주었다.

(8) 시국 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법원,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결과 지배 이데올로기적인 법 담론으로 시국 관련 법령의 입·사법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사법결정의 구

체적인 이유들로 헌법 제37조제2항을 통치 권력에 의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정당화 도구로 이해·이용한 점, 실체법적 제한과 절차법적 제한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점, 법원과 법조계 중심의 조직논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헌법 판단요소 중의 한 가지로 시민권 개념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시민권은 단순히 기본권 향유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동태적으로 일정한 생활관계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생활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제기하면서 시국 관련 법령 적용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이 앞으로 필요함을 주장했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권고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출범 첫해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제정문제, 산업연수생 제도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통해서 정부가 정책 입안 및 집행시 인권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여러 정책 권고를 통하여 그 동안 시민사회 영역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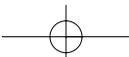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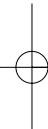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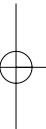
또한, 지금까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금보호시설, 군대내 교도소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여 위원회의 인권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위원회법에 국가기관 등이 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시 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절차 준수를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홍보 부족과 한편으로는 관련 부처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위원회는 출범 원년의 어려운 여건상 미처 다루지 못하였던 국가보안법, 과거청산, 사형제도 폐지 등 이른바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제 2 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 혹은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편리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접근하고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가능성을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접근 경로와 체계를 구축하였다.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전화, 방문(대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접수를 받았으며, 면전 진정제도를 통해 구금·보호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영역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아직 정착되지 않음에 따라 분출되는 다양한 요구와 문제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듣고 안내 및 회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민원안내와 인권상담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력자와 인권·상담·법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력자들을 전문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체계의 조기 정착화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인권향상과 보호를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된 진정서를 구비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우리 말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도 쉽게 진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상담 및 진정접수의 활성화

(1) 인권상담 서비스 확충

위원회는 기존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실의 기능을 뛰어넘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함께 찾기 위한 인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합법적인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해를 얻지 못하거나 또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권력 행사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상담 서비스를 위해 위원회는 전화 전용선을 확보하고(전화번호 1331), 진정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해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상담과 진정접수를 실시함으로써 기동성 있고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상담과 권리구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2) 진정 및 상담접수 현황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 진정사건이 3593건, 상담이 3249건, 안내가 9417건으로 총 1만 6259건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제 2 장**

에 이르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2001년 12월에는 진정접수, 상담, 안내건수가 총 2015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 특히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이 늦

〈표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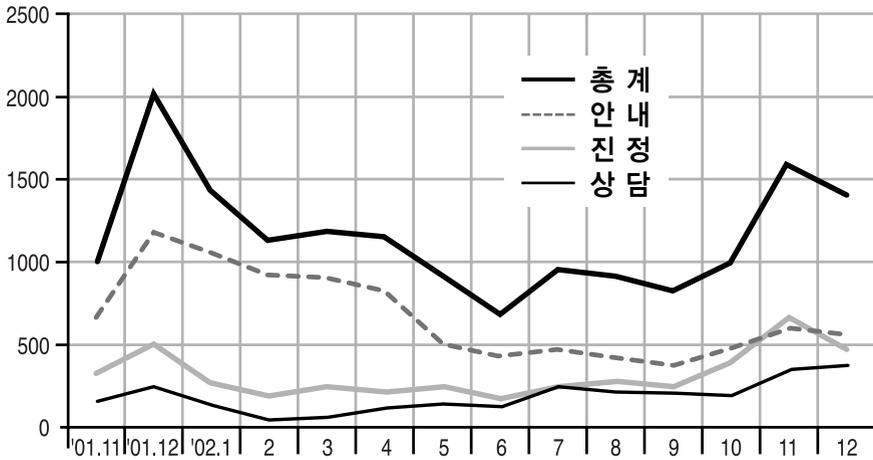
민원 경로 월	진 정					상 담				안 내				총 계
	방문		전화	아우팩	계	방문		전화	계	방문	전화	민원 회신 (아우팩)	계	
	대면	면전				대면	면전							
2001. 11	118	-	103	72	293	31	-	104	135	21	555	-	576	1,004
2001. 12	129	5	101	271	506	97	3	143	243	108	1,158	-	1,266	2,015
2002. 1	62	8	34	160	264	50	2	43	95	91	943	4	1,038	1,397
2	33	7	19	89	148	13	-	17	30	103	819	9	931	1,109
3	27	29	31	143	230	39	2	17	58	102	803	19	924	1,212
4	38	36	16	135	225	53	7	71	131	47	789	6	842	1,198
5	35	55	16	135	241	36	9	97	142	52	444	8	504	887
6	19	29	8	101	157	24	11	105	140	47	318	48	413	710
7	26	56	19	153	254	51	31	165	247	44	359	87	490	991
8	34	49	15	134	232	49	25	192	266	45	314	76	435	933
9	48	79	2	102	231	40	47	168	255	35	300	50	385	871
10	29	49	7	100	185	68	38	248	354	47	340	74	461	1,000
11	54	86	11	143	294	137	68	451	656	46	483	92	621	1,571
12	33	68	19	213	333	79	64	354	497	27	445	59	531	1,361
누계	685	556	401	1,951	3,593	767	307	2,175	3,249	815	8,070	532	9,417	16,259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어지면서 약간씩 감소추세를 보이던 진정과 상담건수는 2002년 4월에 사무처가 구성되고 조사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7월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월 말 현재에는 위원회 설립 초기의 접수 건수에 육박하였다.

〈그림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

(단위 : 건)



2002년 10월 이후에는 급격하게 진정, 상담 및 안내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10월 말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진정접수

진정의 경우 접수 경로별로 방문, 전화, 이메일·우편·팩스로 구분하고 방문을 통한 진정접수는 다시 '대면'과 '면전'으로 분류하였다. '대면'은 진정인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고, '면전'은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를 면담한 후 진정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면전진정 제도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

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외부와의 접견과 교통이 자유롭지 못한 수용자들이 위원회의 위원 혹은 직원을 만나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접수 방법이다.

진정의 경우 이메일·우편·팩스 등 통신을 이용한 문서접수가 1951건으로 전체 진정접수 건수 중 54.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대면진정이 685건으로 19.1%를 차지했으며, 면전진정을 통한 접수는 556건으로 총 진정건수의 15.4%를 차지했다. 또한 전화를 통해 접수한 것은 총 40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나. 상담 및 안내

〈표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의 경우는 전화상담이 2175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6.9%를 차지하였고, 위원회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한 경우는 767건으로 23.6%를 차지했다. 면전상담은 307건으로 전체 상담의 9.5%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이 면전진정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원회 직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이들을 면담한 결과, 현지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거나 신청인이 진정접수보다는 상담만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상담종결 처리한 경우이다.

사무처가 구성된 2002년 4월부터 인권상담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상담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부터는 진정건수보다 상담건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보면, 진정의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접수보다는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면전진정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상담이 2175건(66.9%)으로 방문(대면)을 통한 상담 767건(23.6%)보다 많았다.

또한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서면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민원성 문의와 질의사항에 대해 안내, 회신처리 건수도 하반기 이후 증가함에 따라 더 폭넓고 적극적인 인권상담 및 안내 서비스가 확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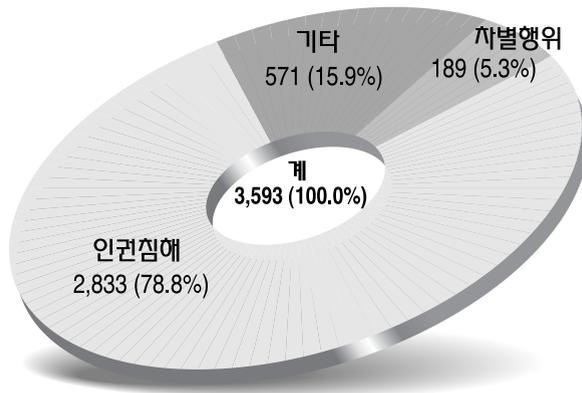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1) 진정사건 유형분류

진정사건은 크게 인권침해, 차별행위 및 기타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진정접수된 총 3593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2833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189건으로 5.3%를 차지함으로써 차별행위에 비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건은 571건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하였다.

〈그림 2-2-2〉 진정사건 분류(2001. 11. 26 ~ 2002. 12. 31)

(단위:건)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은 사건으로 유형에 따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구금시설, 보호시설,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군교도소·군구치소 등 군구금시설, 기타 군 관련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로 세분류를 하였다.

차별사건은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평등권 침해, 2)장애, 병력,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나이, 용모 등 신체 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한 ①고용, ②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등의 공급이나

〈표 2-2-2〉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2001. 11. 26 ~ 2002. 12. 31)

(단위:건)

진정사건 3,593건(100.0%)					
인권침해 2,833(78.8%)		차별행위 189(5.3%)		기타 571(15.9%)	
계	2,833(100.0)	계	189(100.0)	계	571(100.0)
검찰	300(10.6)	평등권침해	38(20.1)	사인간 침해	131(23.0)
경찰	839(29.6)	장애	32(16.9)	회사	43(7.5)
국가정보원	33(1.2)	병력	10(5.3)	기타단체	8(1.4)
특별사법경찰관리	31(1.1)	사회적 신분	40(21.2)	재산권침해	40(7.0)
지방자치단체	66(2.4)	출신지역	5(2.6)	법령, 제도	137(24.0)
사법기관	70(2.5)	출신국가	19(10.1)	입법, 재판	39(6.8)
입법기관	1(0.0)	출신민족	0	기타	173(30.3)
기타국가기관	236(8.3)	인종	1(0.5)		
구금시설	1,113(39.3)	피부색	1(0.5)		
보호시설	34(1.2)	성별	9(4.8)		
군검찰	4(0.1)	혼인여부	2(1.1)		
군헌병	41(1.4)	임신·출산	0		
국군기무사령부	6(0.2)	가족상황	1(0.5)		
군구금시설	3(0.1)	성적지향	4(2.1)		
기타군관련기관	56(2.0)	나이	5(2.6)		
		용모 등	2(1.1)		
		종교	6(3.2)		
		정치적 의견	4(2.1)		
		전과	7(3.7)		
		기타	3(1.6)		

이용,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로 분류하였다.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총 2833건 중에서 1113건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진정건수의 39.3%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이들은 각각 839건, 300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중 29.6%, 10.6%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구금시설과 경찰·검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은 총 189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38건으로 진정건수의 20.1%를 차지하였다. 위원회법 제30조제1항은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18가지 차별사유와 3가지 차별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중의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에 대해서는 차별사유와 영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에 의한 차별행위는 그 영역을 18가지 사유에 제한하지 않고 '평등권 침해'로 분류하였으며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구금시설 내 수용자간 차별적 처우, 국립기관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총 571건이 접수된 기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 사기 혹은 재산권과 관련된 개인간의 다툼으로 별도의 구제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사건과 법령,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사건 중에서도 다시 기타로 분류된 사건들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로, 예컨대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불만, 가족의 묘지이장 문제 등이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현실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2) 상담사례 분석

가. 상담처리 결과

〈표 2-2-3〉 상담처리 결과(2001. 11. 26 ~ 2002. 12. 31)

처리유형	처리 이유	계(%)	대면(%)	전화(%)
	계	2,861(100.0)	719(100.0)	2,142(100.0)
상 담 종 결	소 계	1,403(49.0)	435(60.5)	968(45.2)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58	197	36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됨	157	60	97
	진술내용의 현실성, 신빙성 결여	126	53	73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124	12	112
	조사가능 기간 도과	105	37	68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됨	43	5	38
	이미 진정한 사건에 대한 상담	28	6	22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26	10	16
	기타	236	55	181
	타기관 안 내	소 계	501(17.5)	70(9.7)
보다 적절한 기관 안내		488	66	422
내담자가 타기관을 문의		9	2	7
기타		4	2	2
진 정 예 정	소 계	371(13.0)	26(3.6)	345(16.1)
	우편,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진정 예정	266	9	257
	고려 후에 진정 예정	34	5	29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진정 예정	23	7	16
	조사대상은 아니나 내담자가 원함	13	2	11
	사건의 추이를 보고 진정 예정	9	0	9
	재상담 후에 진정 예정	9	0	9
	기타	17	3	14
재상담 예 정	소 계	299(10.5)	36(5.0)	263(12.3)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예정	149	3	146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담 예정	44	8	36
	사건의 추이를 보고 다시 상담 예정	36	6	30
	내담자가 계속 상담을 원함	32	8	24
	상담시간의 부족 또는 과다로 재상담 예정	8	2	6
	기타	30	9	21
진 정* 접 수	소 계	185(6.5)	142(19.7)	43(2.0)
	조사대상은 아니나 내담자가 강력하게 원함	82	64	18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임	78	62	16
	조사대상인지는 불분명하나 위원회의 판단을 받고 싶어함	18	11	7
	제도개선 등(단순히 사건을 위원회에 알리고 싶어함)	5	4	1
	기타	2	1	1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처리유형	처리 이유	계(%)	대면(%)	전화(%)
기 타	소 계	102(3.5)	10(1.5)	92(4.3)
	상담도중 전화 끊김	49	0	49
	조사담당자 안내	8	3	5
	상담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뜰	2	2	0
	기타	43	5	38

※ 총 3249건의 상담 중 면진진정 접수과정에서 상담종결된 307건은 면진진정 접수의 활성화 부분에서 별도로 분석했으며, 진정접수를 시작한 초기에 상담시스템 미비로 인해 간단한 상담의 경우 기록을 남기지 않은 81건을 제외한 2861건에 대해서만 분석함.

* 전화와 방문(대면)을 통해 진정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오랜 시간 상담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하며, 인권상담 서비스가 정착화되면서 이러한 경우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2002년 9월까지의 상담을 한 후에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2002년 10월부터는 상담을 한 후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 '상담'과 동시에 '진정'으로 분류하였음. 따라서 상담처리 결과에 진정접수 항목이 10월부터 추가되었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담 후 종결된 경우가 1403건으로 49.0%이며, 다른 기관을 안내한 경우가 501건으로 17.5%였다. 상담종결된 사례들은 주로 상담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종결된 경우, 혹은 진술내용에 현실성 등이 결여된 경우,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한 경우, 조사가능 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 등이었다. 타기관을 안내한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노동사무소 등 내담자가 좀더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준 경우이다.

진정예정으로 처리된 371건(13.0%)은 주로 상담을 한 후에 신중히 고려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추후에 진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재상담하기를 원한 299건(10.5%)은 주로 여러 가지 사안이 병합된 복잡한 사건으로, 전화상담을 한 후에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겠다고 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진정접수로 분류된 185건(6.5%)에는 조사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진정인이 강력하게 요구하여 접수한 것이 82건,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것 78건 외에 조사대상 여부를 떠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와 판단을 받아보길 원하는 18건 등이 포함되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102건(3.5%)은 중간에 전화가 끊어지거나, 내담자의 사정으

로 인해 상담을 중단한 경우 등이다.

대면상담은 진정을 접수한 경우가 19.7%로, 2.0%를 나타내고 있는 전화상담의 경우보다 많은데 이는 이미 전화상담을 거친 후 직원과 직접 만나 재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진정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화상담의 경우는 대면상담에 비해 타기관을 안내받거나 재상담 혹은 추후 진정예정 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상담을 하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방문절차보다는 간단한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상담 유형별 분류

〈표 2-2-4〉 상담 유형(2001. 11. 26 ~ 2002. 12. 31)

(단위:건)

사건유형	계(%)	대면상담(%)	전화상담(%)
계	2,676(100.0)	577(100.0)	2,099(100.0)
인권침해	1,022(38.2)	184(31.9)	838(39.9)
차별행위	212(7.9)	53(9.2)	159(7.6)
기타	1,442(53.9)	340(58.9)	1,102(52.5)

※ 2861건 중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진정접수를 한 185건은 진정사건에 포함되어 통계처리되므로 진정사건과 차별화하여 상담사례만을 분석하기 위해 185건을 제외한 2676건을 대상으로 분류함.

상담으로 종결된 사건들은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은 만큼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에 해당되기보다는 이 범주를 벗어난 기타 사건의 경우가 많았다. 즉, 인권침해 관련 사례는 1022건으로 전체 상담의 38.2%, 차별행위 관련 사례는 212건으로 7.9%를 차지한 반면 기타 사건은 1442건으로 53.9%를 차지하였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에서 상담 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인권침해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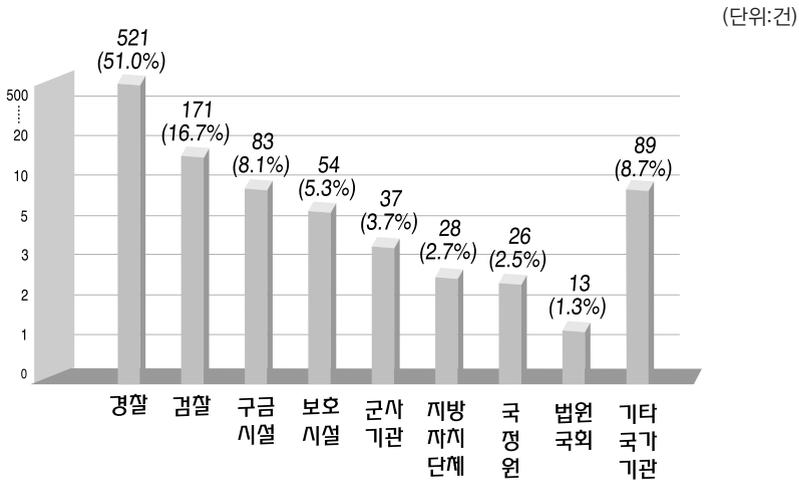
1) 기관별 분류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구급시설과 관련한 것이 많은 것에 비해(39.3%) 상담의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경우에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 5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검찰로 16.7%를 차지했다. 기타 국가기관(공사·공단·공법인 등)과 구금시설은 각각 8.7%, 8.1%를 차지하였다. 진정사건에 비해 상담사례의 경우 구금시설과 관련한 것이 적은 이유는 시설 수용자들은 전화나 위원회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전진정을 통해서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3〉 피진정기관별 분류(2001. 11. 26 ~ 2002. 12. 31)



2) 내용별 분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는 ①편파수사, 사건조작·은폐 ②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 ③욕설, 면박, 모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①행정행위의 잘못, 지연, 거부 ②도청, 감시 등 사생활의 자유침해 ③욕설, 면박, 모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과 관련한 상담은 ①접견거부나 부적절한 의료조치 ②폭행, 협박, 가

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 ③수용자간의 폭력 방치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①강제수용 또는 퇴원거부 ②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군사기관과 관련한 상담은 ①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②부대 내에서의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에 대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2-2-5〉 인권침해의 내용

유 형		계	대면	전화
계		1,022(100.0%)	184(100.0%)	838(100.0%)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소 계	718(70.3)	136(73.9)	582(69.5)
	편파수사, 사건조작·은폐	203	46	157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	148	17	131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56	8	48
	도청, 감시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52	17	35
	범죄사실 미수사 등 직무유기	44	11	33
	관련 규정에 반한 불법체포, 감금	43	7	36
	함정수사, 진술강요 등 적법절차 위반	34	5	29
	위압적인 수사·수사권 남용	28	3	25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처리됨	27	8	19
	범인으로 잘못 지목됨	20	2	18
	공소권 남용에 의한 부당한 기소	16	8	8
	개인정보 유출(수시적성검사 등)	10	0	10
	시건처리과정 불고지 등 알권리 침해	8	1	7
	불심검문	8	0	8
기타	21	3	18	
기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소 계	117(11.4)	25(13.6)	92(11.0)
	행정행위의 잘못, 지연, 거부 등	24	6	18
	도청, 감시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16	4	12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15	6	9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	12	2	10
	강제출국 조치 (주로 이주 노동자)	11	2	9
	개인정보 유출	7	0	7
	정보공개 청구 불응 등 알권리 침해	6	1	5
기타(미군의 폭행사건, 보안관찰 등)	26	4	22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유 형		계(%)	대면(%)	전화(%)
법원, 국회	소 계	13(1.3)	3(1.7)	10(1.2)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4	0	4
	기타	9	3	6
구금시설	소 계	83(8.1)	7(3.8)	76(9.1)
	접견거부, 부적절한 의료조치	33	1	32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 침해	13	3	10
	수용자간 폭력 방치	10	3	7
	부당징벌	7	0	7
	청원, 진정 등의 방해 및 불이익	6	0	6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3	0	3
기타	11	0	11	
보호시설	소 계	54(5.3)	8(4.3)	46(5.4)
	강제수용 또는 퇴원거부	24	1	23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 침해	18	6	12
	강제적인 치료·약물 투여	1	0	1
	기타	11	1	10
군사기관	소 계	37(3.6)	5(2.7)	32(3.8)
	군의원사 규명 요구	16	3	13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 침해	14	2	12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2	0	2
	도청, 감시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0	0	0
	기타	5	0	5

라. 차별행위 상담

〈표 2-2-6〉 피진정인별 현황(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피진정인	계(%)	대면(%)	전화(%)
계	212(100.0)	53(100.0)	159(100.0)
국가기관 등*	145(68.4)	45(84.9)	100(62.9)
법인·단체·사인	67(31.6)	8(15.1)	59(37.1)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 포함

국가기관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문제를 상담한 경우가 68.4%로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사례 31.6%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로별로 보면 대면상담이 전화상담보다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차별사유

〈표 2-2-7〉 피진정인별 차별사유(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차별사유	계(%)	국가기관 등(%)	법인·단체·사인(%)
계	212(100.0)	145(100.0)	67(100.0)
장애	19(9.0)	6(4.1)	13(19.4)
사회적 신분	19(9.0)	12(8.3)	7(10.4)
출신국가	13(6.1)	6(4.1)	7(10.4)
병력	8(3.8)	5(3.4)	3(4.5)
성별	8(3.8)	2(1.4)	6(9.0)
나이	6(2.8)	4(2.8)	2(3.0)
출신지역	4(1.9)	1(0.7)	3(4.5)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4(1.9)	3(2.1)	1(1.5)
용모 등 신체적 조건	3(1.4)	1(0.7)	2(3.0)
혼인여부	3(1.4)	0	3(4.5)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3(1.4)	2(1.4)	1(1.5)
종교	2(0.9)	1(0.7)	1(1.5)
가족상황	1(0.5)	0	1(1.5)
성적 지향	1(0.5)	1(0.7)	0
출신민족	0	0	0
임신 또는 출산여부	0	0	0
인종	0	0	0
피부색	0	0	0
기타	118(55.6)	101(69.6)	17(25.3)

※ 위원회법 제30조는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는 달리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 그 사유와 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편의상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함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과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상담 사례 모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이 많았다. 단, 장애에 의한 차별상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4.1%)보다는 법인·단체·사인(19.4%)에 의한 차별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것은 내담자 스스로가 어떠한 기준이나 사유로 인해 차별을 받았는지 모르며 차별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이다.

2) 차별영역

〈표 2-2-8〉 차별 영역(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차별영역		계(%)	국가기관 등(%)	법인·단체·사인(%)
계		212(100.0)	145(100.0)	67(100.0)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90(42.6)	90(62.1)	0
고 용	채용·모집	34(16.0)	17(11.7)	17(25.5)
	승진·인사	18(8.5)	5(3.4)	13(19.4)
	퇴직·해고	7(3.3)	1(0.7)	6(8.9)
	임금 등	9(4.2)	2(1.4)	7(10.4)
재화·용역 등의 공급		26(12.3)	16(11.0)	10(14.9)
교육시설 등의 이용		5(2.3)	2(1.4)	3(4.5)
기 타		23(10.8)	12(8.3)	11(16.4)

차별의 주체별로 차별영역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62.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채용·모집에서의 차별이 11.7%, 재화·용역 등의 공급에서의 차별이 11.0%를 차지하였다.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사례는 채용·모집에서의 차별이 25.5%, 승진·인사에서의 차별에 대한 상담이 19.4%를 차지하였으며, 재화·용역 등의 공급에서의 차별이 14.9%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등이나 사인 등에 의한 차별 관련 상담의 공통점은 채용, 모집, 승진, 인사, 퇴직, 해고, 임금 등과 같이 고

용과 관련한 영역에서 일어난 차별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기타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 집단 따돌림에 의한 어려움 등 차별영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마. 기타 상담

〈표 2-2-9〉 기타 유형(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유형	계(%)	대면(%)	전화(%)
계	1,442(100.0)	340(100.0)	1,102(100.0)
사인 등에 의한 인권침해	675(46.8)	181(53.2)	494(44.8)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침해	190(13.2)	46(13.5)	144(13.1)
법률문의, 업무문의	124(8.6)	20(5.9)	104(9.4)
재판지연, 부당한 재판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103(7.1)	23(6.8)	80(7.3)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	80(5.6)	12(3.5)	68(6.2)
위원회 업무에 대한 불만	46(3.2)	5(1.5)	41(3.7)
기타	224(15.5)	53(15.6)	171(15.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상담사례 1442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인간의 분쟁이나 다툼·폭행과 관련한 경우가 46.8%,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 등 기타 피해를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13.2%, 일반적인 법률상담 및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문의가 8.6%, 재판과 관련한 불만이 7.1%,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가 5.6%, 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3.2%, 기타 상담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15.5%를 차지했다.

3. 면전진정 접수의 활성화

위원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면전진정 접수제도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한 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이 계속 증가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하고 진정을 접수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1) 접수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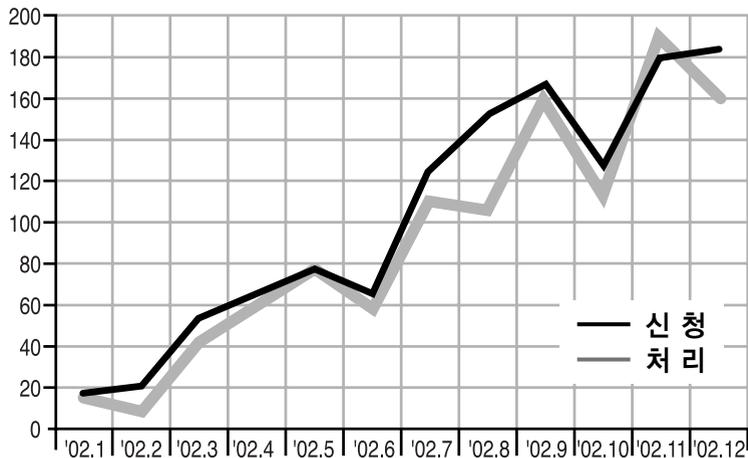
〈표 2-2-10〉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건수(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월	2001. 11.	12.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신청	-	13	17	21	53	67	77	65	124	151	166	127	179	183	1,243
처리*		9	15	9	42	61	76	58	110	105	159	111	189	160	1,104

* 처리 = 진정 + 상담종결 + 철회

위원회가 진정접수를 받기 시작한 데 이어 2001년 12월부터 면전진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2002년 4월, 사무처 구성 전후로 신청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 7월 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총 1243건의 면전진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에서 1104건이 처리되었다.

〈그림 2-2-4〉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표 2-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전진정 총 신청건수 1243건 중에서 위원회 직원이 시설을 방문해 진정접수를 한 경우는 556건으로 44.7%, 진정접수를 하지 않고 상담을 실시한 후 종결처리한 것은 307건으로 24.7%, 면전진정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241건으로 19.4%를 차지했다. 또한, 면전진정 신청이 쇠도함에 따라 전직원이 나서서 면전진정을 접수하였으나,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청건수의 11.2%에 해당하는 139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하였다.

〈표 2-2-11〉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수용시설명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비 고
계(%)	1,243 (100.0)	241 (19.4)	556 (44.7)	307 (24.7)	139 (11.2)	
교정시설	1234	241	548	306	138	
안양교도소	77	28	32	14	3	
춘천교도소	19	3	6	10	-	
원주교도소	40	9	16	13	2	
의정부교도소	5	3	2	-	-	
여주교도소	2	2	-	-	-	
영등포교도소	5	2	2	1	-	
서울구치소	77	12	39	17	8	미처리 1건 마산(교)로 이송
성동구치소	7	2	1	4	-	
인천구치소	27	8	9	8	2	
수원구치소	5	1	2	2	-	
강릉교도소	2	2	-	-	-	
청송교도소	55	6	25	8	16	
청송제2교도소	137	9	59	42	27	
청송제1보호감호소	17	3	8	2	4	
청송제2보호감호소	45	5	18	15	7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수용시설명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비 고
대구교도소	91	11	47	24	9	
부산교도소	51	3	34	6	8	
진주교도소	74	24	27	17	6	
안동교도소	19	3	12	4	-	
경주교도소	3	2	-	1	-	
마산교도소	11	1	-	6	5	미처리 1건 서울(구)에서 이송
대구구치소	2	1	-	1	-	
울산구치소	1	-	1	-	-	
부산구치소	53	11	20	18	3	진정 1건 공주치료(감)으로 이송
대전교도소	75	21	32	19	4	미처리 1건 광주(교)에서 이송
청주교도소	35	4	20	10	1	
공주교도소	42	15	14	7	6	
천안구치지소	1	-	1	-	-	
논산구치지소	2	-	1	1	-	
천안개방교도소	1	-	1	-	-	
홍성교도소	14	5	5	1	3	
청주여자교도소	1	-	-	-	1	미처리 1건 군산(교)에서 이송
평택구치지소	1	-	-	-	1	
광주교도소	141	27	55	33	15	미처리 1건 대전(교)로 이송
전주교도소	56	13	28	10	5	
목포교도소	28	10	12	4	2	
군산교도소	2	1	-	-	-	미처리 1건 청주여(교)로 이송
장흥교도소	5	2	3	-	-	
순천교도소	4	1	3	-	-	
제주교도소	1	-	1	-	-	
경찰서	5	-	5	-	-	
안성경찰서	1	-	1	-	-	

수용시설명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비 고
분당경찰서	1	-	1	-	-	
성동경찰서	1	-	1	-	-	
서초경찰서	1	-	1	-	-	
전주중부경찰서	1	-	1	-	-	
보호시설	4	-	3	1	1	
공주치료감호소	-	-	1	-	-	1건 부산(구)에서 이송
갱생보호공단(광주)	1	-	1	-	-	
화성외국인보호소	2	-	1	1	-	
국립춘천정신병원	1	-	-	-	1	

면전진정 신청인이 수용된 시설을 보면 광주교도소와 청송제2교도소가 각각 141건, 13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구교도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진주교도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 중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경찰서 유치장 등에 있는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은 총 9건에 머물렀는데 이는 교정시설에 비해 기타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진정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신청건수가 많은 시설에서 철회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안양교도소와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의 철회건수가 각각 28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진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도 각각 철회건수가 24건, 21건으로 면전진정 신청건수에 비해 철회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2-12〉 면전진정 신청 철회 사유(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철회 사유	건수(%)
계	241 (100.0)
진정사유 해소	79 (32.8)
심경의 변화	42 (17.4)
출소로 인한 자동철회	15 (6.3)
진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	4 (1.7)
서면진정으로 전환	3 (1.2)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2 (0.8)
소송을 위해	2 (0.8)
조사를 원치 않음	1 (0.4)
출소 후 진정 예정	1 (0.4)
미상	92 (38.2)

면전진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 철회서에 나타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진정을 하고자 했던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이 79건으로 32.8%,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심경의 변화’로 인해 진정을 원치 않는 경우가 42건으로 17.4%를 차지했다. 또한 면전진정 신청 후 위원회 직원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출소를 하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철회된 경우가 15건(6.3%) 있었으며, ‘진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겨서’,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염려되어’, ‘서면진정이나 소송을 하기 위해’ 철회한 경우 등이 있었다.

(2) 상담종결 사례분류

면전진정 신청인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인을 면담하였으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상담종결한 307건에 대해 종결사유를 분석해 보면 〈표 2-2-13〉과 같다.

즉, 진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이미 진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유관한 내

〈표 2-2-13〉 면전진정 신청 사례 중 상담종결 사유(2001. 11. 26~2002. 12. 31)

(단위 : 건)

상담종결 사유		건수(%)
계		307(100.0)
기진정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	기진정 내용과 동일한 진정, 관련내용 추가 등	75(24.5)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촉구	신속한 조사, 피진정인 처벌 등 요구	49(16.0)
위원회가 시설에 건의, 시정해 주기를 희망	의료조치, 이송, 전방, 입병 요구 등	45(14.7)
위원회법 제32조 각하사유에 해당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29(9.4)
	조사가능 기간 도과 (1)	
	법원이나 현재의 재판, 수사중이거나 종결됨 (19)	
	법원의 확정판결 혹은 현재결정에 반함 (6)	
법령, 제도 개선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	15(4.9)
추후 진정을 원함	상황변화를 기다린 후 진정여부 결정	9(2.9)
위원회의 도움을 원함	변호사 섭외, 가족 연락, 자매결연 알선 등	8(2.6)
진정하고자 했던 문제가 해결됨	입병, 독거신청, 외부진료 등 요구사항 해소	8(2.6)
상담만을 원함	하소연, 불안감 해소, 외부인 접견을 원함	7(2.3)
법률상담	소송 절차 문의 등	4(1.3)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표적 검방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1(0.3)
기타	형기만료, 진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동료 수용자의 보복행위 우려 등	57(18.5)

용이므로 해당 사건에 추가하여 처리토록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4.5%), 신속한 조사촉구(16.0%), 의료조치, 이송, 전방, 입병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시설측에 건의하여 시정해 주기를 희망(14.7%)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즉시 해결하거나 설명을 해 줌으로써 신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외에 상담으로 종결한 것은 위원회가 조사권한을 가질 수 없는 사안이나 추후에 진정을 원하는 경우였다. 또한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 개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경우, 변호사 섭외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도 상담종결로 처리되었다. 기타

는 신청인이 형기만료를 앞두고 진정을 포기하거나, 진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거나, 동료 수용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진정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이다.

제3절 평 가

위원회법이 발효된 후 위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업무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진정접수이다. 사무처가 구성되지 않아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상담과 진정접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작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통해 1년에 1만 6000여 건이 넘는 진정, 상담 및 안내 등 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또한 구금·보호시설에 위원회법시행령에 따른 진정함 설치를 독려·점검하고, 인권위원 및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과 진정을 접수함으로써 ‘앉아서’ 받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직원 등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시설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권의식 고양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국에 위치한 230여 개소의 경찰서 유치장, 44개 교정시설 등에서 쇄도하는 면전진정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으며, 제한된 인력으로 전국에 산재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것에 한계가 노정되었다. 즉, 위원회의 전직원이 조를 편성하여 면전진정 접수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말 현재 신청건수의 11.2%인 139건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이 신속하게 상담과 진정접수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위원회에 접근하여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지방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거리 거주자들을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과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인터넷 실시간 상담’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상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전문상담원을 위촉하여 활용하였지만 이들은 인권, 상담,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가라는 지위로 인해 상담과 진정을 받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정규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직제개편을 통해 상담담당 직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 참석 단체들을 살펴보면, 준비단 초청간담회에는 공대위 대표(9개 단체, 11명), 인권단체연대회의 대표(10개 단체, 11명), 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10개 단체, 12명), 천주교 관련 단체 대표(8개 단체, 10명), 불교 관련 단체 대표(2개 단체 7명)들이 참석하였으며, 정책부문 간담회에는 외국인노동자(16개 단체, 25명), 중국동포(9개 단체, 10명), 아동·청소년(12개 단체, 16명), 노인(10개 단체, 12명), 재소자(7개 단체, 13명), 장애인(14개 단체, 15명) 부문에서 참석하였다. 또한 위원장 초청간담회에는 인권 일반단체(6개 단체, 13명), 법률단체(2개 단체, 9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0개 단체, 14명), 장애인단체(14개 단체, 14명)가 참석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부문의 인권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 부문 단체들의 실태 파악,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발굴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위원회가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인권정책 토론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방

위원회 내 ‘배움터’ 시설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인권 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무료로 개방해 시민사회의 여론형성과 인권운동 활성화에 기여했다.

2002년 5월부터 시민단체연대회의의 ‘NGO 지원에 관한 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공청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NGO 워크숍’,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등 8개월 동안 144회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 주최 토론회가 열려 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주요한 정책토론의 장으로 부상하였다.

(3) 효율적인 인권실무를 위한 「인권실무핸드북」 제작 배포

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이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정보를 종합한 「인권실무핸드북」 제작을 추진하여 2003년 3월 말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인권실무핸드북」은 각 영역별로 300여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해외 주요 NGO현황,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에 대한 안내, 노동·여성·이주노동자·성적소수자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 및 상담지침 자료 등을 모아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각 시민사회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2년 한 해 동안 2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락처 등 단체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사업을 하나 갈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모임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장감 있는 소리를 청취하고자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YMCA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상호협력 추진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출범 취지와 추진하려는 인권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함으로써 이후 시민단체들과 인권신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단체 방문을 통해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현안과 활동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체들은 위원회의 역할과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2.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출범 원년을 맞아 위원회는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인권 관련회의(4회 9명),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워크숍(3회 6명), 외국 국가인권위원회 방문(3회 9명) 및 국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2회 5명)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표 2-6-1〉 국제회의의 참가 현황

주관	회의 및 기관	참가 및 방문목적	기간	지역
유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10차 워크숍	아·태지역 정부간회의 정부대표, NI, NGO 참가	3.4 ~ 6	레바논
	유엔 및 RWI 주관교육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국제인권교육	10.20 ~ 11.3	태국
APF	APF 워크숍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 간 인권교육홍보와 미디어관련 토론	7.14 ~ 17	호주
	APF 인권조사교육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국제인권침해조사 교육	11.8 ~ 30	호주
	APF 7차 연례회의	APF 가입 및 주요 인권이슈 논의	11.7 ~ 15	인도
NGO	네덜란드 교정회의	국제교정정책 토론	10.18 ~ 26	네덜란드
	일본 변형 심포지엄	일본 인권옹호법안 논의	10.27 ~ 30	일본
	일본 인권포럼21	일본 인권옹호법안 논의	10.29 ~ 31	일본
	일본 인권의날 기념	일본 인권옹호법안 논의	12.8 ~ 12	일본
	아시아사민사회포럼	유엔 및 NGO들과 협력 관계 모색	12.9 ~ 13	태국
국가 인권 기구	호주·뉴질랜드국가인권기구 및 APF	선진인권제도·정책연구	6.2 ~ 8	호주 뉴질랜드
	영·프랑스 인권기구 및 국제NGO 방문	인권기구 및 국제NGO단체들의 홍보활동 파악	9.15 ~ 22	영국 프랑스
	캐나다 국가인권기구	선진인권제도·정책연구 및 교정시설 운영실태파악	9.22 ~ 30	캐나다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	국가인권기구간 네트워크 형성	4.10 ~ 15	덴마크

(1) 국제인권 관련회의의 참가 및 모니터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openhagen and Lund, 2002.4.10~15)에는 약 60여 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의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교육과 미디어를 이용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 관련기관에 대한 감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회의참가를 통해 세계 국가인권기구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교정협회(International Corrections & Prisons Association; ICPA) 주최로 제4차 연례회의(2002.10.18~26)가 53개국에서 약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네덜란드 노르트바이케르후트에서 개최되었다. 국제교정협회는 캐나다의 오타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71개국의 교정국, 교정협회, 보호관찰기구 및 단체, 교정관련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교정학 학자나 전문가들도 가입하고 있다. 주요 의제는 교정행정의 'Transition, People and Policy' 로 교정전문가, 가해자(범죄자) 및 피해자(지역사회주민 포함)에게 정부의 사회정책 및 교정 집행정책을 주지시켜, 기관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정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정업무의 변화를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단순한 처벌보다는 교정을 통한 사회 환원, 피해자 및 지역사회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새로운 교정정책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이론이 소개되었으며,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도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토론, 이론 및 실천 정책 연구가 본회의의 주를 이루었다.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제7차 연례회의(2002.11.11~13)에는 한국, 태국 및 말레이시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APF의

정식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1996년 발족한 APF의 주요 기능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및 강화 지원과 인권에 관한 상호 협조 등이다. 이 포럼은 인권교육, 국가인권기구의 위원과 직원의 훈련 및 개발을 위한 공동노력, 국가인권기구와 NGO간의 협력, 아·태 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간의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APF는 유엔에서 채택한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또는 법령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고,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다원주의원칙에 따라, 진정사건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권한이 있는가를 심사한 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한국 등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APF는 당초 9개에서 12개 국가인권기구로서 재구성되었다.

이번 연례회의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유엔여성개발기구의 서아시아 지역 인신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APF의 법률가자문회의(ACJ)의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및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인신매매 방지 및 사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각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기타 회의 의제로서 사형제도 폐지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에 대한 각국의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다음 연례회의에서는 테러방지를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유엔에서 토의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및존엄성의보호및증진을위한국제협약안」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여, 장애인 협약관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재정립과 국내 NGO와의 협의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협약 성안을 위해 독립적으로 해당 유엔특별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에 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NGO 등에게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안사항을 홍보하여 협약에 관한 국내 의견수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재인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정부대표, 민간단체 및 법률자문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사민사회포럼(Asian Civil Society Forum, 2002. 12.9~13)은 유엔 협의자격 NGO 회의(CONGO)가 주최하고, CONGO

아시아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Outreach to Asia; WGOA)와 태국 지역위원회(Local Hosting Committee in Thailand; LHC)가 주관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민주적 지배를 위한 유엔과 NGO간의 협력 :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할증진과 네트워크 형성”을 주제로 참석자간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34개국 410여 개 단체 56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전원회의, 원탁회의, 주제별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 등 33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위원회와 NGO들과의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워크숍에는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토론에 참가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2차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1.13~31)는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제2차 이행 보고서에 대해 심의(2003.1.15)했다. 이행보고서 심의시 한국정부는 7개 부처에서 17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위원회도 참가하여 그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였다. 1989년 11월 20일 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은 2002년 11월 현재 19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43조에 따라 1990년에 설치되었으며, 비준한 협약당사국의 협약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5년마다 협약당사국이 제출한 정부 이행 보고서를 심의한다. 위원회의 수는 10명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 2월 10일 ‘제9차 아동권리협약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등 13인의 위원(임기만료 교체 5인, 정원 확대 8인)이 선출되어 총 18명으로 확대되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2000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2001년 위원회의 설립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제1차 보고서 심의(1996년)시 제기한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상설 아동권조정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점,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 노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협력부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홍보의 미흡, 동의에 의한 혼인의 남녀 최저연령의 상이, 인종·장애 등에 의한 차별, 아동의 표현·결사의 자유제한, 학교 체벌 허

용, 편부모가정 아동의 양육비 보장 미흡,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의 개선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권한, 조직 및 예산, 아동의 진정접수 사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어 최종 권고문을 통해 위원회의 아동권리 부문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의 아동전문가의 임명을 보장하거나 아동권리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차별의 금지에 관한 우리 위원회 권고의 이행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워크숍 참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주관으로 베이루트에서 개최된 ‘제10차 아·태 지역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 워크숍’(Tenth Workshop on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Asia-Pacific Region, 2002.3.4~6)은 각국 정부대표와 시민사회, NGO, 국가인권기구, 유엔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9차 방콕 워크숍 이후 아·태지역에서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워크숍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인권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발전권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세계대회의 선언과 프로그램의 실행, 아·태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 및 소지역 단위의 업무 배치의 개발 정도에 대한 점검과 아·태지역의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세션(Session)으로 운영되었다. 위원회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제반사항을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APF 가입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APF 주관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2002.7.15~16)된 ‘미디어와 인권교육 APF 워크숍’에는 아·태 지역 17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기구, 국제기

구, 인권관련 비정부단체,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가하였다. 워크숍은 국가인권기구의 문제점과 도전, 국가인권기구의 실무적 이슈들, 최상의 실무기준과 전략, 정보네트워크의 발전 등 총 8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각 국의 홍보 전략과 인권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권옹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 주관의 ‘법안심의 대비 워크숍’(2002.10.28)과 NGO 주관의 ‘인권포럼21’(2002.10.30) 및 인권선언의날 기념 심포지엄(2002.12.9~10) 등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주최측은 현재 일본정부에서 추진중인 「인권옹호법안」의 내용 중 신규로 설치하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을 해 왔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립경위, 성격, 활동상황 등을 설명하고 일본 「인권옹호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3) 외국의 국가인권기구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

위원회는 2002년 6월 2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호주의 APF 사무국, 뉴사우스웨일즈 차별금지위원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 및 호주 인권및기회평등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와 뉴질랜드의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New Zealand) 등을 방문하였다.

뉴사우스웨일즈 차별금지위원회는 주(州)차별금지법을 집행하며, 성별, 장애 및 인종 등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조정, 차별금지법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홍보 및 권고와 차별금지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기구로, 위원회간 상호 직원 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호주·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국내외 인권 현안에 대한 연구 자료와 인권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정보교류, 직원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1986년 「인권및기회평등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차별에 관한 진정, 인권에 관한 진정, 국민 홍보 및 교육, 정책 및 법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77년 설립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제반 불법적인 차별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 또한, APF 사무국을 방문하여 우리 위원회의 APF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충자료를 전달했다.

위원회는 캐나다 인권기구의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연구 및 상호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2002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교도소 등 8개 인권 관련 기구를 방문했다.

캐나다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과는 향후 우리 위원회의 직원 위탁교육 및 방문교육 등 직원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공통 관심사에 대한 실태조사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캐나다 연방법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를 방문하여 진정처리 절차, 구제조치 및 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프라이버시위원실(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을 방문, 개인비밀정보보호 등에 대한 캐나다의 정책 및 법률제도에 대해 토의하였다.

또한, 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진정사건을 다루는 대(對)경찰민원위원회(Commission for Public Complaints against; RCMP) 및 교정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교정국을 방문하였다. 인권침해를 다루는 두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구금시설 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중범죄교도소 등을 직접 방문해 구금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교정정책 등에 관해 교도소 관계자들과 토론했다.

위원회는 2002년 9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국제사면위원회(AI) 영국지부,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등 영국의 7개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프랑스 소재 4개 기관을 방문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들 해외 인권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국제 NGO들의 활동 및 인권 홍보체계를 파악하였다. 인권 관련 국가기구와 NGO의 인권보호 활동을 살피고 현지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인권 관련 홍보자료(비디오 및 포스터, 팸플릿 등) 및 각 분야별 인권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기능, 권한 등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몽골 인권위원회 위원장 일행이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 동안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주노동자및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한국체류 몽골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위원회는 몽골 인권위원장 일행이 한국의 인권실태를 좀더 파악할 수 있도록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인권 관련 주요 국가기관 방문을 안내하였으며,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4) 국제인권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는 APF 주관으로 호주 캔버라 연방경찰학교에서 실시된 인권침해 조사교육(2002.11.11~29)에 사무처 직원 3명을 파견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10개 인권위원회에서 25명이 참가한 이 교육 프로그램은 조사에 관한 국제기준과 모범사례 연구, 각국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하여 위원회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조사관 교육과 전파요원 교육의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조사관 교육은 조사관의 역할과 자세, 인권침해의 조사, NGO의 입장, 국제기준

의 인권과 아·태지역의 의미, 자료수집과 분석, 증거법칙, 조사수행과 관리, 참고인,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조사관의 역할 및 범죄현장 수사와 증거의 취급 등 조사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파요원 교육은 효과적인 교수법에 관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의 원칙, 강의준비 및 실행, 강의평가 및 실습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주관으로 방콕에서 실시된 인권교육에도 직원 2명을 파견(2002.10.21~11.1)하였다. 이 교육은 주로 국제인권기준과 모니터링 체제,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장기 전략계획, 국가인권기구간 국제 및 지역협력 등 제반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것이다. 강사진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고문인 브라이언 버디킨과 그 동안 인권 관련 대회에서 활발한 지원활동을 해 온 스웨덴의 앙리 왈렌버그 인권연구소장 등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아·태지역 각 국가인권기구의 직원 1~2명이 참석한 이 교육에는 주로 국제협력 및 정책분야 실무급 직원들이 참석하여 전반적인 국제 인권현안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운영,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한계, 재정적인 문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NGO와의 관계 등에 대한 토론과 대응방안, NAP 및 정책전략 등에 대한 실효성·실천방안 등이었다. 우리 위원회의 설립과정 및 규모, 권한범위 등은 다른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유엔 측에 의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중인 다른 나라(예, 일본)의 모델로 널리 홍보되었다.

(5) 국제 인권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요청에 따라 ACJ에서 작성한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토록 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2년 11월에 개최된 APF 연례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인신매매자문관인 Anne Gallagher가 전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관련 12개국(APF 회원국 9, 가입신청국 3)의 인신매매 실태 및 대응현황은 Kate Fitzgerald(APF 사무국)가 작성하였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 중 한국의 인신매매실태 및 대응현황 부분에 대하여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 NGO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작성, 제출하였다.

(6) 국제인권운동 연대 및 협력체제 구축

한국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2002년에 70명이 넘는 인권 관련 외국 주요 인사가 우리 위원회를 다녀갔다. 이들은 위원회의 설립경과, 현황 및 활동상황 등을 파악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주요 국제인권 정보를 설명하는 등 상호 의견교환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2-6-2〉 국외인사 위원회 방문 현황

단체명	일시	방문목적	방문자	비고
Asian Legal Resource Center(ALRC)	2002.5.10, 10:30~12:00	인권위의 권한 및 기능 파악(특히, 구금시설)	셴 리양 중국 대법원 부장판사 등 8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아시아 NGO 홍보단	2002.5.11, 15:00~16:30	국제형사재판소(ICC) 참여 촉구	리알 순가 홍콩 인권법 센터 소장 등 5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호주 대사관	2002.5.21, 14:30~15:30	인권위의 기능 및 활동 상황 파악	Mary-Jane Liddicoat 주한 호주대사관 일등 서기관 등 2명	
일본 인권포럼 21	2002.5.24, 14:00~16:00	일본 인권옹호법과 한국 인권위법과 비교분석	마에카와 미노루 포럼 총괄연구원 등 5명	
일본 변호사 연합회	2002.6.3, 14:00~16:00	일본 인권옹호법 제정 관련 한국 인권위법의 제정경과와 주요업무 파악	후지와라 세이고 변호사 등 12명	
뉴질랜드 외교부	2002.6.21, 14:00~15:40	한·뉴질랜드 국제인권 분야 연대강화	Ian Hill 뉴질랜드 외교부 인권국장 등 2명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단체명	일시	방문목적	방문자	비고
일본 법무성	2002.8.7, 14:00~17:45	일본의 인권옹호법제정 관련 한국 인권위법 및 위원회 활동상황 파악	나카오 아키라 인권옹 호국 검사 등 3명	
일본 고베대학 교(형사법학회)	2002.8.23, 09:30~11:30	한국 인권위법 및 위원 회 활동상황 파악	미치이 마코토 교수 (형사법학회 회장)	
유엔인권위원회	2002.8.9, 14:30~16:00	한국 국가인권위 활동 상황파악	이완희 UNDP 몽골사 무소 국제인권자문위원 등 2명	
캐나다 치할리 스 원주민	2002.9.26, 11:30~13:40	소수민족 인권관련사항	치할리스 원주민 추장 등 8명	한국여성 민우회 협조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2002.10.4, 15:10~16:30	인권위 활동과 한국의 인권보장 상황 파악	나카야마 타로 회장 등 11명	주한 일본대사관 주관
스웨덴 부대사	2002.10.25, 11:00~12:00	인권위 활동과 한국의 인권보장 상황 파악	Ms. Fredrik Obrant 스웨덴 부대사	
몽골 국가인권위 원장 일행 방문	2002. 10.29~12.1	인권위 활동과 한국의 인권보장 상황 파악	체렌도르프 위원장 등 5명	유엔인권위 주관
민주주의공동체의 영국대표단 방문	2002.11.12	외국인 노동자문제 등 인 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유엔인권위원회 영국 대표단장 등 4명	주한영국대사 참석
베트남 인권연구소	2002.12.2, 13:30~17:30	외국인 노동자문제 등 인 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카오 덕 타이 소장 등 7명	성공회대학 아시아 NGO 정보센터주관

이는 아직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위원회의 국제 홍보와 함께 국제 인권관련 주요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추진중인 「인권옹호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등에 일본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입장의 일본변호사협회 관계자(2002.6), 찬성하는 입장인 법무성 인권옹호국 검사 일행(2002.8) 및 법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중의원들(2002.10)이 모두 다녀가서 각자의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면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 가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와의 긴밀한 협조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연대서한을 발

송함으로써 국제인권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 통제선 지역에서 인도·파키스탄 간의 총격전에 따라 민간인 살해와 난민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하는 등 2002년에 총 17건의 연대서한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 대법원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태국에서는 피난중인 미얀마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표 2-6-3〉 국제연대서한 발송 현황

번호	사 안	서한내용	수신자
1	카슈미르 통제선 지역의 인권유린	카슈미르 통제선 지역에 인도·파키스탄간의 총격전에 의한 민간인 살해와 난민증가 등에 대한 우려 표명	인도 대통령, 수상 파키스탄 대통령 UN 사무총장, 고등판무관
2	주중 한국영사관 경내진입 탈북자 강제연행	탈북자에 대한 중국공안의 강제연행에 대해 항의하고,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우 및 국제협약에 따라 처리 요청	중국 외교부장, 주한 중국대사
3	인도의 네팔인 불법 감금 및 추방	인도정부가 네팔인 불법감금 및 강제본국송환을 규탄하는 서한 발송	인도 대통령, 수상 등 네팔 수상, 내무·법무장관
4	스리랑카 경찰의 아동고문(2회)	관련자 처벌, 피해자 치료 및 보상 요청	스리랑카 수상, 검찰총장, 교육문화부장관 등
5	인도 달리트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인도 카스트의 상위계급이 하위계급 달리트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에 항의하고 관련자 사법처리, 피해자 보상 등 요구	인도 대통령, 수상, 인권위 등
6	스리랑카 부녀 고문 행위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등 요구	스리랑카 수상, 검찰총장, 경찰청장, UN고문방지특별 보고관, 인권위
7	스리랑카 과학자 고문 치사	특별수사부서에 의한 엄정 수사 촉구	스리랑카 수상,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8	네팔에서의 부탄 인권운동가 살인 누명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도록 요구	파키스탄 수상, 법무장관, 검찰총장
9	파키스탄 기독교인 사형선고	기독교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의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신성모독관련법의 인권남용과 종교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 보완 요구	파키스탄 수상, 법무장관, 검찰총장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연번	사 안	서한내용	수신자
10	말레이시아 경찰 피의자 의문사	경찰의 피의자 학대 및 고문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말레이시아 경찰총장, 내무장관, 인권위
11	태국의 미얀마 반체 제인사 강제송환	이들의 강제송환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단속 중단 요청	태국 수상, 외무·내무장관, UN난민고등판무관실(태국)
12	필리핀 대통령의 사형집행유예 결정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고, 다른 사형집행대 상자에 대하여도 관대한 결정 요청	필리핀 대통령, 법무장관
13	스리랑카 경찰의 피의자 고문 등	관련자 처벌과 피의자에 대한 의료조치 이행 촉구	스리랑카 수상, 법무장관, 경찰청 부감찰관, 인권위
14	파키스탄 군인의 인권운동가 고문, 살해	목격자 납치, 구금, 고문에 대한 조사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촉구	파키스탄 수상, 내무장관
15	방글라데시 군인들의 불법체포	방글라데시 군인들에 의한 대량 체포 작전중단과 군에 의한 고문 조사·처벌 촉구	방글라데시 수상, 내무· 외무장관
16	스리랑카 경찰 절도 용의자 고문	경찰구금사망사건 증거에 대한 우려표명과 모든 고문의혹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 촉구	스리랑카 내무장관, 검찰총장, 경찰감찰관

(7) 「국제인권조약국내이행자료집」 발간

위원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인권조약국내이행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 6대 인권조약에 대하여 국내 이행 상황 관련 각종 문서를 총 6권(3200쪽)에 집대성한 것이다.

자료집은 주요 유엔 인권조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제1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제2권), 여성의 권리(제3권), 아동의 권리(제4권), 인종차별 철폐(제5권), 고문방지(제6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별로 국제 조약, 조약별 정부 보고서, NGO 반박 보고서, 유엔 최종견해, 요약회의록,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 보고서 등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위원회는 자료집을 국내 인권시민단체, 관계 정부 부처 및 인권강좌 개설대학 등에 배포하였다. 2003년에는 모든 문서를 인터넷에 게재해 일반인에게도 홍보하고, 상반기 중으로 영문으로 된 문서의 번역을 마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제3절 평가

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고 위원회가 출범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각과 입장은 단일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권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입장 차이는 출범 초기의 위원회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위원회의 인적구성, 조직적인 준비가 늦어진 것도 민간단체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앞으로는 민간단체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민간단체들의 전문성을 높여 활발한 인권운동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단체지원사업의 확대와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인권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사업을 통하여 인권신장과 옹호를 위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위원회의 관계개선은 물론, 협력 가능한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 신뢰 수준도 한층 견고해질 것이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 지역협력기구인 APF에 가입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가인권기구 방문과 유엔 및 APF에서 주관하는 국제 인권 교육에 적극 참가하여 선진 인권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제인권조약국내이행자료집」 발간, 아시아시민사회포럼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 국제 NGO들과 상호 정보교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특히 「국제인권조약국내이행자료집」은 유엔 인권조약에 대한 한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엔 조약감시기구의 권고사항을 파악하는 등 인권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유엔의 최종견해 및 요약회의록 등이 한국 내에서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요청해 온 유엔의 권고사항을 위원회가 직접 이행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정부 이행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반영함으로써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정부 이행 상황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점과 시민단체와 인권영역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NGO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주요 국제회의에서 제기되는 국제이슈에 대하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위원회는 각종 국제회의 참가시 국내 NGO들과 상호 정보교환, 국제회의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등 제반사항을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국제회의에서 제기되는 주요 국제이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 NGO회의에도 적극 참가하여 국제 NGO들과의 연대체제 구축을 위한 제반 협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7 장

기획사업 :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가족해체에 따라 발생한 아동, 청소년, 노인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시설거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정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2002년 기획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기존 자료 및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 설계를 실시하여 대상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부유하는 아동 및 노인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권고와 시민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 노인의 인권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방안을 모색하였다. 시설에 대한 조사는 개별 시설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복지시설에서 살아가는 아동·청소년 및 노인들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겪는 어려움들과 법·제도·정책적 측면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시설 거주인들의 성장배경 및 시설유입 경로, 시설 유입과정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점검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어린이, 노인의 인권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며 아동, 노인의 인권문제 등이 우리 주위에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아동·청소년 시설 방문 조사

(1) 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버림받은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2002년 11월 22일 ○○○○ 소년의 집과 11월 26일 ○○보육원을 방문조사하였다. 또한 2002년 11월 29일 ○○○ 청소년 쉼터와 ○○○○ 청소년 쉼터를 방문조사하였다.

나. 조사방법

① **아동 보육시설** : 아동 복지시설의 경우 조사기획 단계에서는 개별 시설들의 인권 관련 시설평가, 시설장 및 종사자, 시설아동들의 인권 관련 항목들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시설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설 운영 및 아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종사자 및 아동들과는 시설 참관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 몇 가지를 질문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② **청소년 쉼터** : 청소년 쉼터에서는 시설 운영자들이 겪는 어려움들과 제안들을 듣고, 쉼터 거주 청소년들과 설문조사 및 대화를 하였다.

다. 조사항목

① 아동 보육시설

시설관찰조사지, 시설장 면담조사지, 종사자 면담 조사지, 아동설문지 총 4종의 조사지를 작성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청소년쉼터

가출 이후 쉼터 정착 이전까지 가출 청소년들이 당하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쉼터 이전 생활 기초조사, 경찰 수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 (성)폭력, 교육, 의료와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2) 조사 결과

가. 아동보육시설

① **신체의 자유 제한** : 방문조사한 대규모 아동 복지시설의 경우 입소 시점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전까지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체육시설, 병원까지 시설 내에 있었으며, 아동들의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② **교육권 침해** : 대규모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부산 소재)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그러나 소수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중등 교육과정 역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문제에 관한 아동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③ **부모와의 교류 제한** : 대규모 시설은 아동을 버렸다는 이유로 부모와의 만남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음을 시설장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다.

④ **보호받을 권리** : 사회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의 인권상황은 대규모 시설에서와 달리 방문 조사한 소규모 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 면담과정에서 아동들은 밤에 그들을 돌볼 별도의 인력과 함께 잠을 자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단지 더 큰 아동(고등학생)이 더 어린 아동(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돌

보고 있다고 하였다.

나. 청소년 심터 설문조사 결과

① **심터 이전 생활 기초조사** : 청소년들의 가출이유는 거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 상당수 아이들이 가정생활에 답답함을 느꼈고, 부모의 재혼에 따른 새 부모와의 불화나 학대 등의 경우도 있었다고 답했다.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에 대한 답은 길거리 배회, 24시간 영업 사우나, 심터, 놀이터, 공원, 친구집 등이었고, 심터 이전 거주지 역시 고시원, 선배나 친구 자취방, 교회, PC방, 여관, 빈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금품갈취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경찰 수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 : 설문조사 결과 경찰서나 파출소에 데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이나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경우는 거의 없어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구타, 가혹행위, 체벌 등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③ **(성) 폭력** :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응답자 대다수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나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귀찮다’, ‘경찰서에서 욕먹어가며 조사받기가 싫다’, ‘무섭다’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폭력행위를 개인적이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공권력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나 새아빠인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 중 성폭력을 신고한 경우는 없었다.

④ **교육문제** : 대다수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학교생활에 대한 염증’, ‘선생님의 체벌과 차별 대우’ 등 학교 관련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앞으로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님과의 대화나 생활공간이 가장 필요하며,

취업 혹은 직업교육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 전문과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⑤ **의료문제** : 설문결과를 보면 아픈 경험이 있으나 건강보험증과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의 청소년들이 많았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다 치거나 아팠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많았다.

다. 청소년 쉼터 종사자와의 면담결과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① **가출예방을 위한 노력** : 각 학교에 청소년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가출 청소년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의 확대** : 쉼터는,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은 부모와 상담과정을 통해 가족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가족해체'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은 '그룹 홈'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청소년 쉼터를 인가시설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쉼터를 가출 초기 청소년들의 안전망으로 제도화하고, 이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소규모 '그룹 홈' 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③ **가출 청소년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조건 마련** :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가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쉼터가 법적 후견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이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전혀 불가능하다.

④ **청소년 재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인력의 확충** : 청소년 재활과 관련하여 가장 절실한 사항은 약물 등 문제 행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본드 흡입과 같은 약물중독 청소년의 경우 현재 쉼터의 구조로는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이 주소지를 쉼

터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쉼터 소재의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 또한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나 대안 교육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기 어렵다.

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주민들이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경계하고 거리감을 둘 뿐만 아니라, 쉼터 시설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쉼터가 합법화된 시설로 인가되어 설치될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시설 방문조사

(1) 조사 대상 및 방법

가. 조사대상

2002년 11월 26일 무료 노인거주시설인 ○○양로원, 2002년 11월 29일 ○○양로원, 2002년 11월 28일 ○○○부랑인 복지시설 등 총 3곳을 방문조사하였다. 이번 방문조사는 노인학대가 지역사회, 노인 복지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등 여러 경로들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무료 양로원과 부랑인 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 방문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첫째 노인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기반확충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 노인의 관점에서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시설노인의 인권보호 정책권고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방법

노인 복지시설 방문조사는 사전에 시설 직접관찰, 시설장 및 종사자 면담, 시설거주 노인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노인 복지시설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한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자체 조사도구가 개발되었다. 조사도구는 노인복지

시설과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해 동일한 질문지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같은 영역에 대해 두 시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방법으로 면접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주변시설이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직접관찰 후 설문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노인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하여 우회적인 질문방법을 적용하였다.

다. 조사항목

조사지는 각각 시설장 면접조사지, 직접 관찰조사지, 종사자 면담조사지, 거주노인 면접조사지로 구성되었다. 부랑인 복지시설의 경우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설문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시설의 특성상 입퇴소 및 거주, 외출 등에 있어 자유권 침해가 빈번하리라는 가정에서 였다. 시설장, 종사자, 거주노인에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이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조사항목은 인구사회학적 사항, 의사소통 가능여부, 종교의 자유, 경제적 착취 및 노동권 문제, 폭언 및 폭행, 보호받을 권리, 존엄성, 의식주, 참정권, 입퇴소 절차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참여권 등의 하위영역으로 설계하였다.

(2) 방문조사 결과

방문 조사한 노인 복지시설과 부랑인 복지시설에는 미로와 같은 내부구조와 위험한 계단,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구배치, 노출된 전선 및 파이프 장치, 쿠션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벽, 노출된 난방장치 등이 있었다. 그리고 소방도로, 소방대피시설, 비상벨이 미비되어 있었고 야간 근무 책임자가 없어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 노인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시설의 부적합성 외에도 노인 중심의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외상노인인 경우 대소변을 치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나 침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병동을 제외한 일반 거실의 경우 맨바닥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였다. 또

한 건강한 입소자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기능저하 거주자를 돌봄으로써 보호 과정에서 폭력의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시설 거주 노인의 사생활 보장 여부를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직원이 세탁물을 개인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처리하여 한곳에 정리하여 필요할 때 지급하고 있었다. 방문조사한 부랑인 복지시설 전체와 노인 복지시설의 일부 노인은 개인 사물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속옷 역시 개인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부랑인 복지시설의 경우 자유로운 외출 및 외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고, 무적자(無籍者)가 많아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물리적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시설 입소자 대다수가 장애인이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아동과 노인 관련 실태조사

아동·노인과 관련하여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 인권보호방안, 지역사회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무료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 사례조사,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실태조사 사업에 기술되어 있다.

4. 인권 동화책 발간 사업

학대받는 노인과 버림받은 어린이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동화책 발간 사업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 동화책 발간사업’에 기술되어 있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출범 원년 기획사업으로 아동과 노인을 그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들 집단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기획사업을 통해 이들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노인과 아동문제는 여러 부처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노인과 아동의 관점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아동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인권 시민단체가 많지 않으며, 사회적인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의 미흡한 대책과 부족한 사회적 관심 분야인 ‘아동, 노인의 인권’을 2002년 기획사업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업은 위원회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인과 아동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시민사회 속에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아동·청소년 시설 4곳, 노인 관련 시설 3곳 등 총 7개 시설) 결과, 파악된 문제점들은 개별 시설들에 대한 평가가 될 수는 있었으나 노인과 아동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주지는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또한 인권 동화책 발간 사업 역시 실태조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시행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02년에 추진하였던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기획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인권 사회단체에서도 문제로 부각되지 못하였던 아동과 노인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접근한 첫 번째 시도였으며, 인권 동화책 발간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

는 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는 기획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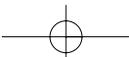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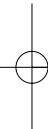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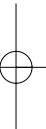
첫째, 기획사업 선정 및 방향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를 추진할 특별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주제 선정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과 문제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3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제2장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제 1 장

주요 인권 현안

1. 국가보안법 개폐

국가보안법은 그 운용과정에서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 인권 NGO 등으로부터 수차례의 개폐 권고를 받은 사안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는 총 1045명(2002.12.31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 수도 현재 2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총련’ 활동 관련 구속자의 경우, 평균 형량이 1~2개월 정도로 무리한 법집행에 따른 ‘학생전과자’ 양산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것이 그 운용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치권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국회에 국가보안법폐지안(2000.11.27)과 개정안(2001.4.27)이 각각 계류중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체 입법을 주장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유지론 입장에서는 ‘국가안보’ 상 북한은 여전히 ‘주적’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인 북한의 신형법, 노동당규약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전면 개정론 및 폐지론의 입장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구실로 법을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해 헌법상의 기본권과 국제 인권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적단체 구성 관련 조항(제3조)과 표현의 자유 관련 조항(제7조) 등이 주요 문제점(구속자의 92%가 7조 위반)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하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주적’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반통일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이 아닌 행정기관(통일부)의 북한 접촉 허가 여부에 따라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배치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처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재검토, 나아가 국회 차원의 법률 개폐 논의의 활성화를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외부 전문가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03년 중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 보호감호제도 개선

보호감호제도 개선 문제는 오랫동안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중 처벌’ 및 인권탄압 소지를 문제시하며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한 부분이다. 특히, 열악한 구금 시설환경, 행형법에 의한 수용자 관리, 낙후된 교육 프로그램, 근로보상금 부족, 엄격한 가출소 기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여전히 높아 ‘재사회화 교정기관’으로서의 본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감호처분은 그 형식과 내용, 효과 면에서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보호감호 처분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형과 동시에 선고(1년마다 가출소 심사가 있으며, 7년을 초과할 수 없음)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형벌처럼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에서, 가출소 여부 결정주체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산하 ‘사회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 제도 개선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회보호법」을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외부 전문가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03년 중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차별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수용 여부 등이 쟁점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7조 등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4년 ILO의 고용정책 권고(The Employment Policy n° 169)에서도 각 회원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정규 부문에 흡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고 사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문제 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고, 4대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비정규직 확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청원(2000.12) 중이며, 정치권을 비롯하여 새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외부 전문가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4.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차별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인데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필요하다. 사

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인 5대 차별(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정책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2003년 중점과제로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인권위원,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올해 안에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차별금지기본법에 담을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개념규정, 차별 시정 국가실행계획(NAP) 수립 및 시행 장치, 차별금지의 기본시책 마련, 고용·교육·재화·시설·서비스 등의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집행에서의 차별 금지 및 잠정적 우대조치, 그리고 가정·학교·직장·사회 각 부문에서의 차별금지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는 물론 사적인 부문에서의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이외에도 강력하게 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차별시정위원회)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반인권범죄나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 등이 공소시효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사실발견 은폐행위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했던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다. 위원회에서 2002년 8월, 관련 분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이 입법 청원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이 길며, 미국은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대다수 주에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인권 관련 제도의 보완 및 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관련 분야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경찰·국가정보원·검찰 등 사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형제도 개선

사형제도는 형벌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형벌이며 비인도적이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관계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1999년 11월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사형 규정 범죄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2년 말 현재 사형제도 폐지국은 111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모든 범죄에 대하여 74개국, 일반 범죄에 대하여 1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 폐지한 나라는 22개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과 형법에 100개의 사형 규정을 두고 있고,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현재 52명의 사형수가 집행 대기중이다. 현재 국회에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전면 폐지론 및 단계적 폐지론, 그리고 존치론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형제도 전면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생명권 침해,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비인도적 제도, 야만적 형벌, 오판 가능성, 범죄 억지력에 대한 회의, 형벌의 목적과 상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단계적(부분적) 폐지론자들의 입장은 종신형 같은 대체입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강간, 살인, 간첩죄 등 중대범죄에만 국한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반면에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입장은, 범죄 억지력이 통계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에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도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지지하는 견해가 크므로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11월,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95헌바1)이 나기도 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형제도 존폐 여부 논란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7.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위원회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현안 중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구금시설 환경 및 수용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건강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어 전국민건강보장시대에 맞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의료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취업을 꺼리고 있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용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문제는 예산부족(1인당 연 5만 9000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력의 질적·양적 공급 및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실적 대안으로 공중보건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용자들에게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8.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높은 입국비용과 송출비리 빈발,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지위 보장 미비, 임금 및 노동조건 열악으로 인하여 불법체류 노동자가 양산되는 등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1999년 4월 7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상 차별방지 조치 및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국무조정실에서 제안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우리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관련 쟁점으로는 산업연수제도 존폐 및 고용허가제 도입 여부,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노동 3권 보장 범위 및 방식, 사회보장 적용 범위, 혼인, 자녀교육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양성화 조치 여부 등도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사항에 대해 새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9.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방지

개인의 유·무선 통신 등에 대한 도·감청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 의한 사생활 영역의 침해 가능성이 점점증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 및 감청 의혹이 증폭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금융정보 등을 담당하는 사기업에 의한 대량 정보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사생활 영역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열거된 감청대상 범죄의 적절성 및 수사기관 등의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문제시되고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있으며, 사생활의 보호영역이 파괴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0.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폐

유엔 인권 관련 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협약에 가입하고, 가입한 주요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폐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협약은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협약발효1991-당사국49), 「여성에대한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2000-30), 「대인지뢰금지협약」(1999-131),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1950-141), 「단결권및단체교섭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1951-152), 「전쟁범죄및인도에반하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에관한협약」(1970-45) 등이다.

또한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협약으로는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2002-42), 「아동매매 · 아동매춘및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2002-42)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가 가입한 주요 인권협약 중 유보한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3-1-1〉 인권협약 중 유보조항

조약명	유보 조항	유보 내용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없음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 제5항 제22조 제41조	재심받을 권리 노동조합결성 및 결사의자유 국가간 통보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없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제1항(g)	가족성 선택권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제40조제2항(b)(v)	면접교섭권 입양에 대한 관계당국허가 상급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고문방지협약	없음	

제 2 장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제1절 인권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1.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인권보호를 위해 개별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단계적·계획적 개선을 위한 청사진(Master Plan)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인권신장과 함께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1993년 빈 세계인권대회에서는 각국에 대하여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2001년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NAP 수립이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신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 정부로 하여금 실천가능한 NA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NAP 수립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즉, 영역별, 소관 부처별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일정기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인권수준을 개선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중 유보사항에 대하여 어느 시기에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

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에서의 인권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원 가능한 자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파급효과가 큰 영역 별로 이정표(landmarks)를 개발하여 그와 관련된 목표 달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권정책을 개발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시민단체들의 활성화 방안 등도 NAP에 반영되어야 한다.

NAP는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주도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연구용역, 인권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NAP 기본시안 마련이 요구된다. 실효성 있는 인권증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분야별 전문가, 인권 사회단체 등 범국가적인 역량의 총결집이 절실하다. 또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의 성공은 시민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NAP 수립은 워크숍, 공청회, 간담회, 지역별 설명회 및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이 계획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 인권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에서 출발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천지향적(Action-oriented)인 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과정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Feedback)을 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2.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인권 현안 중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Task Force Team(이하 “TFT”)을 운영하고 있으며, TFT 운영은 각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취하면서, 관계 법령 개폐, 제도·정책 등의 개선 권고 등의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TFT에서 논의할 과제선정은 위원회의 그 동안 운영 경험 및 시민사회의 개선 권고가 있어 온 주요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과제가 설정 되면, 과제별로 팀장(상임위원), 팀원(비상임위원포함), 법조계, 학계 및 관련 분야 시민단체 전문가 3~4인, 실무간사, 행정비서 등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게 된다.

TFT 운영방식은 과제별로 6~10개월의 기간을 확보하여 필요시 연구용역, 공청회 또는 청문회, 워크숍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 및 사례 등이 광범위하게 연구·논의되며 필요시 관련 분야 및 쟁점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된다.

많은 인권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인력 및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2003년 위원회 TFT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국가보안법 개폐, 보호감호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해소 등 3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였다. 인력과 예산이 보장 되는 대로 2004년에는 과제수행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 수립

인권보호·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구제를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법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및 개선방향은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확대에 따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권교육의 법제화 및 인권교육의 통일성, 종합성, 체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5~2004,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은 각국에 이 계획에 따른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요구측정과 전략 수립의 측면에서 모든 국가의 인권교육 책임기관은 상세한 인권교육 이행계획 개발을 요청받게 된다. 인권교육 발전 종합 프로젝트는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으로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국제 행동계획의 원칙과 목표를 반영한 종합적 이행계획이 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 발전 종합 프로젝트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권교육 현안 공론화 및 정책 수립, 관련 국가기관·자치단체·시민사회·전문가 개인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행조건의 확보 등 인권교육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인권교육 확산에 따른 인적·물적 기반 강화는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과정이고 결국 효과적인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인권교육의 법제화는 인권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이보다는 단일법으로 「인권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법제화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기관협조, 인권교육의 상설화, 각급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실시 및 이에 부수한 사항, 민간 인권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인권교육원 설립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결국은 국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인권교육원의 설립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인적기반 및 물적기반 개발을 체계화하고, 인권교육의 통일성을 기하여 종합적 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부 및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인권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 및 표현체계를 인권적으로 변모시킨다. 이러한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하고 기본토대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자 참여정부 주요정책의 하나인 차별시정은 법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권 감수성이 제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일상 속의 차별의식을 지적하고, 차별을 차이와 구별하는 이른바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권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2002년에 개발한 인권만화와 인권영화에 이어, 2003년에는 애니메이션, 사진, 포스터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차별 예방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차별문제 중에서 공감대가 높고 실생활에서 우선해서 개선되어야 할 주제(외모, 나이 차별 등)를 선정하여 집중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차별문제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차별의식을 일깨우고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접근이 필요하므로 각종 전시회, 라디오 및 지하철 광고,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고자 한다.

언론은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 효과적인 통로이다. 여론을 형성하고 파급력이 큰 언론이 인권을 주요한 주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언론사와 공

동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공익광고, 언론인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안내서 발간, 인권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즈음하여 각 나라는 인권옹호와 존중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세계인권선언일(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데는 부족했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반성장치’라는 유엔의 지적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인권의 날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토대구축을 위하여 2003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인권선언기념일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아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인권홍보대사 위촉, 인권지킴이상 제정, 인권전시회 및 인권영상전 등을 개최하여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 진정사건 조사 · 구제의 실효성 확보

현행 위원회법 제36조는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피진정인에 대하여 진술서 제출 요구 후에 제한적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원인이 되는 사실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시급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여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조사업무에 있어 위원회법 제56조의 인권옹호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외에 기존의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각종

강제처분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관들이 조사와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접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제도, 강제시정명령, 과태료처분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제도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법은 조사 대상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하거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은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조사가 곤란하다.

인권침해 진정 처리사건 1360건 중에서 각하 처리된 진정사건이 1170건으로 처리건수의 86.0%를 차지하고 있다. 각하 처리된 진정사건의 각하사유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지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34.4%),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 원인사실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23.9%),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7.3%), 진정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13.2%) 등은 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각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그 조직과 관련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건의 은폐기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취약성을 안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2. 지방사무소 설치

지방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주민들의 위원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사무소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행위 등도 있어 지역의 인권단체나 언론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인권보

제 3 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장을 위하여도 지방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의 조사대상 기관인 검찰, 경찰, 군대, 구금·보호시설 등이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어 조사의 신속성 확보와 진정인에 대한 면전진정 접수 및 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방출장 등에 따른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곳에 지방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표 3-1-2〉 인권침해 관련 주요 조사 대상기관

(단위:개소)

검찰			경찰		구금·보호시설		군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경찰서	파출소	교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구금시설
5	13	41	231	2,930	44	936	98

3. 국가기관간 협의체 구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0조). 또한,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제29조).

그러나 국가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없어 정부 부처와 인권 관련 업무의 조정과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가 차질을 겪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는 인권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령개정을 통

하여 범국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주요 인권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 인권정책관들이 참여하는 국가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구에 의한 기본권 침해 내지, 기본권보호의 실패라는 배경에서 태동되어 그 주된 업무를 ‘국가기구로부터의 인권 보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여타 국가기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인권기구 설립 원칙들을 명시한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에 한 장을 할애, ‘독립성’ 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임을 천명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사·예산상의 독립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독립성’ 확보는 위원회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법 제정까지 3년여 동안 주된 관심 사항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위원회법은 제3조에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제정된 위원회법이 보장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은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독립성’의 수준과도, 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과도 거리가 있어 시행 초기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02년 11월 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국외출장 사전보고와 관련한 ‘독립성’ 논쟁은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예라 하겠다. 1년 이상의 시행과정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다양한 영역의 인재 확보가 어렵다. 위원회 업무 특성상 의료·법률·교육·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행정자치부 등이 조직 및 직원채용과정에 관여하는 기존 국가공무원 기용방식으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 둘째, 행정부처 예산확보 방식으로는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 위원회는 전술

한 바와 같이 직무상 특별히 독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예산요구액 감액시 의견 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인사와 예산의 예측은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권고를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업무의 실질적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예산에서 독립성 확보가 필수 불가결하다. 즉 첫째 사무처의 조직과 분장사무, 직원의 정원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장에게 전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며, 셋째 세출예산요구액 삭감시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하고, 넷째 자체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여 완전한 기능상 독립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10조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설립과 권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인권 관련 법령조사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1. 인권 관련 법령검토 및 개선 권고

공·사부문의 조직 및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내 법령은 현재 3000여 개가 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법규, 기타 각급 기관의 지침, 훈령, 예규 등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령들의 실행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왜곡된 관행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법제 및 관행 등에 의해 국민의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재해 있다.

과거 국내 정치 및 인권 상황에 견주어 볼 때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국내 법제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제·개정 및 그 실행은 여전히 효율성과 합법성을 위주로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제기된 진정사안, 국가기관의 관련 법령 제·개정안 검토,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현황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재확인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별 인권 현안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인권증진 방안의 기반으로 국내 인권법령의 체계적이며 종합적 정비작업이 요구된다. 법령 및 제도는 그 광범위함과 파급효과 등에서 볼 때, 정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사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위원회가 인권업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법령 제·개정 등 개별사안 및 진정사건 등에 있어 법제와 관련된 자료의 축적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령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이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법령에 대한 종합조사는 차별적 요소, 사회적, 자유권 등 주요 영역을 기준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 영역을 한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러한 종합조사를 바탕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인권 관련 법령 정비는 대상 법령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령과의 비교 법적 연구 등을 통한 일차적 접근과 해당 법령의 주무 부처와의 실무적 협의절차를 통하여 개선의 권고, 의견제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법령 정비 작업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사회 각 부문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모임, 토론회, 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법령 개선의 적합성과 합의도출에 노력할 것이다.

2.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법령 정비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 인권보호에 있어 국제적 흐름과

수준에 맞는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당사국에 직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권 관련 법령의 정비는 국제적 기준이 그 주된 준거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가입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제의 미비점에 대하여 미가입 조약의 가입촉구, 관련 이행법안 검토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국내 법령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연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인권기구는 우리 정부의 그간 국내 이행조치 등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법제에 있어 문제 제기와 권고를 표명하여 왔다. 그러므로 인권법령 종합조사를 바탕으로 우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의 부문에서 정비를 실행해 나감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권보호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인권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공·사 부문 전반의 총력적인 노력은 관련 기관, 개인들에 있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국가기관 등의 자체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며,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협의제도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비 노력과 제도화는 궁극적으로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체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3.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 구금시설, 장애인, 군대 등 총 11개 분야 29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4개 인권 시민단체와 20개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활동가가 참여하여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가 업무로 협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태조사 사업은 비록 위원회 출범과 함께 부족한 인력과 시간 속에서 진행되면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2003년 실태조사 사업은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실태조사 사업은 2002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추진위원회는 2003년 실태조사 과제선정 원칙으로 사업의 연속성, 인권 현안, 기반구축, 인권위 필수업무 4개 원칙을 선정하였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인권시민단체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어 2003년 실태조사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였고, 인권시민단체로부터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2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을 충분히 담아 내야 한다.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 실태조사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위원회에서는 각 영역별로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를 찾지 못한 상태이다. 빠른 시일 안에 인권 영역별로 기존의 논의와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권위가 실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분야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활동해 왔던 인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론과 이론을 동원하더라도 인권 시민단체가 함께하지 않는 실태조사는 문제에 피상적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다.

셋째,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은 여전히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는

이들이다. 구금시설, 군대, 다수인 보호시설 등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관련 국가기관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더 이상 인권실태의 문제를 감추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 첫 단계가 정확한 인권 실태조사이다.

넷째, 관련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인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 영역의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다. 인권 실태조사는 시민사회 영역의 현장성과 전문가나 학자의 이론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인권문제에 전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국내 인권분야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실태조사도 발전할 수 있다. 인권 연구기반 확충과 실태조사 사업에의 교류 협력 확대는 목적이 다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이므로 두 사안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4절 위원회 내부 역량 제고 방안

1. 직원의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임에도 조사권의 제약요인이 있고, 또한 과거 선례가 없으며 인권침해 및 차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권지킴이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직원 스스로 한 차원 높은 전문지식, 축적된 경험 및 치열한 인권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세계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다양한 실무교육 및 사례연구, 그리고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전

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2. 업무량 폭주 해소를 위한 인력보강

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진정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누적되는 진정사건 처리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량 부담도 과도한 형편이다.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3593건으로 이중 인권침해 사건이 2833건, 차별행위 사건이 189건, 기타 571건 등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사회보호제도 개선 검토, 비정규직 차별 해소대책 등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연구하여 개선안을 마련, 권고하여야 하는 업무도 산적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등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은 매우 부족하여 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지연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으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사무처 직제 제정시 합의하여 이미 확보하였던 예산마저 불용처리하게 된 전문계약직 15명, 공무원 파견 20명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당초 직제령 제정시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무처 인력 규모 321명(지방사무소 인력 불포함)은 1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최소한의 인력규모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 및 조직 보강이 절실하다.

제5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인권 관련 유엔 국제회의에서 민간단체들이 제출하는 국내 인권정책에 대한 보고서는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 있다. 유엔의 각종 권고는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의 다양한 인권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위원회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접지원하고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려고 한다.

인권단체가 전문성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 관련 사업영역에 대해 사업의 적실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체협력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체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사업 형태로 시행되며 또한 지원사업의 선정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전공학자, 민간단체 전문가들로 선정된 '단체협력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선정과 지원금액, 평가 등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실천 가능성이 높은 대중적인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시민실천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3년에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 5개 분야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좀더 영역을 확대하고, 채택된 프로그램을 보급, 실행시켜 인권의식 함양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사업들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역별, 분야별 간담회 그리고 향후 민간 시민단체들과의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업무

설명회]와 같은 자리들도 마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권단체 실무자와의 커뮤니티(communitiy)를 위원회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간의 정례적인 의견교류의 틀로 추진할 계획이다. 커뮤니티는 인권단체와 위원회의 실무차원의 상설적인 의견교류의 통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논의, 진행과정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위원회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인권강사단 등 인권 전문가들을 통해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경기·강원 등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에서 한 차례씩 실시한 뒤 진행 성과를 토대로 대상지역을 세분화하고 교육내용을 보강해 상설적인 '인권 강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1)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강화

위원회는 2002년 11월 APF에 가입함에 따라 아·태지역에서의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APF 활동에 적극 참가할 예정이다.

우선, APF 이사회에 위원장이 참가하고 12개 회원국가인권기구간 사무총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책임자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APF 법률가자문회의 위원으로 한국의 법률전문가를 선정, 파견하여 APF에서 위탁하는 지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공공연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매년 개최되는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APF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며, 회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연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2004년에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도 주관하여 지역내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하여 회원 국가인권기구간 공동 토론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

다. 또한 위원회는 2005년에 제10차 APF 연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중이며 이를 통해 아·태지역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직원들에 대한 국제인권교육 활성화

위원회의 설립과정, 임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 직원들을 국제인권 교육에 적극 파견하여 인권 관련 국제적 전문능력을 제고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의 인권교육기관에 대한 제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들이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파견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외국의 인권기구간 직원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국의 인권기구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필요시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인원을 교류하고자 한다.

(3) 유엔 등 인권 관련 국제회의의 적극 참가

유엔 현장상의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어 가능한 한 전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제 인권동향 파악과 함께 주요한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자 한다. 또 이 회의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내 NGO들의 활동상황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에 대하여 이들과 공동보조 또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한다.

국제인권조약에 비준한 모든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약이행감시기구가 매년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들 정부 보고서를 심의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들 조약감시기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시에는 반드시 참가하여 제반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점차 다원화, 글로벌화 함에 따라 다양한 섹터에서 국제 NGO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도 활발하게 개최됨에 따라 이들 NGO들과 상호 교류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03년부터는 국제 NGO들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환경권, 건강권 등 전문화된 섹터(sector)별 회의에 대한 참가를 보다 확대하고자 한다.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 파견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에도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 중의 하나는 국제인권기구 주재국에 상주직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거의 일년 내내 50여 개 의제(agenda) 관련 국제인권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에는 아·태지역 12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가인권기구를 설립중인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해 APF 사무국이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인권기구 주재국, 특히 인권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우리 주재관을 상주시켜 관련 회의 참가, 각국의 국제인권규약 이행실태 및 인권 쟁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인권상황 설명 및 홍보, 위원회의 입장 전달 창구 역할, 기타 주요 국제 인권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주재관 제도를 통해 위원회는 각종 국제회의 운영절차 습득, 국제사회와의 신속·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국제 인권동향에 대한 위원회의 즉각적 대처 능력 확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상시 협력 증진을 통해 인권선도국(특히 아·태지역에서)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준국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이자 위원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적극적 차별시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 국가인권기구에도 주재관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경우, 1998년 기준 1년에 약 2900억원(우리 위원회의 15배)의 예산과 2613명(중앙 628명, 25개 지방사무소

1985명)의 직원을 가지고, 연평균 10만 6000여 건의 차별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차별’ 문제와 관련된 실무 경험은 물론 연구 역량마저도 미진한 우리나라에서 차별 조사·구제 관련 업무를 초기에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 주재관을 파견하여 위원회의 차별조사·구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진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5)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활성화

2003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스칸디나비아 옴부즈만 및 유럽 인권재판소 등의 방문을 추진하고자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는 헌법 및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한이 강화되어 있는 기구이며, 스칸디나비아 옴부즈만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한 형태로서 비슷한 형태의 유럽, 남미지역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옴부즈만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유럽 인권재판소(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소재)는 유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 1959년 설립되었다. 특히, 그 판결내용이 정교하고 논리 정연하여 재판소의 재판상황 및 판결문 등을 파악, 연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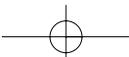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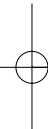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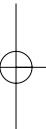
(6)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기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2002년에 발간한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 자료집」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최신자료를 수시로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대 국민 인권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인권기구 현황, 국제인권기구·단체들에 대한 제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인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반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부 록

1.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법령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5. 국제기구 권고사항
6.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8. 발간자료 목록
9. 진정서 양식
10.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서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법령

1. 법률 및 대통령령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법률제6481호)
-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2002. 2. 9 대통령령17517호)
- 다.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2002. 2. 4 대통령령17512호)

2. 규칙

- 가. 국가인권위원회과대표징수절차에관한규칙(2002.6.17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제10호)
- 나. 국가인권위원회등증표에관한규칙(2001.11.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호)
- 다.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2002.9.9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3호)
- 라.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2001.10.11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호)
 - 개정 제1차 2001.11.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4호
 - 제2차 2001.12.20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5호
 - 제3차 2002.3.14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8호
 - 제4차 2002.12.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4호
- 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2002.8.2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제12호)
- 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2002.6.17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호)
- 사.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2002.5.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9호)
- 아.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2002.1.10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6호)
- 자.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2002.3.8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7호)

부 록

차.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2002.9.9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3호)

3. 훈령

- 가. 국가인권위원회고문번호사규정(2002.2.20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2호)
- 나.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2002.9.2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11호)
- 다.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2002.6.25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9호)
- 라.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2002.3.28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4호)
- 마. 국가인권위원회위임·전결규정(2002.5.23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6호)
개정(2002.6.29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10호)
- 바. 국가인권위원회인사자문기구규정(2002.3.8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3호)
- 사. 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2002.5.21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5호)
- 아.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정(2002.6.21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8호)
- 자. 인권자료실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2002.9.27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12호)
- 차. 전문상담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2002.6.20 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7호)

4. 예규

- 가.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2002.5.2 국가인권위원회예규제1호)

5. 지침

- 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2002.4.1 사무총장지침제1호)

- 나.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련된운영지침(2002.4.18 사무총장지침제2호)

6. 폐지규정

- 가.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규정
 - 제정 2001.8.20 국무총리훈령제420호
 - 폐지 2001.11.25
- 나.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규칙
 - 제정 2001.11.8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2호
 - 폐지 2001.11.26
- 다. 국가인권위원회인사위원회규정
 - 제정 2002.1.31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호
 - 폐지 202.3.8
- 라. 인권침해및차별행위진정접수지침
 - 제정 2002.11.22 국가인권위원회내규제1호
 - 폐지 2002.4.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 5. 24 법률제648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보호소
 -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부 록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인권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록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

부 록

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부 록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

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부 록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 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부 록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부 록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조정위원중 2인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하며, 조정위원 3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조정) ①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 록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조정 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부 록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보 칙

제51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별 칙

-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

부 록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인 권 위 원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김창국	· 서울대 법과대학 4학년1학기 수료 ·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 수료	·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부장검사(전주, 광주지검) · 제82대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한국방송공사 이사 · 제2기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 참여연대 공동대표	
위원(상임) 박경서	· 서울대 사회학과 · 독일 괴팅겐대 석사 · 독일 괴팅겐대 사회학박사 · 인도 센나이한림원 명예 철학박사	·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교수 · 참여연대 고문 ·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 크리스찬아카데미 부원장 · 스위스 제네바 WCC 아시아 정책위 의장 · 성공회대 석좌교수 ·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위원(상임) 유 현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수료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광주·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위원(상임) 유시춘	· 고려대 국문학과	· 민가협 총무 ·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 민예총 이사 · 공정선거 민주개혁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실장	

부 록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 조미경	· 서울대 법대 · 한양대 법대 · 서울대대학원 법학석사 ·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 아주대 법학부 교수· 법학부 부장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 수원법조윤리협의회 위원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위원 김오섭	· 고려대 법학과 ·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 제6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민·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변호사	
위원 신동운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 대학원 형사법 석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편집위원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편집위원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대법원양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장 겸 교무담당부학장	
위원 정강자	·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교육담당 간사 · 민중교육연구소 연구원 · 석탑노동연구원 상담원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문위원 ·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 여성부 차별개선위원회 위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원 김덕현	· 한양대 법학과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변호사 · 예방접종 심의위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회 위원 · 국무총리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부 및 법제처 자체심사평가 위원회 위원	

부 록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 이진강	· 고려대 법학과 ·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 제5회 사법시험 합격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1과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 변호사 · 행정심판위원 · 제8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02. 11. 30 위원직 사임
위원 곽노현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석사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박사과정 수료	· 참여연대 발기인 · 집행,운영,지도위원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 집행위원장 ·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 교육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 방송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03. 2. 24 위원직 사임
위원 유국현	· 서울대 법학과 · 단국대 대학원 수료 · 서울대 대학원 수료 · 미국 조지워싱턴대 수료	·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 법무관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영월지청장 · 법무부 인권과장 · 강릉 지청장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3. 2. 24 위원직 사임

사무 총 장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최영애	·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위원장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 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성과 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국가인권위원회 발자취

1993년 6월 빈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후 3년여 간에 걸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1993년

6월 빈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 발표(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1998년

3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

9월 17일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부 록

- 결성
- 9월 25일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 10월 14일 인권법 관련 제1차 당정협의 (법무부 ‘법인안’ 과 국민회의 ‘국가 기구안’ 간 입장 차이로 결렬)
- 10월 1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자문관 브라이언 버디킨(Brian Burdekin)과 간담회 개최
- 10월 23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제1차 공개서한 송부(‘법무부안’ 에 대해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결여 지적)
- 10월 26일 공추위, ‘공추위법인’ 최종 확정
- 11월 27일 법무부-국민회의 제2차 당정협의
법무부 1차 수정안 발표(이사회 제도 폐지, 임시구제 조치권 부여 등 일부분 개선, 특수법인 형태 고수)
- 12월 4일 국제엠네스티,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2차 공개서한 송부(법무부수정안 비판)
- 12월 5일 공추위,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및 대국민 캠페인 전개

1999년

- 2월 9일 인권법 관련 법무부-국민회의 제3차 당정협의 개최
법무부 2차 수정안 제시했으나 당정간 입장차이로 결렬
공추위, 국제엠네스티, 법무부 2차 수정안 비판
- 3월 22일 법무부-국민회의 제4차 당정협의, 법무부 3차 수정안 제시
3차 수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기습 타결
- 3월 30일 공추위,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요구 및 국무회의 상정저지 집회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
- 3월 31일 민주화운동 원로 30여 명, 인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4월 7일 인권활동가 30여 명, 정부 인권법안 철회와 인권법 재논의 촉구,

- 7일간 단식농성 돌입
- 4월 9일 국제엠네스티, 국제고문방지기구(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로버트케네디추모인권센터(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인권법 제정과정의 투명성과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 4월 12일 유엔인권위 참가 민간단체 대표단, 제네바에서 브라이언 버드킨 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면담
- 4월 16일 공추위, ‘인권법안 국회 상정저지’ 결의대회 개최
- 4월 19일 공추위 대표자회의, 공추위 확대·개편 결의
- 4월 22일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여야의원 대부분이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법사위 제1소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
공추위, 인권법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개최
- 4월 29일 공추위 확대·개편대회 개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로(공대위)’ 개편(70여 개 민간단체 참여)
- 6월 16일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최종 확정
- 12월 20일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인권단체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수 없다” 며 인권법 제정 연기 선언

2000년

- 1월 3일 대통령 신년사(‘인권법’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힘)
- 7월 19일 공대위대표자회의 “법무부의 인권위원회법안 재상정을 반대한다” 성명 발표
- 8월 21일 법무부 공고 제2000-31호, 인권법 입법예고(인권위원회를 비법인 민간기구로 설치하는 내용)
- 9월 5/6일 공대위,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

부 록

- 원회법안 토론회” 개최
- 10월 28일 공대위, 정대철 위원장(새천년민주당 인권향상을위한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 개최
- 11월 6일 공대위, 리영희·이돈명·박용길·최영도·한상범 등 민주화 원로들과 간담회 개최
- 11월 27일 공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인권법을 비롯한 3대 개혁입법 재개정 촉구 농성
- 12월 3일 공대위, 민주당안에 대한 전면 거부입장 천명
- 12월 13일 여야 국회의원 95인이 서명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출(민주당 이미경·김원길 의원 등 61명, 한나라당 이부영·김원웅 의원 등 31명,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3명)
- 12월 14일 민주화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가보안법을 연내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성명 발표
- 12월 18일 인권 2대 현안 연내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 12월 28일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제2차 단식농성(명동성당)
- 12월 31일 공대위,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개혁을 위한 송구영신 문화제” 및 “개혁 입법들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주최

2001년

- 1월 8일 공대위, 민주당 7인 소위원회와 연석회의
- 1월 19일 민주당 7인 소위원회 최종회의,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는 ‘인권법 시안’ 확정
- 2월 1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잠정 결정
- 2월 7일 공대위 “3대(인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제정) 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선포식” 개최

부 록

- 2월 9일 민주당, 당정합의 “국가인권위법안” 확정(민주당 소위와 법무부 차관 공동기자브리핑)
- 2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 “인권위원회법안” 확정
- 2월 13일 민주당 당무회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정대철의원 대표 발의) 추진
공대위, 민주당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인권활동가 25명 민주당사 농성
- 2월 14일 민주당, 인권위법안 국회 제출
- 2월 20일 공대위, 탑골공원에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철회추구와 개혁실종 규탄대회” 개최
- 2월 21일 ‘개혁쟁취를 위한 사회각계 인사 10,000인 시국선언’
- 2월 23일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제출
국회 법사위,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상정
- 2월 26일 공대위, 민주당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민주당사 앞 1인 피켓 시위
- 3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4월 24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개최
- 4월 26일 공대위, “국가인권위법 4월회기내 처리합의에 관한 3당 총무 합의와 법사위 심의에 대한 성명” 발표
- 4월 30일 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 심의 후 민주당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출하여 표결처리 발표
공대위, “개혁실종, 졸속심의 기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공대위 성명” 발표
국회법사법안심사소위, 민주당수정안 표결(찬성4, 반대3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민주당 수정안 표결(찬성8 반대7 통과)
국회 본회의(제221회 임시국회), 법사위원회안(민주당 수정안) 찬성 137, 반대 133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통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의결

부 록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법률 제6481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과정

2001년

- 8월 1일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내정 발표
-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
- 8월 28일 前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대표 등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시작
- 9월 24일 국가인권기구 현황파악 및 아·태지역 교류협력을 위하여 APF 연례회의 및 인도·스리랑카 인권기구 방문(정영선, 임순영, 이정은)
- 9월 27일 법제 운영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인종평등위원회 방문(조효제)
- 10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위원장 : 김창국
 상임위원 : 박경서, 유현, 유시춘
 비상임위원 : 이진강, 정강자, 곽노현, 김덕현, 김오섭, 신동운, 조미경
- 10월 11일 제1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제청안에 대한 심의 등 5건 처리
- 10월 25일 제2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규칙(안)」 논의 등 7건 처리
- 11월 8일 제3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규칙(안)」 등 6건 처리
- 11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수정안)」 의결 등 2건 처리
- 11월 22일 제5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 수정의결 등 5건 처리

- 10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개최
-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 해단식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발대식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

2001년

- 11월 26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상담 및 접수 개시
(첫날 진정접수 122건)
- 11월 28일 제1차 상임위원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대책(안) 논의
-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국회 해당 상임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
제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울산구치소내 피의자 의문사 사건 조사개시 등 5건 처리
- 12월 3일 구금시설 첫 면전진정 실시(청송감호 보호소, 대구교도소) 및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조사
- 12월 4일 제1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사건과 양심적 집총거부자 진정 사건 조사 결정 등 2건 처리
- 12월 7일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청문회 개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및 특별인권수업(서울 교동초등학교)
- 12월 11일 제1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정보공개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부 록

- 12월 12일 제2차 상임위원회
「테러방지법」 청문회 결과보고
- 12월 13일 제6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규칙안」 등 2건 논의
제2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장조사 결과 보고
- 12월 15일 제2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계획안 논의
- 12월 17일 제2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행위 조사결정 등 2건
- 12월 20일 제7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 등 2건 의결
- 12월 21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국회법사위 제출
- 12월 24일 제3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전과자 차별 조사결정 등 2건 처리
- 12월 27일 제3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울산구치소내 의문사 진정사건, 검찰총장에 수사 개시 의뢰

2002년 1월

- 1월 7일 제3차 상임위원회
목포교도소 긴급구제 요구사건 논의
- 1월 10일 제8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안)」 의결
제4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대구교도소 의료조치요구 사건 조사개시 등 2건 처리
- 1월 14일 제4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 1월 21일 제천시 장애인 차별사건 전원위원회 상정키로 의결
제3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 1월 24일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 논의
제9차 전원위원회
- 1월 28일 면정진정시 구금시설의 반응 및 조치검토사항 논의
제10차 전원위원회
- 1월 30일 제천시 장애인 승진차별사건 진술청취
국가인권위원회직제령 국무회의 통과 ; 5국 18과 1소속기관(인권자료실), 정원 215명(자체정원 180명, 파견공무원 20명, 전문위원 15명) 확정, 2002년도 예산 192억원 확정
- 1월 31일 제5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족보삭제 등 진정사건 각하 등 23건 처리

2002년 2월

- 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월 7일 제4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 의견제출 결과보고 등 3건 처리
- 2월 14일 제11차 전원위원회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제규칙」 의결
- 2월 18일 제4차 상임위원회
청송 제2교도소 장기징벌자 긴급구제 조치안 등 4건 처리
- 2월 19일 최영애 사무총장 임명
- 2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입법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 반대 의견 제출(국회의장,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법사위원장)
- 2월 25일 제5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귀화 요청 진정사건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이송 등 15건 처리

부 록

-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특채 원서접수 마감(2002. 2. 15~26),
71명 모집에 총 2,469명 지원
- 2월 27일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
- 2월 28일 제12차 전원위원회
조정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 5건 처리

2002년 3월

- 3월 4일 제5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등 2건 처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엔 제10차 아·태지역 워크숍 참가(김
선민)
- 3월 7일 정년연장 불승인 등 진정사건 31건 처리
- 3월 11일 제5차 상임위원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건 등 2건 논의
- 3월 14일 제13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 등 2건 수정의결
- 3월 21일 제6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지방 방법원 차별행위 재검토 등 11건 처리
제7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B형 간염보균자 취업금지 등 진정사건 30건 처리
- 3월 28일 제14차 전원위원회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 논의
제8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공갈관련 진정사건 등 12건 처리
- 3월 29일 제6차 상임위원회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논의

2002년 4월

-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입주 및 사무처 발족
- 4월 4일 제3차 공무원 전입(지원자 115명, 채용인원 27명)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국회 방문
- 4월 8일 제7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제대학교 장애인 차별사건 등 2건 처리
- 4월 9일 제7차 상임위원회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
- 4월 11일 제15차 전원위원회
제천시의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권고 외
3건 처리
- 4월 15일 제6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관련사항 검토 등 4건 처리
- 4월 22일 제8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교포에 대한 차별 재검토 등 6건 처리
- 4월 23일 제8차 상임위원회
진주교도소 AIDS환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건의 및 외부병원 이송
치료권고
- 4월 25일 제16차 전원위원회
불기소불공정처분에 대한 진정사건 등 4건 처리
제9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직권남용 등 진정사건 30건 처리
제9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제대학교 장애인 차별사건 합의추진
- 4월 30일 정보화 기반시스템 및 전산실 구축

부 록

2002년 5월

- 5월 2일 제7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5건 처리 ☞ “해외여행 규정” 삭제 권고(통일부)
- 5월 7일 제9차 상임위원회
AIDS 환자 긴급구제결정 불이행에 따른 위원회 입장 논의
제10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제대 장애인 차별건 전원위원회 상정 등 58건 처리
- 5월 9일 제17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안)」 등 6건 논의
제10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산 만덕복음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등 60건 처리
- 5월 10일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 병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 및 환자들의 거주이전 및 자치권 등이 확보되도록 권고(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외국인노동자)
Asian Legal Resource Center(ALRC)의 쉐리양 중국 대법원 부장판사등 8명의 방문단이 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을 파악코자 방문
- 5월 11일 홍콩 인권법센터 리알 순가소장 등 5명의 아시아 NGO 홍보단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입을 독려하고자 방문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센터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자진신고센터)
- 5월 13일 제8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계획 등 8건 처리
- 5월 15일 정책간담회(중국동포)

- 5월 20일 제11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출석조사 등 60건 처리
- 5월 21일 호주대사관의 Mary-Jane Liddicoat 일등서기관 등 2명이 인권위의 기능 및 활동상황을 파악하고자 방문
- 5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정
제18차 전원위원회
대구가톨릭대학의 신입생 합격처리에 있어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 권고(진정인 합격처리,9.17) 등 10건 처리
제1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미신고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대상 여부 논의 등 57건 처리
- 5월 24일 정책간담회(아동·청소년)
일본 인권포럼 21(NGO)의 아에카와 미노루 포럼 총괄연구원등 5명이 일본 인권옹호법과 한국 인권위법과 비교 분석하고자 방문
- 5월 27일 제9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국무총리실,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 대회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보호, 노동기본권 행사보장, 불법체류자 단속의 자제 권고 등 3건 처리
제12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6.13선거 관련 장애인 투표장 접근 편의성 여부 직권조사 등 2건 처리
- 5월 29일 월드컵대회 기간 중 「인권현장 확인반」활동 전개
제10차 상임위원회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등 4건 논의
- 5월 30일 제12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불법 감시 등 진정사건 37건 처리
- 5월 31일 정책간담회(노인)

부 록

2002년 6월

- 6월 2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국가인권기구 및 APF 방문(사무총장, 김형완, 이호영, 이승미)
- 6월 3일 제13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학위에 의한 차별사건 기각 결정 등 51건 처리
일본 변호사연합회 후지와라 세이고 변호사 등 12명이 일본인권 옹호법제정관련 한국 위원회법의 제정경과와 주요 업무파악을 위해 방문
- 6월 4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권고
- 6월 7일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 등 인권 분야 총 29개 과제 발주
- 6월 11일 제11차 상임위원회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등 2건 처리
제10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통신보호비밀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권고(정보통신부) 등 7건 처리 검사 승인 없는 장시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조항 삭제
제4차 공무원 특채(지원자 106명, 채용인원 13명)
- 6월 14일 정책간담회(재소자)
- 6월 15일 공소시효배제입법 토론회 개최
- 6월 17일 제19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및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실에관한규칙」 제정 등 11건 처리
제11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에 대한 논의 등 3건 처리
제13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당한 면허취소 등 진정사건 47건 처리
제14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국립묘지 안장차별 행위 등 41건 처리
- 6월 21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인권국장 등 2명이 한·뉴질랜드 국제인권 분야 연대 강화를 모색코자 방문
- 6월 24일 제12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성전환자호적정정법률(안)」검토 등 3건 처리
제15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대구대학교 복학차별에 대한 진정사건 논의 등 36건 처리
- 6월 27일 제20차 전원위원회
청송교도소 거식증환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권고 등 5건 처리
제14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청송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요구 등 53건 처리
- 6월 28일 정책간담회(장애인)

2002년 7월

- 7월 2일 제12차 상임위원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진행상황 청취
- 7월 8일 제13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실태 연구용역사업 진행상황 보고
제16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부당한 재판에 대한 진정건 기각 처분 등 33건 처리
- 7월 11일 제21차 전원위원회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있어서 원격대학 수료자 차별에 대한 구제 권고(보건복지부) 등 4건 처리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0.19)
제15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당수사 및 판결 등 진정사건 58건 처리

부 록

- 7월 14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워크숍 참가(유현 위원, 유시춘 위원, 김은미, 김수산)
- 7월 18일 제16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당수사 등 진정사건 52건 처리
- 7월 20일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안)」관련 의견 제출(대통령 비서실)
강릉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복지시설 위탁 해지사유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
- 7월 22일 제14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신과 치료병력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손해배상 등 권고 등 10건 처리
제17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비전향 장기수 복송차별,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 등 29건 처리
- 7월 23일 월드컵 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 평상시는 물론 특히 국제행사시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경찰청)
제13차 상임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사업 추진계획 등 2건 논의
- 7월 25일 제22차 전원위원회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에 대한 권고(기술표준원) 등 6건 처리 ☞ ‘살색’을 ‘연주황’으로 개칭(11.27)
제17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경찰청 등 사생활 비밀침해사건 등 65건 처리
- 7월 30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따른 정책권고(행정자치부, 경찰청, 감사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정

2002년 8월

- 8월 6일 제15차 상임위원회
인권논문 공모사업 논의
- 8월 7일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 나카오 아키라 검사 등 3명이 일본의 인
권옹호법제정관련 우리 위원회법 및 활동상황 파악코자 방문
- 8월 9일 유엔인권위원회 이완희 UNDP 몽골사무소 국제인권자문위원등
2명이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 파악하고자 방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선인 동포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집행정
지 권고
제18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나이를 이유로 한 강릉대학교 교수모집 차별 시정권고 의결 등
38건 처리
- 8월 12일 경찰, 검찰, 교도관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실시(총 30
회, 총인원 4,420명)
제15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정부의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등 6건 처리
☞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국무조정실)
- 8월 16일 주한미2사단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부과
- 8월 19일 제18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진주교도소 진정방해사건 등 4건 처리
- 8월 20일 제19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자살은폐 조작 등 진정사건 64건 처리
- 8월 21일 제20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당한 징벌 등 진정사건 110건 처리
- 8월 22일 제23차 전원위원회
교도소 AIDS환자 수용자 등의 면전진정방해에 대한 소장 등 관

부 록

- 런자 징계권고 등 9건 처리
 - 제2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 구로경찰서 불법 알몸수색 진정사건 권고결정 등 21건 처리
 - 제19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 광고 게재 차별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6건 처리
- 8월 23일 일본고베대학교(형사법학회) 미츠이 마코토 교수(일본형사법학회
장) 한국인권위원회법 및 위원회활동을 파악하고자 방문
- 8월 26일 제24차 전원위원회
 - 전향 및 장기수 복송차별에 대한 진정 등 3건 처리
 - 제16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표명 외 3건 처리
- 8월 29일 제22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 의료관련 등 진정사건 17건 처리
-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02년 9월

- 9월 2일 제16차 상임위원회
 - 정보공개 청구건 의결
- 9월 5일 제23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 인격권 침해 등 진정사건 15건 처리
- 9월 9일 제25차 전원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제정 등 7건 처리
 - 제17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등 4건 처리
 - ☞ 체벌금지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및동법시행령」 개정 권고(교육인적자원부)
 - 제20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 장애 판정에 있어 남녀차별 개정권고 전원위원회 회부 등 42건 처리
- 9월 10일 위원장 초청간담회(인권일반 단체)
- 9월 12일 제5차 공무원 특채(지원자 134명, 채용인원 9명)
제17차 상임위원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 러시아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명령 집행정지 의결
- 9월 16일 제21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신규교원 임용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등 42건 처리
- 9월 17일 위원장초청간담회(법률 단체)
제24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청송 제1보호감호소 등 4개 시설 방문조사 결정 등 4건 처리
- 9월 22일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캐나다 국가인권기구 방문
(곽노현 위원, 교육협력국장, 이석준)
- 9월 23일 제26차 전원위원회
알몸수색 인권침해 진정건 등 7건 처리
제18차 상임위원회
연간보고서 등의 발간 기본계획(안) 확정
제18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등 5건 처리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포함 권고(청소년보호위원회)
- 9월 26일 제25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수원 구치소 환자 방치사건 등 4건 처리
캐나다 치할리스 원주민 추장등 8명이 소수민족관련 인권상황을 파악코자 방문
- 9월 27일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제12호) 제정

부 록

- 9월 30일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건 의결
- 9월~10월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 및 2회에 걸친 간담회 실시

2002년 10월

- 10월 4일 제26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신체감정서 허위발급 등 진정사건 105건 처리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나카야마 타로 회장등 11명이 위원회 활동과 한국의 인권상황 파악코자 방문
- 10월 7일 제22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시설 및 처우 등에 관한 인권침해사건 등 86건 처리
- 10월 8일 인권자료운영자문단 1차 회의 개최
- 10월 10일 제27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시흥경찰서 가혹행위 논의 등 14건 처리
- 10월 14일 제27차 전원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형차별에 대한 구제권고 등 5건 처리
☞ 소수 종교인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 권고(법무부)
제20차 상임위원회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기획(안) 논의
제28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건 전원위원회 상정
- 10월 17일 ‘사회적 신분’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29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육군 제7사단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결정 등 109건 처리
- 10월 18일 청와대 앞 통행권 침해사건 합의권고
- 10월 19일 캐나다 국제교정협회(International Corrections & Prisons Association)가 네덜란드 노르트바이케르후트에서 개최한 제4차

- 국제교정협회연례회의에 참가(유현 위원, 최준석)
- 10월 20일 APF 주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인권교육 참가(정영선, 권혁일)
- 10월 21일 제23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신규교원 임용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참고인 출석조사 등 66건 처리
인권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도입
- 10월 22일 위원장 초청간담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장애인 운전면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0월 23일 경찰청장에 정밀신체검사 요건강화 등 권고, 알몸신체검사 실시한 구로경찰서 관련자,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10월 25일 인권자료운영자문단 2차 회의 개최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Ms. Fredrika Ornbrant 부대사 위원회 현황 파악코자 방문
- 10월 27일 일본변호사협회주관 국제심포지엄 참가(남규선)
- 10월 28일 제21차 상임위원회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위한 수행팀 구성 및 기획안 의결 등 3건 처리
제19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 권고(국회) 등 5건 처리
제28차 전원위원회
발산역 리프트 사고건 등 4건 처리
- 10월 29일 일본 인권포럼21 주최 국제인권강연 참가(정강자위원)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Mr. Tserendorj위원장 등 5명이 위원회 현황 및 한국 인권상황을 파악코자 방문
- 10월 30일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발산역 리프트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 10월 31일 청송 제2교도소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0월 위원회 로고 제작 완료

부 록

10월 인권영화 사업 계약(박광수 외 5명)

2002년 11월

- 11월 1일 제30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관련 직권조사 결정
- 11월 4일 제20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보건복지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 권고 및 비준 촉구서 국회 송부
제3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육군 제32사단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결정 등 89건 처리
제24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에 합의종결 등 57건 처리
-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발간
- 11월 8일 APF주관 국제조사관교육 참가(진수명, 김정학, 서수정)
- 11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 APF에 정식회원으로 가입(위원장, 김덕현 위원, 사무총장, 최영란)
- 11월 10일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추진(2002.11.11~2003.5.31)
- 11월 12일 제22차 상임위원회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논의
민주주의공동체회의 영국대표단 방문
Adurey Glover UN인권위원회 영국대표단 단장 등 4명
외국인노동자문제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 11월 15일 제32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인천 출입국관리소 중국동포 강제퇴거 해제권고 등 49건 처리
- 11월 18일 서울시장·도시철도공사사장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건 손해

- 배상 권고
- 11월 18일 제29차 전원위원회
 ‘나이를 이유로 한 교수모집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대학교
 원 채용 응시연령 제한조항 삭제 및 응시연령 제한 철폐권고(교육
 인적자원부, 14개 국공립대학교) 등 4건 처리
 제25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사회적 신분(기간제 교사)에 의한 고용차별 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59건 처리
- 11월 19일 제6차 공무원 특채(지원자 134명, 채용인원 8명)
- 11월 20일 위원장 초청간담회(장애인 단체)
- 11월 25일 제21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권고(노동부) 등 2건 처리
 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중간발표
- 11월 27일 제33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인천 부평구청, 인사권 남용 사건 합의권고 등 98건 처리
- 11월 28일 제23차 상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주년 평가 워크숍 등 3건 논의
 제26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진정사건 서울지검 이송 결정 등 32건 처리
- 11월 인권교육 강사용 모범 강의안 시리즈Ⅱ「교정과 인권」개발 및 배포
- 11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강사커뮤니티 운영 개시
- 11월~12월 직원 인권교육실시(국제인권협약과정)
- 11월 ‘버림받은 아동과 청소년’, ‘학대받는 노인’을 주제로 총 8개 시
 설 방문조사 실시
- 11.20 울산양로원 방문(정강자 위원 외 3인)
- 11.22 서울시립소년의집(보육원) 방문(유시춘 위원 외 4인)

부 록

- 11.26 풍익보육원 방문(유시춘 위원 외 2인)
- 11.28 화성성혜원(부랑인시설) 방문(정강자 위원 외 4인)
- 11.29 청운양로원 방문(정강자 위원 외 3인)
- 11.29 YMCA청소년쉼터 방문(유시춘 위원 외 2인)
- 11.29 강남청소년쉼터 방문(김선민 외 1인)

2002년 12월

- 12월 2일 베트남국립인권연구소(VRCHR) 소장
Adurey Glover UN인권위원회 영국대표단 단장 등 4명
외국인노동자문제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 12월 6일 제22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주요 인권문제 WORKING GROUP 운영계획 등 4건 처리
제34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부산 만덕복음병원에 대한 고발조치 등 63건 처리
- 12월 7일 UN협의자격NGO회의(CONGO)가 2002년 1월 9일부터 13일까
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시민사회포럼에 참가(정강자 위
원, 유인덕)
- 12월 8일 일본 인권의 날 기념행사 참가하여 위원회법 설명 및 일본 인권옹
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박경서 위원)
- 12월 9일 제30차 전원위원회
교도소 징벌권 남용 등 11건 처리
- 12월 10일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설 보호시설 방문조사(위원회 2명, 전
문가 1명, NGO 5명)
인권논문공모사업 당선작(가작 3편) 시상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12월 13일 제7차 공무원 전입(지원자 3명, 채용인원 1명)

- 12월 16일 제27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서신검열 제도개선에 관한 진정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57건 처리
- 12월 18일 제35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경찰서 유치장 시설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결정 등 49건 처리
- 12월 20일 2001년 12월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한 울산구치소 사망사건처리결과
통보, 담당교도관 2명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 구치소내 가혹행위 내사종결
- 12월 23일 제31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 등 9건 처리
제28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특별법 제정으로 무공수훈자 연금지급 건의 진정사건 각하 후 국가보훈처 이송 등 35건 처리
제8차 공무원 전입(지원자 1명, 채용인원 0명)
- 12월 30일 주요기업의 채용상 차별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제24차 상임위원회
형사소송법 및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 2건 의결
제29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주요기업 채용상 차별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 등 32건 처리
- 12월 31일 진정접수 건수 총 3,593건(면전진정 556건)
- 12월 「인권길라잡이-교정편」, 「인권길라잡이-경찰편」 발간
- 12월 교도관 인권교육용 영상교재 제작
- 12월 인권교육 강사를 위한 표준 교안 시리즈 개발(경찰, 교정, 검찰 3종)
- 12월 인권교육 강사용 모범 강의안 시리즈Ⅲ 「검찰과 인권」 개발 및 배포
- 12월 「인권길라잡이-검찰편」개발완료

부 록

- 12월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보고서 발간(초·중·고등학교 3편)
- 12월 인권교육 강사용 모범 강의안 시리즈Ⅳ 「군대와 인권」 개발 완료
- 12월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지침서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길잡이」 발간
- 12월 「우리 교과서 인권이야기」 제작
- 12월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 받는 노인을 주제로 한 인권동화책 「아추 영감」, 「엄마, 엄마」 2종 및 메뉴얼 「인권동화 잘 읽기」 2종 제작
- 12월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인권동화책을 활용한 인권교육 워크숍」
- 12월 인권만화 제작 완료(박재동 외 9명)
-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
- 12월 인권광고(열쇠편 제작 및 방송)

국제기구 권고사항

□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영문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66. 12. 16 / 1976. 1. 3 / 1990. 7. 10
당사국 수	146(2002. 12. 9 기준)
조약감시기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정부보고서	1994. 1. 5 / 1999. 10. 12
반박보고서	1995 / 2001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 9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 노조결성, 교사단결권 · 파업의 과도한 제한 · 경찰의 노조활동공격 · 여성차별(가정폭력, 고용차별 등) · 높은 산업재해 · 영세업체 최저임금 배제 · 외국인근로자 차별 · 의무교육 기회 부족 · 고등교육 기회 부족 · 저소득층 교육기회 부족 · 열악한 주거환경 · 강제철거 · 취약계층 지원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보장 · 규약에 대한 교육 · 규약의 사법절차 적용 · 국내법과 규약의 일치노력 · 단결권, 파업권 보장 · 여성차별철폐, 구체적 프로그램 작성 · 산업안전 강화 · 최저임금제 전면 실시 · 외국인근로자 동등대우 · 주거권 보장 · 의무교육,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 인권교육의 실시 · 극빈, 무주택, 장애인 복지제도 확충

부 록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p>제 2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2 0 0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해고와 감원, 고용안정성의 퇴보, 수입불균형, 결혼가정의 증가, 많은 사람들을 주변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급속한 경제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 · 실업, 불안전 고용, 주택보급, 빈곤, 이주에 대한 통계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정부와 다른 기구가 제공하는 통계와 큰 차이가 있음. ·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특별법등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음 ·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남아선호, 여아낙태에 의한 여성의 재생산권 위협, 호주제도, 가정폭력, 낮은 고등교육율, 여성 차별, 직장내 성희롱, 남녀의 평균임금차이) · 비정규직 차별 · 높은 산업재해 · 교사들의 단체교섭 및 파업금지 · 파업에 대한 불법화 ·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 도시의 인구집중 및 시골의 공동화(정부정책의 도시집중화) · 기초생활보장법, 연금법 · 장애인 의무고용 쿼터제 불이행 ·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거주 제공 미비 · 높은 사설의료기관 비율로 인한 주변화 된 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 질 낮은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 부족 · 의무교육 기회 부족 · 과도하게 엄격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 인권교육이 인권관련 종사자들의 필수교육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보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관련기구와 관계부처는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검토 ·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규약에 모든 국내법보다 우선적인 지위 보장 ·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 교사,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파업권 보장 · 아동성매매와 아동 노동금지 및 피해자들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확대 · 정부내 주택문제 지원을 위한 진정을 다루는 담당관 지정 ·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거주지 제공 · 공교육제도 강화계획수립(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계획, 사교육에 비한 공교육 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연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재평가) · 인권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실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마련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영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66. 12. 16 / 1976. 3. 23(단 제41조는 1979. 3. 28에 발효)/1990. 7. 10
당사국 수	148(2002. 12. 9 기준)
조약감시기구	인권이사회 혹은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유보조항	제14조 5항 및 7항, 제22조, 제23조 4항, 제41조
유보철회	제23조 4항을 1991. 3. 15에 유보철회 / 제14조 7항을 1993. 1. 21에 유보철회
정부보고서	1991 / 1998. 8. 20
반박보고서	1992 / 1999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 9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과 규약불일치 · 평등권 불철저 · 국가보안법 · 안보상황 과대평가 · 경찰력 과도사용 · 안기부 수사권 행사 · 북한방문 금지 · 재소자전향제도 · 광범위한 국가기밀 · 사형규정범죄 과다 · 기소전 구금기간 과다 · 정치적 투옥 · 여성차별 · 죄형법정주의 · 집회와 시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과 헌법 일치노력 · 국가보안법 점진적 폐지 · 사형규정 범죄 축소 · 죄형법정주의 준수 ·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 규약에 대한 유보 철회 ·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 홍보

부 록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p>제 2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 9 9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헌법 제6조를, 규약 가입 후 시행된 법은 규약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 ·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지속적 적용 · 국가보안법상 불합리하게 광범위한 반국가조직, 고무 행위의 범위 ·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가부장제 사회(태아성감별, 불균형적인 남녀 성비, 높은 모성사망률) · 가정폭력과 부적절한 법과 관행 · 강간피해여성에 저항의 증거 요구, 고소를 피하기 위해 강간 피해여성과 혼인, 부부간간을 범죄시 하지 않음. · 여성의 고용차별, 소기업 고용 여성에 대한 보호미흡, 남녀간의 임금격차 · 피의자 구속에 대한 제한적 실질심사 · 지나치게 긴 재판 전 구금 기간 ·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결수에 대한 준법서약제도 · 판사 재임용제도에 의한 사법적 독립성 침해 · 광범위한 도청과 정보의 남용 · 집회장소에 대한 지나친 제한 ·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의 자유제한 · 유보조항(규약 제14조 5항: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제22조: 노동조합 결성, 결사의 자유) · 규약위반에 대한 구제 미흡 ·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 국가보안법 제7조의 긴급한 개정 · 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를 약화시키는 현존 법규정을 없애고, 가정폭력방지법을 강화 · 남녀차별금및구제에관한법의 효과적 이행과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기회와 조건보장 · 체포, 구금에 대한 본 규약 제9조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 · 고문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 · 형사절차 개혁 · 준법서약제 폐지 · 법관임용제도에 대한 완전 정보공개 ·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입법 · 집회장소 제한 폐지 · 조약 유보조항 철회 · 개인통보(진정)에 대해 국내법이 아니라 규약이 정한대로 보상 · 공무원, 의료인 등에게 인권교육 실시

□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
방지에관한협약

영문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CAT)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84. 12. 10 / 1987. 6. 26 / 1995. 2. 8
당사국 수	130(2002. 8. 21 기준)
조약감시기구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정부보고서	1996. 5
반박보고서	1996. 11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 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법상 고문범죄에 대한 정의부재 · 자백유도를 위한 고문 · 피의자에 대한 장기간 심문 · 고문범죄 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미흡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 고문피해자 보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범죄규정 도입 · 인권조약과 인권보호 기준에 따른 국내 법 정비 ·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과 의료 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 구금, 수감장소를 감찰하는 독립적 정부 기구 설치 · 고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위원회에 조사결과 보고 · 구속기관 단축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 · 고문방지조약 유보조항(다른 당사국의 불이행에 대해 통보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 당사국의 개인이 위원회에 피해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조항) 철회

부 록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영문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2. 18 / 1981. 9. 3 / 1985. 1. 26
당사국 수	170(2002. 8. 21 기준)
조약감시기구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보조항	제9조, 제16조 1항 중 (c),(d),(f),(g) 유보 비준
유보철회	16조 제1항 중 (c),(d),(f)를 1991. 3. 15에 유보철회 / 제9조를 1999. 8. 24에 유보철회
정부보고서	1986 / 1989 / 1995. 9.27 / 1998
반박보고서	1998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3 · 4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 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조항(2,4,9,16조) ·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의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 ·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에 대해 완전히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의 만연 · 정책결정, 사법분야에 여성참여 미흡 · 직장내 성희롱, 사적부문(private sector)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미흡, · 직종분리, 남녀임금격차, 고급여성 인력 고용기회 미흡,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부족 · 우선해고와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의 증가 · 농촌여성의 지위하락 · 여성특별위원회의 지위와 예산 · 남녀차별적인 최하 훈인연령제한 · 높은 낙태율 · 불평등한 상속법 · HIV/AIDS여성정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에 일치하도록 헌법과 기타 관련법에서 차별정의 · 2000년 이전에 유보조항 철회 · 성별분리통계자료에 의한 법과 정책이행에 대한 상세한 보고 · 법률지원에 대한 홍보 및 법에 대한 여성의 이해를 돕기위한 대책수립 · 차별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법률가, 의료인, 법집행관 등에 대한 성인지적 훈련등 종합대책 마련 ·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설치 · 여성의 정치참여 및 교육지원, 여성지도자에 대한 인식향상, 정당의 여성쿼터제(30%) 도입, 사적부문에도 여성쿼터제 도입 · 파트타임 여성노동자 증가에 대한 통계 제공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행 및 여성의 무부수 노동 인식 · 공사영역 여성 동일보호 · 유급출산휴가 연장 · ILO조약 110, 111호 비준 · 성별 제한적인 채용 및 광고 제거 ·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신고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 농촌여성의 지위와 복지보호 · 장애여성의 사회보장

□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영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89. 11. 20 / 1990. 9. 2 / 1991. 12. 20
당사국 수	191(2002. 8. 21 기준)
조약감시기구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보조항	제9조 3항, 제21조 (a), 제40조 2항 (b),(v) 유보 비준
정부보고서	1994 / 2000
반박보고서	1996 / 2002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 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유보조항(9조3항: 아동의 부모 면접권보장, 21조 a항: 입양 절차 제한, 40조 2항 5호: 형법위반 아동에 대한 심사) · 조약이행, 감시체제미흡 · 아동관련 정책 평가를 위한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책 부족 ·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관, 심리학자, 보건인 등 아동관련 전문 가들에 대한 조약내용 교육 부족 ·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이행 미흡 · 여아, 장애아, 혼외아동에 대한 배려부족 · 가족에 대한 지원부족 · 국적권, 사상, 양심, 표현, 결사, 집회자유 미흡 · 입양아동의 이익에 대한 배려부족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아동유기와 아동가장 · 체벌의 만연 · 경쟁적 풍토의 교육 · 아동고용문제 · 소년사법제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유보철회 · 조약교육, 홍보 강화 ·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자보호, 남녀 차별적인 최하 혼인연령인 제한 폐지 · 아동관련전문가 교육 실시 · 국내법과 조약의 일치(비차별, 아동의 최대이익, 아동의 견해존중) · 아동옴부즈만 혹은 이와 동등한 독립적 인 진정, 감시 기구 설치 및 민간단체 와 협력 · 국적법개정 · 아동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법과 분리지표체계 마련 · 체벌금지 · 최소 고용연령 조정 · 입양제도 개선 · 아동권리에 국가자원 배분 강화 ·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 강화 · 양심, 표현, 결사자유보장 · 가족지원, 아동가장 지원 확대 ·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감시체제 구축 · 교육정책 재검토 · 소년사법제도 개선 · 위원회 회의록과 권고의 홍보

부 록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영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채택일/발효일/ 대한민국 적용일	1966. 3. 7 / 1969. 1. 4 /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에 적용)
당사국 수	162(2002. 8. 21 기준)
조약감시기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정부보고서	1980 / 1982 / 1984 / 1986 / 1988 / 1990 / 1992 / 1996. 5. 30 / 1998(9·10차 합본)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8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 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금지규정 미흡 · 인종차별처벌규정 부재 · 외국인거주자 차별 · 혼혈아동 차별 · 의견의 자유보장 미흡 · 외국인근로자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금지규정 도입 · 인종차별처벌조항 도입 · 외국인거주자 차별 철폐 · 인종·외국인 관련 정보제공 · 외국인근로자 보호
제 9 · 10 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 9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의 부재 ·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의 부재 · 외국인 노동자(특히 불법노동자)와 거주자의 불안정한 지위 · 혼혈아동 및 망명 희망자와 혼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 ·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대책 마련 · 외국인거주자 차별 철폐 · 인종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확산하고 교육, 훈련 위한 자원제공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인권관련 유엔회의	
총회 (General Assemb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유엔의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토의할 수 있음 · 특정지역의 인권침해 사태가 총회에서의 주요 토의 의제가 되며, 그 결과 일정한 권고가 채택되기도 함 · 국제인권규범을 정립하는 장으로의 역할이 업적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의 6대 주요기관 중 인권 문제를 업무상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 ·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음(유엔헌장 제62조 제2항) · 협약안 작성 총회제출 및 국제회의의 소집 권한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1974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설립 (결의 5) · 회기 : 위원국들은 1년에 3~4월 6주간 제네바에서 회의 · 목적 : (a)국제적 인권규범의 수립 (b)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진정서 심의, 결과보고 (c)유엔 내의 새로운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의 제안 (d)인권관련 활동에 대한 자문 (e)인권소위 보고 검토 · 구성 : 53개국 대표로 구성된 정치적 기구의 성격이며 임기는 3년 / 산하 보조기관으로 인권소위(Sub-CHR),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및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실무그룹(Working Group),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 내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의해 설치되었다.
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1974 인권위원회 설립시 산하에 설치 · 회기 : 매년 제네바에서 4주간의 회기 · 목적 : (a)인권 권리장전에 입각한 각종 인권선언 및 협약 초안작성 (b)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문제에 관한 인권위에 권고 (c)인권관계 진정서 심의 및 결과 인권위에 권고 (d)기타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위에서 위임하는 인권문제 · 구성 : 지역배분 원칙에 따라 인권소위원회 위원(expert)은 개인 자격으로 26명 선출 / 임기4년 / 각국별 정위원 및 교체위원 각 1명으로 구성 · NGO와 밀접한 연대 유지

부 록

유엔인권기구	
<p>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1993년 총회의 결의(48/141)으로 사무국 내에 설치 · 1대 고등판무관 Mr. Jose Ayala-Lasso, 에콰도르 ('94-'97) · 2대 고등판무관 Ms. Mary Robinson, Ireland ('97-'02) · 3대 고등판무관 Mr. Vieira de Mello ('02~) · 목적 : (a)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관계 구축 (b)인권 침해 방지와 긴급상황에 대처 (c)지속적인 평화원칙에 따라, 인권증진·민주주의·발전 증진 (d)전 유엔 조직에 걸친 유엔 인권 프로그램 강화 조정 (e)인권 조약 감시 기구 등의 활동 지원 · 구성 : 제네바 본부의 200여명의 직원과 함께 상설기구로 설치, 세계 각국에 지부 설치 · 1982년 설치된 인권센터가 인권고등판무관실 신설과 함께 통합됨
<p>난민고등판무관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1951년 총회 결의(319/1949)에 의해 실시 · 9대 고등판무관 Mr. Ruud Lubbers ('01~) · 목적 :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 구성 : 53개국 정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예산 책정, 승인, 감독,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인권조약감시기구 (개별조약에 근거)	
<p>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혹은 사회권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 · 회의일정 : 매년 1회 제네바에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2년, 매 5년
<p>인권이사회 혹은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 · 회의일정 : 매년 1회 제네바에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5년
<p>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23명 · 회의일정 : 매년 1회 비엔나와 뉴욕에서 교대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4년
<p>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Rights of the Chi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아동권리협약(CRC)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0명 · 회의일정 : 매년 1회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2년, 매 5년

<p>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 · 회의일정 : 매년 2회 제네바에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2년
<p>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고문방지협약(CAT)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0명 · 회의일정 : 매년 1회 제네바에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4년
<p>기타 인권관련 유엔 전문기구</p>	
<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65년 · 목적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 구성 : 전세계 131개국의 지부를 통하여 166개국에 대한 원조 · 기능 : 특별기금조성, 기술원조 사업,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등
<p>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64년 · 목적 : 개발도상국의 국제경제로의 통합 및 무역개발 · 구성 : 192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상설사무국이 있음 · 기능 : 무역 및 경제관련 정부간 토론, 연구, 정책분석 및 자료수집, 기술지원 등
<p>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6년 유엔 총회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1953년 상설화 · 목적 : 개발도상국 등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에 대한 원조 · 구성 : 세계 36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7개 지방사무소 및 126개 국가사무소를 가지고 160개국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됨 · 기능 : 아동에 대한 구호물가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아동인권 보호
<p>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19년, 1946년 유엔이 출범하면서 최초 유엔 전문기관으로 명명 · 목적 : 기본노동권의 최소기준을 조약 혹은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노동기준을 구축하여, 사회정의 및 노동권,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함 · 구성 : 각국의 노사정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회 개최되는 총회, 3회 개최되는 이사회 및 상설 사무국을 가지고 있음 · 기능 : (a)기본노동권의 최소기준을 조약 혹은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노동기준을 구축, (b)노동정책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p>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유네스코 헌장은 1946년 발효하면서 설립 · 목적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가간 협력증진 및 세계의 안보와 평화 구축 · 구성 : 188개 회원국('99. 10. 19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와 집행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a)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b)대중 교육과 문화 보급 촉진 및 장려 (c)지식의 유지, 증대, 전파, 추구

부 록

<p>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8년 유엔의 특별기구로서 설립 · 목적 :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 · 구성 : 192개의 회원국 보유, 세계보건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a)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로 제공 (b)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c)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p>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5년 · 목적 : 삶의질과 영양공급의 증진,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업 조건 향상 · 구성 : 183개국과 유럽연합이 회원국으로 되어있으며, 총회, 이사회와 8 개국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국으로 구성 · 기능 : 지속가능 농업과 농업여건의 향상 (b)식량생산증가를 위한 장기적 전략 (c)천연자원 보전과 식량안보
<p>인권관련 유엔 독립기구</p>	
<p>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유엔헌장에 근거한 유엔의 주요사법기구로서 1946년 설립되었고, ICJ 성문법이 존재 · 목적 : 국가간 법적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국제기구의 법적 자문 · 구성 : 9년 임기를 가진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의해서 각각 선출됨. 국가별 재판관은 최대 1인
<p>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 설립노력에 결과로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조약(Rome Statute)이 60개국 이상이 비준되어 발효됨 · 목적 :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 특징 : 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 개인을 형사처벌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p>주요 국제 인권 NGO</p>	
<p>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61년, 영국 런던 · 목적 : 모든 양심수의 석방, 정치범에 대한 공정한 재판, 고문과 사형제도 폐지, 모든 비사법적인 처형과 실종의 종식 · 기능 : 방대한 국제적 조직망을 바탕으로 연대서한을 발송하며, 연례보고서를 발간
<p>인권감시그룹 (Human Rights Wat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75년 타결된 헬싱키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NGO로 출범 · 목적 : 세계 70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 · 기능 :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 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
<p>인권인터넷 (Human Rights Inter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76년, 캐나다 주재 · 목적 : 세계 인권공동체의 정보교환 · 특징 : 세계 인권관련 5000개 기관 및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활동가와 인권기관을 정보화 차원에서 돕고,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인권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하는 것을 추구함

부 록

<p>국제인권옹호연맹 (International League of Human Righ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2년, 뉴욕 · 목적 : 개인에 대한 정치적 인권보호 · 특징 : 주로 유엔, 유네스코, ILO 등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행사가 목표
<p>국제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52년, 베를린에서 설립되어 제네바에 본부 · 목적 : 법치주의와 인권향상 · 특징 : 60개국 이상의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유럽평의회 등의 협의자격을 부여 받음
<p>국제민주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6년 파리에서 창립되어 브뤼셀에 소재 · 목적 :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불의에 반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 · 특징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80개국 법률가들로 구성
<p>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86년, 홍콩에 본부 · 목적 : 아시아 지역의 인권 의식 확산, 인권침해 희생자들 구제를 위한 국제적, 아시아적 여론 형성 · 특징 : 아시아지역 법률가 및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8년 아시아인권헌장(Asian Human Rights Charter)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 지역 인권시스템 구축에 큰 노력을 하고 있음
<p>아시아인권교육정보센터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92년 · 목적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고 홍보 · 기능 : (a)시민을 위한 교육 교재 개발 (b)홍보 (c)자료의 DB구축 (d) 인권교육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 (e)인권교육 전문성의 교류 (f)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유엔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 이행을 촉진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우리나라 가입(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집단살해죄의방지과처벌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8. 12. 9 ('51. 1. 12)	133	'50. 10. 14 ('51. 12. 12)	
부녀자의정치적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52. 12. 20 ('54. 7. 7)	115 '02. 8. 25 기준	'59. 6. 23 ('59. 9. 21)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 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49. 12. 2 ('51. 7. 25)	74	'62. 2. 13 ('62. 5. 14)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54. 9. 28 ('60. 6. 6)	54	'62. 8. 22 ('62. 11. 20)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 12. 21 ('69. 1. 4)	165	'78. 12. 05 ('79. 1. 4)	14조 선언 ('97. 3. 5)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 12. 18 ('81. 9. 3)	170	'84. 12. 27 ('85. 1. 26)	16조1항 (g) (16조1항 중 (c),(d),(f) '91. 3. 15 철회 / 9조 '99. 8. 24 철회)

부 록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우리나라 가입(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 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6. 12. 16 ('76. 1. 3)	146	'90. 4. 10 ('90. 7. 10)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149	'90. 4. 10 ('90. 7. 10)	14조5항, 22조 (23조4항 '91. 3. 15 유보 철회 / 14조7항 '93. 1. 21 유보철회)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104	'90. 4. 10 ('90. 7. 10)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 11. 20 ('90. 9. 2)	191	'91. 11. 20 ('91. 12. 20)	9조3항, 21조(a), 40조2항 (b),(v)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1. 7. 28 ('54. 4. 22)	140	'92. 12. 3 ('93. 3. 3)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체 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 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 다고 규정한 제7조 유보 선언내용: 대한민국은 제1 조 A에 규정된 "1951년 1 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 건"이라는 용어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는 것을 이 협약 제 1조 B에 따라 선언한다.

부 록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우리나라 가입(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난민지위에관한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67. 1. 31 ('67. 10. 4)	138	'92. 12. 3 ('92. 12. 3)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 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 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 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 유보
고용정책에관한협약 (ILO협약 no.122)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Policy	'64. 7. 9 ('66. 7. 15)	93	'92. 12. 9 ('93. 12. 9)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 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 의방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 12. 10 ('87. 6. 26)	132	'95. 1. 9 ('95. 2. 8)	
동일가치노동에대한남녀근로 자의동일보수에관한협약(ILO 협약 no.100)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51. 6. 29 ('53. 5. 23)	160	'97. 12. 8 ('98. 12. 8)	
고용과직업상의차별에관한 협약(ILO협약 no.111)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58. 6. 25 ('60. 6. 15)	158	'98. 12. 4 ('99. 12. 4)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00. 5. 25 ('02. 2. 12)	42	(서명 '00. 9. 6)	

부 록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우리나라 가입(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아동매매,아동매춘및아동포르 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00. 5. 25 ('02. 1. 18)	42	(서명 '00. 9. 6)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 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 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 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 유보
기업의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보호및편의에관한 협약(ILO협약 no.135)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and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71. 6. 23 ('73. 6. 30)	73	'01. 12. 27 ('02. 12. 27)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8. 7. 17 ('02. 7. 1)	88	'02. 11. 13 ('03. 2. 1)	

발간자료 목록

번호	자료명	저(편)자	발행	담당부서
1	영국 인종평등위원회 조사보고서	조효제	2001. 10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2	미국 장애인법 개설	국가인권위원회	2002	차별조사2과
3	언론가이드라인 준비 자료집 1 : '언론과 인권' 학술·기고문 모음집	"	2002	공보담당관실
4	언론가이드라인 준비 자료집 2 : 인권관련 매체비평 모음집	"	2002	"
5	언론가이드라인 준비 자료집 3 : 언론관련 가이드라인·윤리강령 모음집	"	2002	"
6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 1 : 경찰과 인권	신의기 외	2002. 10	인권교육담당관실
7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 사회적 신분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02. 10	차별조사국
8	APF 연례회의 참고자료 부록 1 :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	2002. 10	국제협력담당관실
9	APF 연례회의 참고자료 부록 2 : 인권과 장애인	"	2002. 10	"
10	2002년도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질문지·조사표 모음집	설동훈 편	2002. 10	인권연구담당관실
11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 2 : 교정과 인권	이승호 외	2002. 11	인권교육담당관실
12	국제인권협약집 (2002 직원인권교육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02. 11	"
13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	2002. 11	법제개선담당관실
14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 3 : 검찰과 인권	심희기 외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15	국가인권위원회 기사모음집 1 : 2001.10.5 ~ 2002.5.28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공보담당관실

부 록

번호	자료명	저(편)자	발행	담당부서
16	국가인권위원회 기사모음집 2 : 2002.5.28 ~ 2002.12.27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공보담당관실
17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02. 12	법무담당관실
18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1권	"	2002. 12	국제협력담당관실
19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2권	"	2002. 12	"
20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3권	"	2002. 12	"
21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4권	"	2002. 12	"
22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5권	"	2002. 12	"
23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6권	"	2002. 12	"
24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25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7차 연례회의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국제협력담당관실
26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7차 연례회의 참고자료 2	"	2002. 12	"
27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문용린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28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재활복지대학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29	B형간염보균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 학원, 노동건강연대	2002. 12	"
30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법무법인 지평	2002. 12	차별조사1과
31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이경주 외	2002. 12	정책총괄과
32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 (1)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	차별조사2과

부 록

번호	자료명	저(편)자	발행	담당부서
33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34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행정개혁시민연합	2002. 12	차별조사국
35	교사의 인권인식 조사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부산교육연구소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36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37	무료및실비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2	"
38	부랑인복지시설내 노인인권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2002. 12	"
39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한국노인의전화	2002. 12	"
40	취학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조사	동의대학교	2002. 12	"
41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강순원 등저, 인권교육담당관실 편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42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김은실 외	2002. 12	인권연구담당관실
43	인권 길라잡이 - 검찰편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3)	심희기 외	2002. 12	인권교육담당관실
44	인권 길라잡이 - 경찰편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2)	신의기 외	2002. 12	"
45	인권 길라잡이 - 교정편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1)	이승호 외	2002. 12	"

진정서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③ 모르고 있다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input type="checkbox"/> 기관 및 사건번호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언제 () <input type="checkbox"/> 누구 ()			

부 록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input type="checkbox"/>	
긴급구제조치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m²)

Complaint Form

1. Complainant (In case the complainant is an organization, please give us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and its representative.)

- ① Name: Ms./Mr. _____
 ② Resident Registration No./Passport No.: _____
 ③ Nationality/Citizenship: _____
 ④ Address in Korea: _____
 ⑤ Telephone: _____ ⑥ Fax: _____ ⑦ E-mail: _____

If you are filing a complaint on behalf of someone else,

2-1. Victim whose rights are violated or who is aggrieved by the unlawful discrimination

- ① Name: _____
 ② Resident Registration No./Passport No.: _____
 ③ Nationality/Citizenship: _____
 ④ Address in Korea: _____
 ⑤ Telephone: _____ ⑥ Fax: _____ ⑦ E-mail: _____
 ⑧ Relationship to the complaint: _____
 ⑨ Others: _____

2-2. Does a victim know that you are complaining on behalf of her/him?

- ① Yes. And a victim wants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ission.
 ② Yes. But a victim does not want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ission.
 ③ No. A victim does not know that I am complaining.
 ④ Yes. But it is uncertain if a victim wants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ission.

3. Respondent (Any entities, including governmental agencies, private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hat violated the rights of the affected person or discriminated against such a person.)

- ① Name: _____ ② Organization Name: _____
 ③ Address in Korea: _____
 ④ Telephone: _____ ⑤ Fax: _____ ⑥ E-mail: _____

4. Previous records of filing a complaint (with the same fact) to the Commission or other agencies.

- ① Have you ever made a complaint to any investigation agency?
 Yes No

부 록

② Have you ever filed a complaint with agencies, such as a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or others, for any relief procedure?
(If so,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mplainant, when and where a complaint was filed, and the case or reference number of the complaint.)

③ Have you ever made a complaint with the same fact to the Commission before? Yes No
(If so, please give us the information on the date and reference number of the complaint and the name of the complainant.)

5. References

6. Details about the Complaint
(Please describe the fact or case that you are complaining about, including what happened, where and when it happened, who a victim is, who the respondent is, and all the detailed information that you know.)

(If you need more space, attach additional pages.)

With respect to the above complaint
• I want it to be closed after counseling.
• I want it to be filed in the Commission.
Date _____ Signature _____

Do not write in this space.

Date _____

Person in charge: Title _____ Name _____ Signature _____

부 록

4. **Преыдущие материал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данного дела в нашей Комиссии или в другой организации.**

① **Обращались ли вы с жалобой в какую-либо организацию?**
 Да Нет

② **Обращались ли вы с жалобой в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суд,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или подобные за помощью?**
 (Если ДА, напишите имя пострадавшего, когда и куда вы обращались с жалобой, и укажите номер регистрации дела)

③ **Обращались ли вы с жалобой в нашу Комиссию с тем же самым делом?**
 Да Нет
 (Если ДА, напишите информацию о дате, номере регистрации жалобы и названии жалобы)

5. **Имеются ли справки официальные бумаги ил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делом пострадавшего?** Да Нет

6. **Подробности о жалобе пострадавшего**
 (Опишите детально факт или ситуацию, по поводу которых вы обращаетесь с жалобой, описания точного места и времени происшедшего факта, действий пострадавшего и ответчика, а также свидетелей происшедшего{если они были})

(Если вам недостаточно места на данной странице, используйт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листы)

Что касается к данной жалобе,

- Я прошу считать это дело закрытым, после ознакомления Комиссии с моим делом.
- Я прошу считать моё дело принятым Комиссией к расследованию.

Дата _____ Подпись _____

Заполняется регистратором	
수사기관 등에 진정, 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긴급구제 조치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날짜 :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

國家人權委員會規則 第7號

請 願 書

1. 請願人 (如是團體, 將團體名稱及代表姓名填入欄內)

- 1. 姓名: 2. 身份證號碼: 3. 國籍:
- 4. 住址:
- 5. 電話: 6. 傳真: 7. E-mail:

2-1. 受害人 (請願人與受害人不一致時填寫此欄)

- 1. 姓名: 2. 身份證號碼: 3. 國籍:
- 4. 住址:
- 5. 電話: 6. 傳真: 7. E-mail:
- 8. 與請願人的關係: 9. 其他

2-2. 請願人與受害人不一致時, 受害人是否知道請願之事? 是否希望調查?

- 1. 知道, 希望調查 () 2. 知道, 但不希望調查 ()
- 3. 不知道 () 4. 知道, 但不清楚是否希望調查 ()

3. 侵權人或實施不平等待遇的行為人是誰?

- 1. 姓名: 2. 單位:
- 3. 電話:

4. 關於受害人所受侵害或不平等待遇

- 1. 是否向司法機關提出申訴·告發或請願?
是 () 否 ()
- 2. 是否向法院或憲法法院提出採取補救措施的要求?
是 () 否 ()

부 록

3. 就同一案件, 是否向國家人權委員會提出請願?

是 () 否 ()

如果有, 是何時, 所用姓名?

時間 () 姓名 ()

5. 請注明看到或了解受害人所受侵害及不平等待遇的人, 或者有助於證明事實的證據及資料.

※ 外國人請注明護照號碼或者外國人登記號碼.

6. 附件: 有 () 沒有 ()

7. 受害人受到何種侵害或不平等待遇?

- 1. 時間: 2. 地點:
- 3. 經過 (紙張不夠, 可另加續頁)

對於以上事件 () 希望在商談后可以解決.
() 希望受理請願.

請願人 (簽章)

如向司法機關提出請願·申訴, 調查即告終結 ()
緊急補救措施: 需要 () 不需要 ()

200 年 月 日

負責人: 職務
姓 名: (簽章)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단체명	전화번호
	전송(Fax)번호
사 용 목 적 (구체적으로)	
행 사 내 용 (구체적으로)	
행 사 일 시	
참 석 인 원	
기타특기사항	

<참고사항>

- 배움터 사용은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의 인권관련 공개 토론회, 학술 세미나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단체의 내부행사,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신청목적외 사용시에는 당일행사 취소는 물론 행사중이라도 중지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한 행사내용대로 사용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_____

직 위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